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RESEARCH INSTITUTE

이 세 정



연구보고 2011-06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이세정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Rules for Advanced Rule of Law

연구자: 이세정(연구위원)

Yi, Se-Jeong

2011.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 현대국가에서 행정입법(특히 위임입법)은 의회입법원칙의 예 외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위임입법의 증가와 동시에 행정실무에서는 행정규칙의 비중 이 점증하고 있음
- □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법치주의원칙 및「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 및 법규명령이나 자치법규로 정하되, 부득이 이것을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써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됨
- □ 그러나 최근에는 법령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한 수권(授權)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위임 의 내적·외적 한계를 벗어나 행정의 수범자인 국민 및 관련 기업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함
- □ 또한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의 정도가 매우 빈번하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 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함

□ 이 보고서는 이상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율하여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수권 법령 및 위임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등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 제2장에서는 행정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분석함
- □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행정규칙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함. 이 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과학기술분야,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분야, 보건복지부 소관보건·식품 분야,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 분야의 순서로 분석함
- □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행정규칙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수권 법령의 내용・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등을 중심으로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5장에서는	현행법상	행정규칙	정비방향(내지	방안)을	제
시함.					

Ⅲ. 기대효과

- □ 국민 및 관련 기업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 행정편의주의적 법집행의 예방 및 개선함으로써 선진법치 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정비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됨

🏊 주제어 : 행정규칙, 행정입법, 위임입법, 법치주의, 행정규제기본법

Abstract

 \square In the modern state, administrative legislation (especially, dele-

I . Background and Purpose

gated legislation) plays a central role as th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With the rise of delegated legislation, the importance of admi-
nistrative rule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administrative prac-
tice.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advocated by the Korean Consti-
tution and Article 4.2 of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regulations that restrict the rights of the citi-
zens or impose a duty shall be set forth by the law, legal order
or local law. Provided, that when such are delegated to be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public notice or direc-
tive, it is confined to those of professional/technical nature, of
which the delegation is inevitable.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rights of the
citizens and relevant companies are violated beyond the inter-
nal/external limitations of the delegation, even when there are

grounds for delegation to regulate by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public notice. The enforcement and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rules are so frequent that even the experts, not to mention the general public, cannot grasp the information. ☐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report analyzes the delegations in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rules i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es those tha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administrative rules with no legal grounds for delegation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itizens. The administrative rules will be divided into: the administrative rules that require the form of ordinance; the administrative rules that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general delegation (re-delegation) or the principle of certainty; and the administrative rules that are beyond the object of the delegation and delegation ordinance. The improvements will be sought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dvanced rule of law.

II. Main Content

Chapter 2 analyzes the theories and cases on the significance and related legal issues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rules.

	Chapter 3 analyzes the administrative rules of the current law
	via complete survey on the legislation. The analysis is in the
	order of the education/science & technology sectors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land and
	maritime affairs sectors unde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health and food sector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nowledge and eco-
	nomy sectors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rules, Chap-
	ter 4 presents the reviews and improvements in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rules that have no legal grounds for delegation;
	the administrative rules that require the form of ordinance; the
	administrative rules that are beyond the object of the dele-
	gation and delegation ordinance; and the administrative rules that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general delegation (re-
	delegation) or the principle of certainty.
	Chapter 5 suggests the direction/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administrative rules.
${\rm I\hspace{1em}I\hspace{1em}I}$.	Expectations
	This repor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egal stabi-
	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e citizens and relevant companies.

This repor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advanced rule of law by preventing and improving the exercise
of the law for the sake of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is repor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the reference in im-
proving the administrative rules of the governme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New Words: Administrative rule, administrative legislation, delegated legislation, rule of law,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21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2. 연구의 구성	23
제 2 장 행정규칙에 관한 일반론	25
제 1 절 의 의	25
제 2 절 법적 성질	27
1.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	27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문제	31
제 3 절 종 류	41
1. 내용에 따른 분류	41
2. 형식에 따른 분류	48
게 4 저 궁 러	<i>-</i> 2
제 4 절 효 력	
1. 내부적 효과 ···································	
٧. ٩١٦ ١١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٠	J4
제 5 절 통 제	56

1. 입법적 통제	56
2. 행정적 통제	57
3. 사법적 통제	68
제 3 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69
제1절 교육·과학기술 관련법제 분야	69
1. 총괄표	69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74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1	19
1. 총괄표 1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1	
레스코 바퀴 제품 리크라바퀴 HAL	. 1 0
제 3 절 보건·식품 관련법제 분야 2	
1. 총괄표 2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2	214
제 4 절 지식 · 경제 관련법제 분야3	305
1. 총괄표 3	305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3	309
제 4 장 행정규칙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3	369
제1절 교육·과학기술분야3	369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3	369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3	380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3	388
4.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	391

5. 기 타400
제 2 절 국토·해양분야411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411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419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 487
4.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
5. 기타····································
제 3 절 보건·식품분야 536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536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543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 566
4.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575
5. 기 타
제 4 절 지식경제분야595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595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611
3. 기 타620
제 5 장 결 론627
참고문헌635

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은 법률, 법규명령 외에 "무방비로 노출된(불안정한) 법의 제3의 범주"에 해당한다.1) 실무에서 행정규칙은 부분적으로 가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지시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중이다. 그리고 특히 독일의 경우 새로운 또는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행위형식, 예를 들어 목적합의(Zielvereinbarungen)2)도 부분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분류되고 있다.3) 따라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또는 법규명령의 전제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하면서 조례(Satzung)라고도 볼 수 없는 행정청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율에 관한 집합개념(Sammelbegriff)이라 할 수 있다.4)

현대국가에서 의회입법원칙의 예외로서 행정입법(특히 위임입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위임입법의 증가와 동시에 행정실무에서는 행정규칙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즉 모든 법질서에서는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규율의 세단계(층)의 피라미드가 존재하는데, 법률은 규범과 규율의 수요의 적은 부분만을 충족할 뿐이고, 숫자상으로는 법규범의 두 번째 층으로서법규명령이 법률보다는 더 많다.5) 그런데 법률, 법규명령보다도 세 번

¹⁾ R. Wahl, Verwaltungsvorschriften: Die ungesicherte dritte Kategorie des Rechts, in: FG 50 Jahre BVerwG, 2003, S. 571 ff.

²⁾ H.-H. Trute, Die Rechtsqualität von Zielvereinbarungen und Leistungsverträgen im Hochschulbereich, WissR, Bd. 33 (2000), 134 (150 ff.); H. Hill, Zur Rechtsdogmatik von Zielvereinbarungen in Verwaltungen, NVwZ 2002, 1059 (1060).

³⁾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W. Hoffmann- Riem/E. Schmidt-Aßmann/A. Voßku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I, München 2008, S. 987 ff.

⁴⁾ H. Hill, a.a.O., S. 987 ff.

⁵⁾ Vgl. H. Schneider, Gesetzgebung, 3. Aufl. Heidelberg 2002, Rn. 231.

째 층으로서 지침, 고시, 훈령·예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이름의, 행정부에 의한 법정립(Rechtssetzung)의 산물인 행정규칙이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행정규칙의 실제적 중요성, 특히 행정을 위한 중요성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그 밖의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6)

법률과 법규명령보다 훨씬 광범하고 상세한 규정이므로 행정규칙은 일반적 법률개념에서 개별 사례상의 구체적 결정에로의 긴 도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행정규칙은 법률과 법규명령의 구조적으로 미완성된 법을 개인을 위하여 보충하거나, 구체화하거나 해석함으로써 법률개념과 개별 결정 간의 넓은 간격을 메우고 구조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당연히 개인에게 엄청난 효과를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은 법정립론(입법론)의 중심에 정당하게 서지 못하고 있다. 행정규칙의 태생적 낙인 - 비법규성 - 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때문이다.7) 그리하여 행정규칙의 법적・실제적 중요성과 그 법적 성질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와 모순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분업적 법정립과 법정립피라미드의 이런 현실을 어떻게 포착하고 구조적으로 다루어야 할지, 아울러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효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행정법도그마틱으로서는 곤경에 봉착한다.8) 법규명 령과 행정규칙을 양축으로 하는 행정입법론에서 이와 같은 물음은 폭넓은 설득력이 담보되는 답을 내리기가 극히 어려운 항시적 주제이다.

더군다나 문제의 근원(수권법률)과 다툼의 장소(법률하위적 법규범) 가 달라서 논의의 혼란이 가중된다. 최근 우리의 판례와 행정실무상 의 중대한 변화는 기왕의 행정규칙론의 패러다임에 의미 있는 결정적

⁶⁾ Vgl. A. v. Bogdandy, Gubernative Rechtsetzung, Tübingen 2000, S. 571.

⁷⁾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I, 법문사, 2008, 409-410쪽 참조.

⁸⁾ R. Wahl, a.a.O., S. 571.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9)

전통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외에 이와 같은 행정규칙의 실제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우리「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및 의견제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제41조 참조), 행정실제에서 이러한 절차들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을 제·개정·폐지함에 관하여는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제46조 참조), 행정실제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정부조직법 제24조 제1항 참조). 그리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포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별도의 공포절차를 두지 않으며,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되어 도달하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에 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처분기준공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0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절차보장 미흡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다음과같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i)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수시 사후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함)은 훈령·예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

⁹⁾ 김중권, 앞의 책, 410쪽 참조.

제처장이 정하는 정부 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법제처장은 등재된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심사의견을 통보받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훈령·예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특히 사후심사제의 경우 종래 반기별로 운영하였으나, 그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수시사후심사제로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관계부처가 행정규칙의 DB화 등 정보의 제공에 그다지 열심을 다 하지않을 뿐더러, 나날이 법령의 심사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행정규칙의 심사의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히 심사의 강도와 내용이 극히 형식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10)

결과적으로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행정규칙의 경우 법제처의 사전적 통제수단 마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법률이 행정활동의 구체적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그것을 위임하는 경우에 행정기관들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기보다는 '통제 없는 행정 규칙에의 도피'의 유혹을 받아 고시 등 행정규칙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행정의 편의에 맡겨버리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권의 비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행정규칙은 그 성립과정에서 타기관의 심사·수정·통제·감시를 받지 않고 또 국민에 의한 토론·수정·견제·반대 등에 봉착함이 없

¹⁰⁾ 김중권, 앞의 책, 431쪽 참조.

이 은연중 성립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행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규율의 방식으로서 법규명령 보다 행정규칙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행정의 편의에 맡겨버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1]라는 헌법재판소의 지적 역시 행정실무상 매우유용하고 국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법치주의의 원칙 및「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 및 법규명령이나 자치법규로 정하되, 부득이 이것을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써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령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한 수권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위임의 내적·외적 한계를 벗어나 행정의 수범자인 국민 및 관련 기업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그 제·개정의 정도가 매우 빈번하여 일반 국민뿐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쉽지 않은 등 행정규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국민의 권 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전문적·비기술적 사항을 규율 하는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수권 법령 및 위 임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선진법치주 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¹¹⁾ 헌재결 2008. 11. 27, 2005헌마161.

다만, 이 연구는 연구기간 · 예산상의 제약 등을 이유로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함에 따라」2) 행정기관이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행정내부관계, 즉 행정기관 상호관계,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를 규율하거나 위원회 등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율하는 행정규칙, 법령에 따른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은 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교육관련법령의 경우 행정규칙 현황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감이 정하도록수권하고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일정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율하고 '그 밖에' 또는 '기타'라는 용어를사용하여 행정기관이 고시 등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하고 있으나,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제외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전수조사방식을 채용하고자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과학기술 관련법제 분야,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식품 관련법제 분야,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법률 총 350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하여, 행정기관이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이를기초로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들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quot;○○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또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법문을 입법자가 '고시'라는 규율형식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위 법문은 ○○장관이 규율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데 중점을 두고, '고시'라는 규율형식을 지정한 것으로는 보지 않음을 밝힌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연구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모든 현행법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i)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과학기술 관련법제 분야, ii)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iii)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식품 관련법제 분야, iv) 지식경제부소관 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로 나누어 총 398개의 법률(해당 시행 령·시행규칙)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분야 및 법률>

분 야	소관 부처	대상 법률	합계	비고
교육 · 과학기술	교육과학 기술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 영에 관한 특별법 외 88개	89개	
국토 · 해양	국토 해양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외 128개	129개	-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청 소관 법령 제외
보건 · 식품	보건 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 50개	52개	- 복지 관련 법령 제외
지식경제	지식 경제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외 86개	80개	-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 법령 제외 - 우편 · 우정에 관한 법령 제외
			총 350개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전수조사방법을 수행하였다. 201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연구대상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권근거, 소관부처, 행정규칙 제정권자, 관련 행정규칙명>을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조사분석의 대상법령의 선정기준일은 법령의 시행일을 그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시작단계인 2011년 3월 1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추후 전면개정된 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3]

이후 책임연구자가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수권 법령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을 분류하고, 행정내부관계를 규율하거나 위원회 등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규칙, 일정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율하고 '그 밖에' 또는 '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기관이 고시 등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하고 있으나,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나서 해당 법제 분야별로 개별 법령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해당행정규칙을 기준으로 i) 규정사항, ii) 수권근거 조문, iii) 위임방식을 현황표로 작성한 뒤, 그 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개별법상의 행정규칙 현황분석에 기초하여 해당 분야별로 총괄표를 작성하여 개별법상 행정규칙 위임 건수를 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경우, 법률에서 일단 법규명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뒤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경우,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 법규명령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경우로 분류하여 통계화 하였다.

또한 개별법상의 행정규칙 현황분석 결과 개선의 필요가 있는 행정 규칙을 i)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ii) 법령의 형식을 요

¹³⁾ 연구대상 행정규칙의 시행일 역시 2011년 3월 1일을 기준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는 행정규칙, iii) 수권 법령의 내용·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iv)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v) 제정을 필요로 하는 행정규칙, vi) 기타로 나누어 해당 행정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하여 행정규칙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의 타당성 내지 신뢰성확보를 도모하였다.

2. 연구의 구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행정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행정규칙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과학기술분야,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분야,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식품 분야,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 분야의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행정규칙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수권 법령의 내용・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 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제정을 필요로 하는 행정규칙, 기타(불 명확한 행정규칙, 행정규칙 제정권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된 경우, 행정규칙 일몰제 위반의 경우 등)을 중심으로 검 토의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법상 행정규칙 정비방향(내지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제 2 장 행정규칙에 관한 일반론

제 1 절 의 의

행정규칙은 법률, 법규명령 외에 "무방비로 노출된(불안정한) 법의 제3의 범주"에 해당한다.14) 실무에서 행정규칙은 부분적으로 가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지시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 중이다. 그리고 특히 독일의 경우 새로운 또는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행위형식, 예를 들어 목적합의(Zielvereinbarungen)15)도 부분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분류되고 있다.16) 따라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또는 법규명령의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서 조례(Satung)라고도 볼 수 없는 행정청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율에 관한 집합개념(Sammelbegriff)이라 할 수 있다.17)

현대국가에서 의회입법원칙의 예외로서 행정권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으로서의 명령¹⁸⁾ 인 행정입법(특히 위임입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위임입법의 증가와 동시에 행정실무에서는 행정규칙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즉 모든 법질서에서는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규율의 세 단계(층)의 피라미드가 존재하는데, 법률은

¹⁴⁾ R. Wahl, a.a.O., S. 571 ff.

¹⁵⁾ H.-H. Trute, a.a.O., 134 (150 ff.); H. Hill, Zur Rechtsdogmatik von Zielvereinbarungen in Verwaltungen, NVwZ 2002, 1059 (1060).

¹⁶⁾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W. Hoffmann- Riem/E. Schmidt-Aßmann/A. Voßkule, a.a.O., S. 987 ff.

¹⁷⁾ H. Hill, a.a.O., S. 987 ff. 가령 종전의 소위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명령'(Sonderverordnungen)의 경우에도 종종 행정규칙이 문제된다. F. Ossenbühl, Autonome Rechtsetzung der Verwaltung, in: HStR III, § 65 Rn. 6, 61; S. Seidel, Praxis der Verordnungsgebung, 2004, S. 9 ff.; Möstl, Normative Handlungsformen, in: Erichsen/Ehlers (Hrsg.), VerwR, § 18 Rn. 12.

¹⁸⁾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1, 143쪽.

규범과 규율의 수요의 적은 부분만을 충족할 뿐이고, 숫자상으로는 법 규범의 두 번째 층으로서 법규명령이 법률보다는 더 많다.19) 그런데 법률, 법규명령보다도 세 번째 층으로서 지침, 고시, 훈령・예규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이름의 행정부에 의한 법정립(Rechtssetzung)의 산물인 행정규칙이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행정규칙의 실제적 중요성, 특히 행정을 위한 중요성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그 밖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20)

행정규칙은 일반적·추상적인 규율로써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령하며, 행정의 구성(조직)과 운영을 질서지우는 데에기여한다. 즉 행정규칙은 집행권이 발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규정에 관련된 표현으로 지침, 지시, 처분, 근무지침 또는 행정명령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열거만으로도 행정규칙의다양한 양태를 엿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도 행정규칙은 넓은 스펙트럼을 표출할 수 있다. 행정규칙의 내용은 광범하게 행정의 조직과 기능을 포괄한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몇 행정규칙에서는 관할과 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다른 행정규칙에서는 공무담당자에게 법률을 적용할 때의 지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여하튼 모든 행정규칙의 공통점은 행정기관의 행동을 조종한다는 점이다. 이는특히 법률 규정이 없거나 개개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행정규칙 하에서는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또는 상관의 그의 밑에 위치한 하급행정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명령이 핵심이다. 행정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질서 또는 사실적 행정활동과 관련이었다. 행정규칙은 상급기관의 지시권에 근거를 둔 포괄적 또는 일반

¹⁹⁾ Vgl. H. Schneider, a.a.O., Rn. 231.

²⁰⁾ Vgl. A. v. Bogdandy, a.a.O., S. 571.

적 지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이해를 위한 열쇠이자, 전제요건은 행정의 위계 내지 계서구조이다. 하지만 이것은 위계 또 는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가령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서 행 해지는, 협력을 위한 행위형식으로서 목적합의 또는 협력적 상호합의 가 고려되는 그 밖의 행위형식의 사례에서는 다른 측면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에서도 지침정립, 조정, 감시 내지 통 제, 즉 종합적인 책임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서 발령되는, 협력을 위 한 활동규정 또는 지침이 요구된다.21)

제 2 절 법적 성질

1.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서도, 그리고 그 밖의 국가에서도 행정의 추상적・일반적 규율에 대한 실무상의 필요성 내지 유용성은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상 행정규칙의 도그마적 구조화 및 효력은 여전히 격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그효력에 관한 문제는 - 행정법도그마의 관점에서 - 전체 행정법영역 및 행정법의 근본적인 문제, 즉 입법권의 소재문제, 법률의 유보이론, 국민의 권리보호문제와 연결된다.

19세기 독일의 국법학 및 행정법학에서는 법의 개념을 독립적인 법인격 사이의 관계 -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 -로 한정했고, 따라서 행정규칙은 행정내부 규율로서 법개념에서 제외되었다. 그 당시의 헌법적 법률개념에 근거를 둔 이러한 구분은 그동안 진부한 것이 되었다. 즉 오늘날 행정규칙의 법으로서의 특징(법규성)은 원칙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청 및 공무원에 대

²¹⁾ H. Hill, Urban Governance - Zum Wohle der Kommune, in: FS Heinrich Mäding, 2006, S. 155 ff.

하여 구속적인 명령이고, 이러한 구속성은 법을 통해서만 근거지워 질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미 법으로서의 특징이 승인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통상 제1차적으로 국가적 내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법규(Rechtssätze)이기는 하나, 법규범(Rechtsnormen), 즉 외부법(Außerrechtssätze)는 아니다.22) 여기서 외부법과 내부법의 구분이 필요한데, 외부법이란 단일체로 파악되는 국가와 사인 사이의 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내부법은 국가의 내부에서 특히 상이한 차원의 관청 사이의 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외부법은 권리주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인격 사이의 법(interpersonales Recht)인데 반해, 내부법은 인격 내부의 법(intrapersonales Recht)이다.23)

G. F. Schuppert는 행정규칙에 관한 법학적 성취를 다음과 같이 세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행정규칙을 "비법" (Nicht-Recht)과 동일시하는 것으로부터 극복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내부법과 외부법을 대립²⁴)시킨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 즉 오늘날의 단계는 상이한 구속력이라는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단계다.²⁵)이하에서는 해정규칙의 법규성 문제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학설의 입장

종래의 통설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발령자의 하급행정기 관만을 구속하고 일반국민에게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재판

²²⁾ U.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2002, S. 34; J. Ips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4. Aufl. Köln 2005, Rn. 142 ff, 160;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W. Hoffmann-Riem/E. Schmidt-Aßmann/A. Voßku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I, München 2008, S. 988 ff.

²³⁾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1, 249쪽.

²⁴⁾ Lange, Innenrecht und Außenrecht,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Schuppert (Hrsg.), Reform, S. 307 (321 ff.).

²⁵⁾ H. Hill, a.a.O., S. 989.

의 준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지시와는 수명자의 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일반 법규로서의 성격은 부인된다"라고 하여 행정규칙을 법규명령과 구분하였다.26) 즉 법규적 성질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규의 개념을 어떻게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다수의 견해에 따라 법규개념을 일단 "행정기관과 국민을 구속하고 법원에 대하여는 그 재판규범이 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 본다.

이처럼 종래의 통설이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한 주된 논거로는 후기 입헌주의적 사고에 따라 의회의 입법권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과 법적 주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행정내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침투하지 못하는 영역으로서 그에 관한 규율은 비법(Nicht-Recht)으로 인식하는 것을 들 수 있다.27)

그런데 현대 행정의 여러 특성들, 예컨대, 국가과제의 복잡성과 양적 증대, 빠른 기술적 발전, 사회관계의 변화, 미래에 대한 예측필요성 등을 이유로 행정의 실제에서 행정규칙은 양적·질적으로 방대하고 고도화된 규율을 통하여 법규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민의 생활도 광범한 행정영역에서 행정규칙의 규율과 영향을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학설은 이러한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비법이라 하였으나, 이러한 이해가 오늘날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행정규칙이 이제는 국민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이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주장은 법규의 개념요소에서 정치이념적(민주주의, 자유주의적 법이론)요소를 배제하고 어떤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도 그것을 준수해야 할

²⁶⁾ 김도창, 행정법론(상), 청운사, 1990, 306-307쪽.

²⁷⁾ 김해룡, 행정법규범체계연구 I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공법연구 제3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7. 2, 219쪽.

수범자가 존재하는 한 법규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행정규칙은 그것을 준수해야 할 수범자(법집행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회의 입법위임 없이 스스로 제정한 행정내부규율의 법적 규범성(대세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법의 수범자가 의회의 입법통제 밖에서 곧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법제정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개념의 개념요소에 관한 논의에서 외부법과 내부법의 구분은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28) 다만, 어떠한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통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등 그 사용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 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을 정하는 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29) 행정규칙의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부인한다.30)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례도 발견되지만,3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단서에 따른 법률보충규칙(법규명령)이 아닌 통상의 행정규칙에 판례가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뿐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

²⁸⁾ 김해룡, 앞의 논문, 219쪽 참조.

²⁹⁾ 대법원 1983. 6. 14, 83누54.

³⁰⁾ 대판 1983. 9. 13, 82누285.

³¹⁾ 대판 1984. 9. 11, 82누166.

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32)라고 판시하여 특히 재량준칙의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그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33)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문제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와 관련하여 -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 상위법령의 제정근거에 따라 고시나 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제정되고,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인경우, 즉 법규명령으로 정해져야 할 정도의 내용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을 때, 이를 그 제정형식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보아 그 외부적 규범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에 유의하여외부법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판례와 학설의 다수는 이를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1)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령의 규정이

³²⁾ 헌재결 2001. 5. 31, 99헌마413 전원재판부.

³³⁾ 헌재결 2001. 5. 31, 99헌마413; 헌재결 1990. 9. 3, 90헌마13.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판시하여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에도 동일한취지의 후속판결을 냄으로써34) 판례로 굳어진 상태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위에 새로운 형식의 법 규명령이 창설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더 나아가 법률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인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그 하위의 법규명령 형식을 시원적으로 창설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에관한정보통신부고시」에 대하여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한 바 있다.35)

³⁴⁾ 대판 1987. 9. 29, 86누484; 대판 1995. 4. 12, 95누7727; 대판 1996. 7. 23, 97누6261; 대판 2002. 9. 27, 2000두7933.

³⁵⁾ 헌재결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이유로 다 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즉,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 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 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 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 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 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 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 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 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 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 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 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들고 있다.36)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 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다는 것과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 우되는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³⁶⁾ 헌재결 2009. 4. 30, 2007헌마106; 헌재결 2009. 2. 26, 2005헌바94, 2006헌바 30(병합); 헌재결 2008. 11. 27, 2005헌마161; 헌재결 2008. 7. 31, 2005헌마667; 헌재결 2006. 12. 28, 2005헌바59; 헌재결 2004. 10. 28, 99헌바91; 헌재결 2000. 1. 27, 99헌바23.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헌법」제75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유력한 반대의견은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우 리 헌법은 그것에 저촉되는 법률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사가 유효하 게 존립될 수 없는 경성헌법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원칙에 대하여는 헌법 자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허용될 뿐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그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 의 종류·발령주체·위임범위·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더구나 그러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 기타 비법규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법률이 행정규칙등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명령(헌 법 제75조 후단)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 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 을 들어 행정규칙으로의 법규적 사항의 위임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 견해는 법령의 내용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의 직접적 위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주류적 입장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의 요건이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항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복잡하고 전문화된 규율대상에 대하여 행정부처가 탄력적이고 기능적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단계적 위임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정하여진 법규명령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다시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헌법적 결단에 합치하면서도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확보할수 있다"37)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의료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의료보험법」제29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주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심판대상법조항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한 뜻은, '보건복지부의 법규명령'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론으로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면 더욱 분명하고 좋았을 것이다"38)라고 판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은 헌법상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으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법규명령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피력한바 있다.

³⁷⁾ 헌재결 2009. 2. 26, 2005헌바94, 2006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헌재결 2008. 11. 27, 2005헌마161.

³⁸⁾ 헌재결 2000. 1. 27, 헌재결 99헌바23.

3) 소 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대체로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닌 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된 규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수권에 따라 그 위임의 한계 내에서 정립되어 그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항은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위임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39)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되고,40) 그러한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41)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결국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율하거나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율하면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위반되게 될 것이다.

³⁹⁾ 헌재결 1998. 5. 28, 96헌가1.

⁴⁰⁾ 헌재결 2006. 12. 28, 2005헌바59.

⁴¹⁾ 헌재결 2004. 10. 28, 99헌바91.

(2) 학설의 입장

1)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규명령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2) 판례에 비판적인 견해

i)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만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고, 그와 같은 제정형식 이외의 규율은 그 명 칭과 무관하게(사실상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법규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 논자 중에는 구체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정착되어 버린 입법관행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의 규범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출발할 것이 아니라, 과연그러한 규범이 그러한 형식으로 제정되어도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의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42)

ii) 또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 령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그대로 둔 채 단지 대 외적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소위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입 장도 있다.43)

⁴²⁾ 고영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476쪽.

⁴³⁾ 김남진, 월간고시, 1989. 11, 222쪽.

(3)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율태도

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문제점

1997년에 제정된「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은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문의 규정은 헌법상위임입법의 원칙을 규제에 관하여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가없다. 그러나 고시 등에 의한 법률유보원칙 적용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단서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가44)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즉 다수의 문헌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보고 있는 반면,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2) 합헌설

합헌설적 입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 단서조항은 헌법재판소 2004. 10. 28. 99헌바91 전원재판부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것처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

⁴⁴⁾ 김유환,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내용의 개요 - 분석과 평가, 고시계 1997. 10, 111 쪽 참조. 이 논문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당시 이미 "법률보충규칙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대도에 비추어 학설은 별론으로 하고,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입법태도가 정당한 것으로 수용될 전망이 크다고 본다"라고 하여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제가 정해지는 것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심지어 더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행정실무를 예측하고 있다.

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한다. 따라서 법률이 직접 행정규칙에 위임한 경우는 독일의 규범구체화규칙의 경우와 동일하며, 우리의 법령보충적 규칙의 문제 역시 이것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단초가 마련되었다45)라고 한다. 또한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의) 고시를 비롯한 행정규칙은 직접적 외부효를 갖지 않는다(법규가 아니라)는 기본인식에 제도적 변화가 왔다46)라고 한다.

3) 위헌설

그러나 위헌설적 입장에 따르면「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 단서는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법률도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그것도 일반적으로 헌법상 법규명령의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 등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라고 한다.

"판례상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대개 상위법령이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화에 관한 권한만을 부여했을 뿐 그 특정 권한사항의 방법인 '고시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 통칭하여 '고 시 등'은 비법규로서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한다(그러나 고시 일반 을 행정규칙에 곧바로 등치시켜서는 아니된다). 당연히 입법사항을 외 부효가 없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47)라 는 입장이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고시48) 등이 법령의 수권에

⁴⁵⁾ 김중권, 앞의 책, 429쪽 참조.

⁴⁶⁾ 김중권, 앞의 책, 429쪽 참조.

⁴⁷⁾ 김중권, 앞읙 책, 428쪽 참조.

⁴⁸⁾ 물론 같은 고시라는 명칭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은 일반처분, 준

의하여 발령된 경우 법규로서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논란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 중에 법률보충적인 행정규칙이성립할 수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러한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이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 적지않게 나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이해되었다.49) 그러나「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 단서는 그러한'형식과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를 일반화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입법적 수용을 정당화할 만한 이론적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또한「행정규제기본법」이 이러한 예외조항을 통하여 행정규칙의 법규적 효력에 관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할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견해 역시「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 단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 결

「행정규제기본법」제정안 국회 심사 당시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이 아닌고시 등으로도 규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50)도 있었고, 행정기관에서는 이 단서의 근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뿐 아니라 더포괄적인 내용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5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통지), 행정규칙, 법규명령 등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1994, 65쪽 참조.

⁴⁹⁾ 홍준형,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상), 고시연구, 1997. 9, 76쪽.

⁵⁰⁾ 국회 행정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1997. 7, 6쪽 참조.

⁵¹⁾ 제1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회의록, 1997. 7. 22, 12쪽 참조. 이상규 교수

그리하여 고시 형식의 행정규칙, 나아가 법규명령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법이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특히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것처럼 법규명령 (대통령령, 부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법규적 사항은 법령(법률, 법규명령)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 공무원에게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지침이 되는 사항 등은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52)

제 3절 종 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규칙은 그 형태와 함께 내용 규정에서도 광범위한 양상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조직상의 행정규칙과 행동조 정적 행정규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조직상의 행정규칙

관할, 절차 또는 예산작용과 관련되고, 그러한 한에서 법률을 통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조직규칙, 예산규칙 및 근무 규칙을 조직상의 행정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53) 이러한 규칙에는 전통적으로 순수한 내부적 효력만이 부여되었다.54) 하지만 누가, 어떠한

역시 "「행정규제기본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입안하여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개념상 애매한 부분이나 훈시적·선언적 부분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을 소회한 바 있다. 이상규,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이 뜻하는 것, 고시연구 1997. 9, 13쪽 참조.

⁵²⁾ 동지, 정남철,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법제, 법제처, 2007. 4, 26쪽 이하.

⁵³⁾ Vgl. F. Ossenbühl, Autonomi Rechtsetzung der Verwaltung, in: HStR III, § 65 Rn. 14; Th.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en im System der Rechtsquellen, 2005, S. 63.

⁵⁴⁾ F. Ossenbühl, a.a.O., § 65 Rn. 15; H. Maurer, VerwR, 16. Aufl. München 2006, § 24 Rn. 16; H. D. Jarass,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JuS 1999, 105 (106).

절차로, 어떠한 참가인과 함께 이것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정적 자원, 가령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중대한 기본권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률만을 비로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환시키고 그와 함께 법률의 수범자의 자유의 영역을 형성한다. 그러한 규정들은 부분적으로는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 독자적인 집행권으로도 볼 수 있다.55)

조직규칙 및 복무규칙들은 관할, 절차 또는 예산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계된다. 이 때 이 결정들은 법률을 통해서나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지 않을 경우 혹은 법을 통해 유보되거나 규정된 지침을 넘어서 필요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구성 및 내부의 질서도 규정되는 데 정확히 말하자면 업무 분담과 업무 수행이 규정된다. 이러한 업무상의 행정규칙의 예로 복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2) 행동조정적 행정규칙

행동조정적 행정규칙은 다시 i) 규범(법령)해석규칙, ii)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iii) 재량준칙, iv) 법률대체적 행정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들은 행정의 결정과정 및 다른 조치를 유도·지휘하며 합리화함으로써 행정활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규범(법령)해석규칙

규범(법령)해석규칙은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특히 불확정 법개념이 존재하는 경우 그 해석이나 적용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이다.56) 규범(법령)해석규칙은 구성요건 징표의 내용상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문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질문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

Maurer, a.a.O., § 24 Rn. 9; Th. Sauerland, a.a.O., S. 64.

⁵⁵⁾ F. Ossenbühl, Rechtsquellen und Rechtsbindungen der Verwaltung, in: Erichsen/Ehlers (Hrsg.), VerwR, § 6 Rn. 45; H. Maurer, VerwR, § 24 Rn. 28; H. Hill, a.a.O., S. 990. 56) F. Ossenbühl, Autonomi Rechtsetzung der Verwaltung, in: HStR III, § 65 Rn. 18; H.

이 된다. 이러한 종류의 행정규칙은 말하자면 내적인 해석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그와 더불어 법집행에 있어서 통일성이 최저한도 이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동시에 이를 통해 행정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규범(법령)해석규칙은 판례 또는 학설에 의해서 명백하게 비구속적인, 내부적인 해석지침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불확정 법개념의 해석은 행정에게 어떠한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는 한, 법원에 의해서 전적으로 심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57)

2)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독일 연방행정법원58)의 소위 'Wyhl 판결'로 소위 '규범구체화 행정 규칙'(die sog. normkontretisierenden Verwaltungsvorschriften)이라는, 특정 전제요건 하에서 직접적인 외부효를 갖는 그 밖의 범주가 발전되었다.59) 이러한 '정당화된' 외부효는 가령 법률의 위임, 판단여지 또는 표준화요지, 복잡하고 역동적인 자연과학적 기술적 전문성, 행정규칙 입법자의 특별한 의사, 특히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같은 특별한 절차 및 공포(Veröffentlichung)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의 개관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 때 단순한 구체화뿐 아니라, 통상 법원에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집행부의 수장의 정치적인 결정도 문제된다.60) 하지만 이

⁵⁷⁾ Vgl. F. Ossenbühl, Autonomi Rechtsetzung der Verwaltung, in: HStR III, § 65 Rn. 56; H. Maurer, a.a.O., § 24 Rn. 29; H. Hill, a.a.O., S. 990 ff.

⁵⁸⁾ BVerwGE 72, 300 ff.

⁵⁹⁾ BVerwGE 72, 300 (319 ff.); H., Hill, 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 NVwZ 1989, 401 (409); M. Gerhardt, Aus der neueren Rechtsprechung zum Atom-, Immissionsschutz-und Abfallrecht, DVBI 1989, 125 (127); W. Erbguth, No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 Rechtsdogmatische Grundlagen einer originären Rechtsetzung durch die Exekutive, DVBI 1989, 473 (475 ff.).

⁶⁰⁾ H., Hill, 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 NVwZ 1989, 401 (403);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W. Hoffmann-Riem/E. Schmidt-Aβmann/A. Voβku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I, München 2008, S. 993 f.

때 규범의 예견된 사고(Weiterdenken)의 의미에서의 규범의 해석과 규범의 구체화는 종종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61)

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은 법률상의 구성요건 징표에 포함된 개 념을 구체화한다. 규범해석적인 행정규칙과 대비하여 규범을 구체화 하는 행정규칙은 단순히 법률상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구성요건의 내용을 펼쳐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개방되어 있거나 흠결 된 법률의 규율을 더 상세한 규칙을 통해 구체화 한다. 여기에서는 법률로 정해진 "개방된" 구성요건을 행정에게 구체화하도록 하는 위 임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행정권의 구체화 여지는 당해 법규정으로 부터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히 불특정한 법개념이나 예측의 필 요성 또는 다른 내용상의 특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입법자가 특정 영역에서의 행정규칙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이 규범을 구체화 하는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규칙을 발령할 때 상위의 명 령(Gebot)과 구체화에 필요한 본질적인 인식 및 경험의 상태를 고려하 여야만 한다. 그 외에도 발령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경험과 학문적 인식 상태(수준)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포괄적인 참여절차가 선행되어 야만 한다. 이러한 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의 예로 TA Laerm(소음 기술기준)과 TA Luft(대기환경 기술기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새로운 상의 발전은 유럽법원의 여러 결정을 통해서 중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럽법원은 유럽지침의 전환 을 소위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통해서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62)

⁶¹⁾ R. Wahl, a.a.O., S. 597, Fn. 86;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W. Hoffmann-Riem/E.Schmidt-Aβmann/A.Voβku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Π, München 2008, S. 993.

⁶²⁾ Vgl. F. Ossenbühl, Gedanken zur Kontrolldichte in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Rechtsprechung, in: FS Konrad Redeker, 1993, S. 55 (69); Th. v. Danwitz, 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 und Gemeinschaftsrecht, VerwArch, Bd. 84 (1993), 73 (80 ff.); Ch. Gusy, Problem der Verrechtlichung technischer Standards, NVwZ 1995, 105 (107);

그 이유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불명확한 법적 질 및 효력을 들고 있다.

한편으로 시민은 법원에게 어떤 외부법규범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을 원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행정규칙은 공적으로 강제되어야 하고 법적 안정성 및 제소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청의 행동가능성을 스스로 명확하게 해야 하고 구속적인 것이어야 한다.63) 비전형적인 사태 및 새로운 발전의 경우에 제한된 구속력(Bindungwirkung)은 이러한 요청에 반한다.64)

유럽법원의 이 판결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65) 하지만 이 판결의 결과 다수의 새로운 규정들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6)

3) 재량준칙

재량준칙은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이 법률적으로 수권받은 재량권행사의 일반적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립되는 것으로 소위 '재량유도적 행정규칙'(재량지침, ermessenslenkende Verwaltungsvorschriften)이라고도 한다.67) 재량준칙은 재량권행사의 통일성과 한결같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배적인 학설에따르면 이 경우 행정실무와 평등의 원칙(기본법 제3조)으로 소위 행정의 자기구속이 발생하고 그와 함께 직접적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W. Hoppe/O. Otting, Verwaltungsvorschriften als ausreichende Umsetzung von rechtlichen und technischen Vorgaben der Europäischen Union?, NuR 1998,61 (62).

⁶³⁾ EuGH, Rs. C-59/89, Slg. 1991, I-2607, Rn. 15 ff.; R. Wahl, a.a.O., S. 591.

⁶⁴⁾ R. Wahl, a.a.O., S. 590 f.

⁶⁵⁾ Th. v. Danwitz, a.a.O., 81 ff.

⁶⁶⁾ J. Saurer, Die neueren Theorien zur Nomkategorie der Verwaltungsvorschriften, Verw-Arch, Bd. 97 (2006), 249 (263).

⁶⁷⁾ Vgl. H. Maurer, a.a.O., § 24 Rn. 31; Th.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en im System der Rechtsquellen, 2005, S. 62.

한다.68) 그러한 지침이 적용되는 문제가 되는 '최초의 사례'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대해서 소위 '선취된 행정실무'(antizipierte Verwaltungs-praxis)라고 표현되거나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직접적 외부효가 근거지워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69) 이러한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als-ob의 법 도그마틱'70)으로 또는 전적으로 '환상'71)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72) 게다가 문제가 되는 최초의 사례에 행정의 '알려진 의사행위'를 고려하면, 행정의 독립적·법생산(제조)적 규범의 의사가 고유한 기능영역으로 인정될 것이고 그와 함께 종국적으로 외부효를 갖는 본질적 행정법이 창시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외부효를 갖는 독립적 행정부의 보충법이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은 도그마적으로 명확할 것이다.73) 이에 대하여 H. Mauer는 발령 행정청(행정 규칙을 선택한)이 단지 내부적 구속만을 의도하는 경우 왜 행정규칙의 외부효가 '행정의 의사행위'에 따라 나타나는지 의문이라고 한다.74)

재량준칙은 법률을 통해 법률효과 부분에 부여되는 행정의 행위여 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률로 부여되는 재량 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포함 한다. 이를 통해 재량준칙은 개개의 경우에 행정재량을 객관적으로

⁶⁸⁾ U.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2002, S. 35; H. Maurer, a.a.O., § 24 Rn. 31.

⁶⁹⁾ H. Maurer, a.a.O., § 24 Rn. 22; F. Ossenbühl, Autonomi Rechtsetzung der Verwaltung, in: HStR III, § 65 Rn. 49; Th.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en im System der Rechtsquellen, 2005, S. 192 ff. (행정의 자기구속에 관해서), S. 198 ff. (신뢰보호에 관해서).

⁷⁰⁾ R. Wahl, a.a.O., S. 585.

⁷¹⁾ R. Wahl, a.a.O., Anm. 55.

⁷²⁾ 외부효를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근거지우는 것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Th.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en im System der Rechtsquellen, 2005, S. 195, 197 참조.

⁷³⁾ F. Ossenbühl, Rechtsquellen und Rechtsbindungen der Verwaltung, in: Erichsen/Ehlers (Hrsg.), VerwR, § 6 Rn. 50;

⁷⁴⁾ H. Maurer, a.a.O., § 24 Rn. 25a;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W. Hoffmann-Riem/E.Schmidt-Aßmann/A. Voßku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I, München 2008, S. 991.

행사하기 위한 결정의 기준과 밑그림을 제공한다. 이 점에서 재량준칙은 통일되고 일관적인 재량권행사를 보장하는 과제를 갖는다.

4) 법률대위규칙

법률대위규칙 또는 법률대체규칙은 특정의, 규범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법률적 규정이 없거나 또는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 관계법령이정해지기까지 (과도기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제·지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세분화된 개별 규칙들인데 입법자가 그 복잡성 혹은 특성화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위임하는 경우이다. 이 행정규칙들은 사실상 "법률을 대위하는" 구속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고,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에 기준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률대체적인 규칙은 주로 급부행정 영역에서 특히 '사회법',75) '조세법'76) 및 '보조금법'과 관련이었다.77) 이 때 입법자가 그 복잡성 또는 필요한 구체화를 이유로 행정에게 위임한 상이한 개별규정이 문제된다. 지금까지 공무원법상의보조규정(Beihilfevorschriften)도 이러한 범주에 속했다.78)

그러나 독일연방행정법원79)이 최근에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기본 권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 후부터 법률을 통한 또는 법규명령 을 통한 규율이 요구되었다.80) 하지만 이것을 따를 때까지 그것은 잠

⁷⁵⁾ BVerwGE 94, 335 (339 f.); Bertraum Schulin/Gerhard Igl, Sozialrecht, 7. Aufl. 2002, Rn. 60 ff.

⁷⁶⁾ K. Tipke/J. Lang u.a., Steuerrecht, 18. Aufl. 2005, § 5 Rn. 20 ff.; H.-Ue Erichsen, Verwaltungsvorschfirten als Steuerungsnorm und Rechtsquellen, in: FS Heinrich W. Kruse, 2001, S. 42 f.

⁷⁷⁾ H. Maurer, a.a.O., § 24 Rn. 11; F. Ossenbühl, Rechtsquellen und Rechtsbindungen der Verwaltung, in: Erichsen/Ehlers (Hrsg.), VerwR, § 6 Rn. 28.

⁷⁸⁾ U. Battis, Bundesbeamtengesetz, 3. Aufl. 2004, § 79 Rn. 11; Köpp, Öffentliches Dienstrecht, in: Steiner (Hrsg.), Bes. VerwR, Rn. 100.

⁷⁹⁾ BVerwGE 121, 103 ff.

⁸⁰⁾ BVerwGE 121, 103 (106); C. Tegethoff, Die beamtenrechtlichen Beihilfevorschriften im Lichte der Wesentlichkeit, BayVBl. 2005, 458 (460); R. Summer, Gedanken zum

정적으로 적용된다.81) 이것은 앞서 언급한 사물영역에서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경우 다른 규정들도 여전히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이러한 분류는 상응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행해지게 된다. 그러한 한에서 이러한 범주화도 역시 집행부를 통한 영역을 분리독립하고 계속발전시는, 마치 있을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적인 결정을 위한 '사전규정'(Vorordnung)으로서 '견뎌야 하는' (geduldete)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82)

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 본질적이지 아니한, 즉 기본권 관련성이 없는 영역이 문제되는 한, 문헌에서도 고유한 법정립권한과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외부효를 승인하고 있다.83)

2. 형식에 따른 분류

실정법상 행정규칙은 통상 고시와 훈령으로 발령되는데,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으로서 다시 좁은 의미의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으로 세분된다(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2호, 같은 령 시행규칙 제3조).

(1) 고 시

고시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형식)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 3호, 같은 영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가목). 원래 고시는 언어적 의미

Gexetzesvorbehalt im Beamtenrecht, DÖV 2006, 249 (250 ff.); J. Saurer, Verwaltungsschriften und Gesetzesvorbehalt, DÖV 2005, 587 (591).

⁸¹⁾ J. Saurer, a.a.O., 587 (592).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통제의 불충분한 가능성이라는 표현이로 이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⁸²⁾ Vgl. BVerwGE 121, 103 (111); F. Ossenbühl, Autonomi Rechtsetzung der Verwaltung, in: HStR III, § 65 Rn. 42.

⁸³⁾ R. Wahl, a.a.O., S. 583 f.; Leisner, Verwaltungsgesetzgebung durch Erlasse, JZ 2002, 219 (224); H. Hill, a.a.O., S. 992.

그대로 행정청의 일정한 결정이나 정책사항 또는 법적 효과 없는 일정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고 내지 통지적 의미). 이것은 훈령, 지시, 일일명령, 통첩, 예규, 규정 등 일반적 행정규칙의 형식들이 보통 행정내부의 하급기관 또는 하급공무원에게로 향해져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기도 한다.84)

고시는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85) 즉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공고'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구속력을 가지는 '일반처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규명령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고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공지 (통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부 고시 제 - 호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고, 제○회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하여 일반 국민에게 정부입법계획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고시는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공지내지 통지의 성질을 가질 뿐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특히 현행「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은 고시를 '공고문서'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제3조 제3호), 즉 공고문서란 고시나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고시가 행정규칙이 아니라단순히 통지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또는 고시를 통해 고시의 개정내용을 알리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공고'의 형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86

⁸⁴⁾ 문상덕,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고시)의 법적 성격과 그 통제, 행정법연구 제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7. 6, 164쪽.

⁸⁵⁾ 김도창, 앞의 책, 327쪽; 정남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의 내용 및 법적 문제점, 고 시연구, 2006. 7, 14쪽 이하.

⁸⁶⁾ 정남철, 훈령 · 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고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일반처분'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는 "구 청소년보호법 (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구「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의 법적 성격을 '일반처분'으로 보고 있다.87)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국세청고시는 특정 사업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였다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모든 병마개 제조자에게 알리는 통지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국세청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시 그 자체가 아니라 고시의 실질적내용을 이루는 국세청장의 위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88)

법제, 법제처, 2007. 4, 25쪽.

⁸⁷⁾ 대판 2007.6.14. 선고 2004두619.

⁸⁸⁾ 헌재결 2008. 11. 27, 2005헌마161·189(병합); 헌재결 1998. 4. 30, 97헌마141. 헌재결 2008. 11. 27, 2005헌마161·189(병합).

법규명령적 성질을 가지는 고시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입법형식을 열거적, 한정적인 것이 아닌 예시적인 것으로 보면 법규명령인 고시형식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89) 그와는 대조적으로 경성헌법 아래에서 국회입법의 예외가 되는 입법형식은 헌법 자체에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법규명령인 고시형식에 대하여 헌법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90)

생각건대, 주권재민의 원칙, 대의제의 원칙, 의회입법의 원칙, 경성 헌법의 원칙 등 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제원칙들을 고려해 볼 때, 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입법형식은 상위법령에 단순한 내용적 근거 가 있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창설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시'라는 형식의 또다른 법규명령 형식은 원칙적 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법률에서는 어떠 한 수권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하위의 법규명령에서 일정한 입 법사항을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행정권 에 의한 새로운 입법형식의 독자적 창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91)

한편 부령이라는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행정청, 예를 들면,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에게 '고시'라는 입법형식을 통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법규명령 제정권을 부여하지 않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고,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입법방식은 아니라 할 것이다.92)

⁸⁹⁾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국민서관, 1992, 270쪽.

⁹⁰⁾ 김도창, 앞의 책, 325쪽.

⁹¹⁾ 문상덕, 앞의 논문, 165쪽.

⁹²⁾ 문상덕, 앞의 논문, 165-166쪽 참조.

(2) 광의의 훈령

1) 협의의 훈령

협의의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형식)을 의미한다(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가목).

2) 지 시

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형식)이다(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 3조 제2호 나목). 다만,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이 아닌 것은 행정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3)

3) 예 규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 준을 제시하는 행위(형식)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2 호 다목).

4) 일일명령

일일명령은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행위 (형식)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라목). 그 내용이 일반·추상적 규율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아니고 직무명령%)에 해당할 것이다.95)

⁹³⁾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67쪽; 홍정선, 앞의 책, 256쪽; 정남철,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법제, 법제처, 2007. 4, 27쪽.

⁹⁴⁾ 직무명령은 특정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령으로 공무원 개인을 구속한다. 홍정선, 앞의 책, 256쪽.

⁹⁵⁾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68쪽; 홍정선, 앞의 책, 256쪽; 김대인, 행정입법에 있

제 4 절 효 력

행정규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구속력(Bindungswirkung)의 범위와 강도에 관한 문제이다.

1. 내부적 효과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그 대외적 효과와는 별도로 행정 내부영역에서 내부적 효과를 지닌다. 행정규칙은 하급행정청과 공무원에 대하여적용되고, 그 관계를 규율한다. 행정내부관계에서 행정규칙에 반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계책임 또는 징계벌이 가해질 수 있다. 내부적 효과 역시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이다. 한편, 행정내부적 규율로서 행정규칙은 사인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즉 행정내부적인 행정규칙은 - 그 국가적 내부영역으로의 제한을 이유로 - 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재판에서도 행정내부적인 행정규칙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아니한다.%)

행정내부적 영역 내에서 행정규칙의 사실적 효력의 범위는 그것을 발령한 기관의 조직 및 지시권한을 통하여 확정되고 제한된다. 행정 규칙은 원칙적으로 하급의 그리고 지시에 구속되는 행정청 및 공무원 만을 구속한다. 따라서 장관이 발령한 행정규칙은 그의 행정영역에서 의 행정청 및 공무원만을 구속한다. 그것을 통해서 행정규칙은 어떤 행정주체의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97)

어서 투명성 가치의 실현, 김동희 편, 행정작용법, 박영사, 2005, 509쪽 이하 참조.

⁹⁶⁾ H. Maurer, a.a.O., § 24, Rn. 16.

⁹⁷⁾ H. Maurer, a.a.O., § 24, Rn. 16.

2. 외부적 효과

(1) 간접적・외부적 구속효

행정규칙은 본래 행정내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고 그효과가 외부(국민)에게 미치더라도 그 효과는 간접적·사실적인 것에지나지 않는다.98) 즉 행정규칙이 사실상 외부적 효과를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 직접적 외부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기도 하다.99)

다만, 주로 재량준칙과 관련하여 행정의 실제상 행정의 자기구속의법리,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하여 행정규칙은 상황에변동이 없는 한 영속적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이 때문에 행정규칙은 외부적으로 간접적 구속효를 갖는다는 것이 통설100)·헌법재판소101)의 입장이다. 즉 행정규칙이 외부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행정규칙이 직접적 수범자인 행정기관을 매개로 한 것이며, 법적 효력 역시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이라는 것이 통설적 견해라 할 수 있다.

(2) 직접적·외부적 구속효

그러나 행정규칙은 과연 행정내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에 대해서도, 즉 외부영역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⁹⁸⁾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78쪽.

⁹⁹⁾ 대판 1990. 10. 16, 90누4297; 대판 1983. 6. 14, 83누54; 헌재결 2006. 3. 30, 2003 헌마806.

¹⁰⁰⁾ H. Maurer, a.a.O., §24 Rn. 21 ff.;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70쪽; 홍정선, 앞의 책, 261쪽.

¹⁰¹⁾ 헌재결 2001. 5. 31, 99헌마413.

가질 수 있다. 다수의 행정규칙은 행정청과 공무원의 그의 행정임무를 외부영역에서 수행하고, 그와 함께 시민에 대하여 수행하자마자 곧바로 확정된다. 행정규칙은 그것이 행정청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의 외부효를 발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기준이되는 보조금지침의 전제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된 보조금을 승인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부인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보조금 신청이 지침에 반하여 거부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이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 소송은 신청인이 보조금지침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즉 그가 보조금지침이 사실상의 외부적 효과 뿐 아니라 법적인 외부적 효과도 갖고 그에게 상응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소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규칙의 사실상의 외부효도 법적인 중요성(rechtliche Relevanz)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 그러나 법적인 외부적 효과의 근거 및 유형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102)

행정규칙 중에서도 법규범이 필요한 일정영역에 법규범이 없거나 또는 법적 규율이 있어도 그것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보충 또는 구체화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 나타나는 법률대위적 행정규칙 또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적 외부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법률대위적 행정규칙의 경우, 입법 의 미비 등을 이유로 행정작용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법감 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입법이 보완될 때까지는 잠 정적으로나마 집행권의 규범정립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는 것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103) 다만, 이 견해는 법률대위적 행정규칙 또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의 직접적 외부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¹⁰²⁾ H. Maurer, a.a.O., §24 Rn. 20.

¹⁰³⁾ 홍정선, 앞의 책, 260쪽.

이러한 규칙은 법률의 유보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 5 절 통 제

오늘날 국민생활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고 각 분야의 행정작용에서 행정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현실에서 행정규칙이 실제상 갖는 영향은 법령 못지 아니하다. 행정규칙의 변경은 법률 개정 이상의 영향을 개 인에게 줄 수도 있다. 말하자면 많은 행정규칙의 존재는 법률에 의한 행정을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행 정규칙에 대한 통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104)

1. 입법적 통제

(1) 직접적 통제

행정규칙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은 법규명령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 본문). 그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법위반사실등의 통보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는 행정규칙의 내부법의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105)

¹⁰⁴⁾ 홍정선, 앞의 책, 262쪽.

¹⁰⁵⁾ 홍정선, 앞의 책, 262쪽 참조.

(2) 간접적 통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헌법 제61조), 국무위원해임건의(헌법 제63조), 대정부질문(헌법 제62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 등 국회가 정부 에 대하여 가지는 국정감시권의 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하 는 간접적 통제수단이 있기는 하나, 그 통제효과가 직접적이지 않다 는 한계를 갖는다.

2. 행정적 통제

(1)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제도

우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르면,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 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 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하는 '행정상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법령등에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행 정예고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행정청은 i)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ii)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iii)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 는 사항, iv)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는바, 고시나 훈령 등 행정 규칙이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예고대상 행정규칙의 결정에는 행정청에게 광범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제46조 제1항 단서 참조), 행정실제에서 행 정규칙 예고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2) 법제업무운영규정상 수시사후심사제도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정부조직법 제24조 제1항참조). 그리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포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법규명령과는 달리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의 경우별도의 공포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되어 도달하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통하여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수시 사후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함)은 훈령·예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발령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 입법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법제처장은 등재된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같은 조 제3항).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훈령·예구등의 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훈령·예구등의 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훈령·예구

규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제6항).

행정규칙 사후심사제는 종래 반기별 사후심사제로 운영하였으나, 2006년부터 수시사후심사제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훈령·예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면서 정하는 정부 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등재하더라도 나날이 법령의 심사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행정규칙의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인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사의 강도와 내용의 충실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 수시사후심사제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사전적 취급은 완전히 다르고, 이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그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것은 곧 행정규칙의 형식을 빌려 행정편의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왜곡된 상황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또한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의 규범은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06)

그러나 이미 행정규칙, 특히 법령보충적 규칙은 법령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을 지닐뿐더러, 법적 취급 역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이어서 당연히 법령에서의 심사강도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상위법령에 근거를 둔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한 입법계획이나 입법예고, 법제처의 사전심사(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친다) 등 사전적 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¹⁰⁶⁾ 문상덕, 앞의 논문, 163쪽.

되는 것이 되어, 이런 식으로 제정되는 행정규칙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107)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위원회가 발하는 법령보충 적 고시의 경우, 그 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통제 밖에 놓여 있 다. 비교적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 사건의 경우,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하면서,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 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었 다. 이에 따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 호, 2005. 7. 6)이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로 i) 완 구류, 문구류, 캐릭터, 상품류, 문화상품류, 관광기념품류, 액세서리류, ii) 의류, 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유해 약물, 물건은 제외, iii) 경품교환용티켓(전 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iv)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함)을 규정하였다. 모법률에서 언급하 지 않은 상품권지정제를 두면서, 이와 함께 그 지정권한을 민간기관 에게 위탁하였다. 이미 1999년에 「상품권법」이 폐지되어, 상품권지정 제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하더라 도, 그것이 미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고시 등 행정규칙에 관 한 새로운 사전 또는 사후 통제시스템의 필요성은 자명하다.108)

한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법령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포함하고 있으나, 그 밖의 행정규칙 형식의 규범들에 대해서는 공포절차에서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¹⁰⁷⁾ 문상덕, 앞의 논문, 163쪽.

¹⁰⁸⁾ 김중권, 앞의 책, 431-432쪽 참조.

령인 「관보규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고시와 훈령만 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상 행정규칙 입안 원칙

행정부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훈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정, 2009.5.24 시행, 이하 "훈령관리대통령훈령"이라 한다)에서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훈령·예규등을 입안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i) 필요성, ii) 적법성, iii) 적절성, iv) 조화성, v) 명확성을 들고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알리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구 분	내 용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 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 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제 2 장 행정규칙에 관한 일반론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내부적으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훈령・예규 등에 규정하되,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사항 예시>

- 문서의 도달시기 등 기간 계산에 관한 사항
- 특정한 명칭 사용 금지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
-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확인·지정·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 국민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 또 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
 - 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관한 사항
 - 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
 - 결격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 취득 · 승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승인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승인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 보조금·출연금 등 수익적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보조금·출연금 등의 회수, 취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등의 수령 제한에 관한 사항
- 국민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력, 학력, 지가 등의 산정기준, 특허 등의 분류기준, 자격기준,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련된 사항
- 개선명령 등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관한 사항
-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나 그 예외에 관한 사항
 - 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 구성인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우선순위 등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 법령에 없는 새로운 신분이나 자격을 창설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자격, 면제 · 기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사항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사항 예시>

-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사항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게 하는 사항
-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을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 및 행정업무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출입·검사,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조합 등 민간기관의 결성,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칙 일몰제

1) 의 의

일몰제란 영미에서는 "어떤 정책(프로그램)의 가치가 그 폐지보다도 존속을 정당화하는지 여부, 해당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정책의 당초 목적이 달성된 정도의 평가가 정책의 실적, 영향이 명시적으로 의도된 상태의 형식으로 명확히 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109)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새로운 정책, 규제 등에 대하여 시간을 제한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효력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며, 법률, 한시적 규제, 정책에 대하여 특정 시기의 경과 후에 평가를 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을 지속하거나 종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10)

그리고 행정규칙 일몰제는 "행정규칙 자체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그 존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규제일몰제와 행정규칙 일몰제는 불필요한 규제나

¹⁰⁹⁾ Keith E. Hamm/Roby D. Robertson, Factor Influencing the Adoption of New Method of Legislative Oversight in the U.S. Stat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6, 1981, p. 133, 139;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중간심의자료, 한국 법제연구원, 2011. 7. 5, 20쪽.

¹¹⁰⁾ 박영도, 앞의 자료, 19-20쪽 참조.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목적과 방법이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 법」에 따른 규제일몰제는 기본적으로 개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에 따른 행정규칙 일몰제는 행정규칙 자체의 개선과 정비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규제일몰제는 법령 등에 해당하더라도 규제의 요소가 없으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반면, 행정규칙 일몰제는 모든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한다.111)

2) 행정규칙 일몰제의 적용범위

「훈령관리대통령훈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규칙 일몰제는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한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말한다(훈령관리대통령훈령 제2조 제1항 참조). 다만,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 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훈령관리대통령훈령」의 적용이 배제된다(훈령관리대통령훈령 제3조 제1호 참조).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인 것에 반해, 「훈령관리대통령훈령」은 그 범위를 모든 행정규칙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i)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발령하는 훈령·예규등, ii)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공고, iii) 일일명령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일회성 지시는 「훈령관리대통령훈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훈령관리대통령훈령 제3조).

¹¹¹⁾ 한영수, 행정규칙 일몰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규제일몰제의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1. 5. 15, 44쪽.

3) 행정규칙 일몰제의 적용기준

① 일반적 적용기준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 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본문, 효력상실형 행정규칙 일몰제). 다만, i) 법령 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와 국제적인 절차를 거 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 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 령・예규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훈령관리대통령훈령 제7조 제1항 단서, 재검토형 행정규칙 일몰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i)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위법령과 다른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ii) 해당 훈령·예규등의 조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iii) 그 밖에 해당 훈령·예규등에 3년 이상 계속하여적용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훈령관리대통령훈령 제7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상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훈령·예규등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훈령·예규등을 폐지한 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발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여야 한다(훈령관리대통령훈령 제7조 제3항).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i) 「법제업무운영규정」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ii) 보직·승진·기록관리·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예규등에 대하여는 연구등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있다(훈령관리대통령훈령 제7조 제4항).

② 기존 훈령 · 예규등에 대한 일몰제 적용기준

i) 5년 이상 장기 미개정 행정규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을 「훈 령관리대통령훈령」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제1항).

ii) 제·개정 5년 미만 행정규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훈령관리대통령훈령」시행일까지 개정된 적이 있는 훈령·예규등 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 내에 「훈령관리대통령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에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부칙 제2조 제2항).

iii)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 행정규칙

「훈령관리대통령훈령」시행 당시 해당 훈령·예규등에 존속기한이 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 훈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존 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보므로(부칙 제3조), 별도의 개정절차는 불필요하다.

4) 소 결

행정규칙 일몰제는 규제일몰제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자체의 지속적 정비, 일종의 행정내부적 사후적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제일몰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112)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향후 행정규칙의정비, 더 나아가 행정규칙의 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정규칙을 적절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나 인력, 예산, 시간 등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과연 그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2012년 5월 이후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의 만료일이 집중될 것인 데, 특히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존속기한 경과로 행정규칙이 자동 폐지되므로, 필요한 제도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입법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113)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행정규칙이 자동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의 관심이나 정비 노력 부족 등으로 행정규칙 일몰제가 의도하는 바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 외에 5년 이상 장기 미개정 행정규칙이나 제·개정 5년 미만 행정규칙의 경우 「훈령관리대통령훈령」 부칙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거나 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행정규칙 중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바, 이에 대한 소관부처의 관심이나 정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¹¹²⁾ 한영수, 앞의 발표자료, 52쪽 참조.

¹¹³⁾ 한영수, 앞의 발표자료, 52-53쪽 참조.

3.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종래의 판례는 외부관계에서 행정규칙 그 자체는 처분성의 결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법규성의 결여로 행정규칙이 재판의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하였다. 학설상으로는 행정규칙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그러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국민이 행정규칙 그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그것을 직접 다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14)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순수히 논리적으로만 말한다면, 행정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다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115) 행정규칙이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인정이 용이할 것이나,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기가 비교적 어려울 것이다.116)

¹¹⁴⁾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243쪽.

¹¹⁵⁾ 헌재결 2007. 10. 25, 2006헌마1236.

¹¹⁶⁾ 홍정선, 앞의 책, 263쪽.

제 3 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제 1 절 교육· 과학기술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

			위임건	· 건수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 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 고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 영에 관한 특별법				•	2009.7.31	×
2	고등교육법	1	5	2	8	2010.4.23	
3	과학관육성법	•		•	•	2010.12.1	×
4	과학교육진흥법	•		•	•	2010.6.18	×
5	과학기술기본법	•	1		1	2010.2.4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08.2.29	×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	•	•	2010.10.13	×
8	광주과학기술원법	•	•	•	•	2010.2.26	×
9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	•	•	2008.3.14	×
10	교육공무원법	•	•	•	•	2010.4.15	×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	2010.5.5	×
12	교육기본법	•	•	•	•	2008.6.22	×
1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3	•	3	2010.9.1	

			위임건	· · ·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 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 고
1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	•	•	2010.3.17	×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	•	•	2008.2.29	×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 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٠	•	٠	٠	2009.7.31	×
1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	•	•	2010.3.17	×
1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	•	•	2010.3.17	×
19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 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	•	•	2008.2.29	×
20	기술사법	•	1	•	1	2010.9.1	
21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	•	•	•	2008.2.29	×
2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	•	•	2008.2.29	×
23	뇌연구 촉진법	•	•	•	•	2010.3.19	×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	•	•	2008.12.14	×
2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	•	•	2008.2.29	×
26	대한민국학술원법	•	•	•	•	2008.2.29	×
2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	•	•	•	2008.2.29	×
2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1	3	•	4	2008.2.29	
2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2008.2.29	×
3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1	•	1	2008.2.29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	•	•	2008.2.29	×

			위임건	l수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 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 고
3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 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	•	•	2005.5.31	×
3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	2010.9.18	×
34	사료의 수집 ·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2010.6.18	×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	•	•	1	2010.1.1	
36	사립학교법	1	•	•	1	2010.4.15	
3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	•	•	•	٠	2010.6.18	×
38	생명공학육성법	•	•	•	•	2010.3.19	×
3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	٠	2010.3.19	×
4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	•	•	2010.3.19	×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	2010.3.19	×
42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 용에관한특별법					2001.3.28	×
4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2010.3.17	×
4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	1	1	3	2010.3.17	
45	영재교육진흥법	•	•	•	•	2008.2.29	×
46	우주개발진흥법		1	•	1	2010.3.17	
47	우주손해배상법	1	•	•	1	2008.6.22	

			위임건	· 건수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 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 고
48	윈자력법					2010.3.17	
49	원자력손해배상법	•	•	•	•	2010.3.17	×
50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법률		•	•	٠	2008.2.29	×
5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3		3	2010.3.19	
5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	•	٠	2008.2.29	×
53	유아교육법	2	1	•	3	2010.3.24	
5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1	•	1	2009.4.22	
55	자격기본법	•	٠	•	•	2010.7.5	×
5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1	•	1	2010.7.5	
5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08.9.22	×
5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	•	2010.2.26	×
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	•	2011.1.1	×
6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	•	•	2010.7.5	×
61	초·중등교육법	1	2	3	6	2008.6.22	
6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4	1	1	6	2010.11.18	
63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	•	•	•	2008.2.29	×
6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	•	•	2008.2.29	
65	평생교육법	•	7	•	7	2009.8.9	
6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2009.12.10	×
67	표준시에관한법률	•	•	•	•	1986.12.31	×

			위임건	<u> </u>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 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 고
68	학교급식법	•	1	•	1	2010.11.26	
69	학교도서관진흥법	•	•	•	•	2008.6.15	×
70	학교보건법	1	2		3	2010.12.30	
7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	•	•	2010.12.1	×
7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1	•		1	2010.6.1	
7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	2009.7.31	×
7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	•	٠	2008.9.15	×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		2010.3.19	×
76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 증 등에 관한 법률117)				•	2009.6.26	×
7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	2008.5.26	×
7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4	1	5	2008.6.22	
77	한국고전번역원법	•	•	•	•	2008.2.29	×
79	한국과학기술원법	•	•	•	•	2009.2.6	×
8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	•	•	2009.2.6	×
8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	•	•	2010.3.17	×
8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	•	•	2010.3.17	×

^{117)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은 2011. 7. 21.자로「학술진흥법」(법률 제10877호, 2012. 1. 22 시행)으로 전면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이 대폭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보고서에서는 「학술진흥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행정규칙은 분석하지 아니한다.

			위임건수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 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8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	•	2008.2.29	×
84	한국연구재단법		•	•	•	2009.6.26	×
8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	•	2009.5.8	×
8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	•	•	1	2011.1.1	
8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	•	2010.3.17	×
88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	•	•	2010.3.17	×
8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2	•	2	2008.2.29	
	합계	16	41	8	45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1) 고등교육법

1) 현황표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내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교 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08-	신고방법 및 절	시행령 제17조 (법제27조제1항)		수권 근거는 「행정권한 의 위임 및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72호 2000 7.20 제저 . 시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 조 제2항임
2	72호, 2008. 7.28, 개정·시행)	외국학위과정 에 대한 정보시 스템 구축	법 제27조 제2항	법률/행정 규칙	법률상 수권 근거를 요함
3	-	학·연·산 협동 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시행령 제23조 제2항(법 제29 조 제3항)		
4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2009-31호, 2009. 11. 27, 개정・시행)	산업체 위탁교 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	교육과 설치	시행령 제54조 (법제41조제3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6	「전문대학 3년제 학과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2009-38호, 2009.10.7, 개정·시행)	전문대학 3년제 학과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57조 제2항(법 제48 조 제1항 및 제 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포괄적 · 일 반적 위임(재 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함
7	-	비학위심화과 정의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 영 등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8	-	전문대학 졸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 등	시행령 제58조 의4 제2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9	-	박사학위논문 공표방법	시행령 제51조	대통령령→ 행정규칙	

①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및 외국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고등교육법」제27조 제1항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 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 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08-72호, 2008. 7.28, 개정)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고등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대학¹¹⁸)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118) 「}고등교육법」 제29조는 대학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은 '대학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도 '대학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제40조 제1항은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위탁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2009-31호, 2009.11.27,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④ 교육과 설치

「고등교육법」제41조 제3항은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 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⑤ 전문대학 3년제 학과의 설치 기준

「고등교육법」제48조 제1항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 내지 3년 으로 하되,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수업연한을 3년 으로 하는 경우를 간호과, 방사선과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전문대학의 장이 그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8호, 2009.10.7, 개정·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⑥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 · 등록인원 및 운영 등

「고등교육법」제49조는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제2항은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 심화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⑦ 전문대학 졸업자 중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 등

「고등교육법」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심화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를 구체화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4는 집행명령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를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⑧ 박사학위논문의 공표방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는 박사학위논문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2) 과학기술기본법

1) 현황표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과학영재 조기발굴 및 육 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시행령 제39조 제4항(법 제25 조제3항)		전문기관 지정 관련

2)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법」제25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3항은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1) 현황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특별법 이라 한다")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공계지원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 시 제2009-37호, 2009.9. 23, 제 정·시행)		시행령 제7조 제5항(법 제18 조 제3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연구기획평가사의 업무 등	시행령 제18조 제2항(법 제19 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3	-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과정 운영 등	시행령 제21조 제2항(법 제19 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①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등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제2항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및 변경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신고서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신고서의 서식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 2009.9.23,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과정과 업무의 세부사항 등

「이공계지원특별법」제19조 제1항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자격의 도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국가자격을 연구기획평가사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연구기획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영 제21조 제1항은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연구기획평가사 양성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4) 기술사법

1) 현황표

「기술사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기술사법」 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9-37호, 2009.9.23, 개정ㆍ시행)	국제기술사 자격 요건 및 심사기준	시행령 제11조 제2항(법 제5조 의2제5항)		

2) 주요내용

「기술사법」제5조의2 제1항은 기술사의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 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 2009.9.23,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에 의한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별 평가영역」(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2010-11호, 2010. 2.24 개정・시행)	과정별 시험과목	법 제5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별 평가영역」(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2010-11호, 2010. 2.24, 개정·시행)	위취득시험 과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제5조제2항)	부령→	
3	-	대상 동일분야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시행령 제 9조 제2항, 법 제 5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	행정규칙 발 령권자는 한 국방송통신대 학교총장임
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 시 제2009-37호, 2009.9.22, 일부개정·시행)	위취득 종합시험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의 과목선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본문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경우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별 평가영역」(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11호, 2010.2.24,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제2 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양과정인정시험과 전공분야별 전공기초 과정인정시험·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별 평가영역」(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11호, 2010.2.24,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시험과목 면제대상 동일분야의 범위 및 면제과목의 범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면제대상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면제되는 과정별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범위・면제절차와 강좌 또는 과정의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은 동일분야의 범위와 면제과목의 범위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 독학학위원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④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은 독학에 의한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하되,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9.22, 일부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 현황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주관연구기관 및 정	시행령 제4조	법률→	
1	-	보관리기관 지정 및	제6항(법 제11	대통령령→	
		운영	조 제5항)	행정규칙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1조 제1항은 주관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은 정보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을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 현황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행정기관이 (기준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적용대상 특례	법 제60조의4 제4항	법률→ 행정규칙	포괄적 · 일반적 위임(재위임) 금 지의 원칙에 반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는「사립학교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 법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0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같은 법제3조에 대한 적용대상의 특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등 일정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8) 사립학교법

1) 현황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재무회계규칙	법 제33조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사립학교법」제33조는 사립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고,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교 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 134호,2008.8.1 개정·시행)	진단 실시내용	법 제7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2	-	연구실 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결과 및 실태조사 검 토기준 및 절차	시행령 제12조 제2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급부행정에 관한 사항이 므로 법률상 수권 근거 불요
3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사용 내역서 작성에 관한세부기준	시행령 제14조 제4항(법 제13 조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 2) 주요내용
- 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용・방법・절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2008-134호, 2008.8.1,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검토기준 및 절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그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③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은 대학·연구기 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 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10) 우주개발진흥법

1) 현황표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개발진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발사계획서 작성방법」(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9.23, 개정·시행)	우주발사체 발사 계획서 작성 방법	시행령제13조 (법제11조제 2항)		

2) 주요내용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제1항은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허가 신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기재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사계획서 작성방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9.23,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1) 우주손해배상법

1) 현황표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손해배상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자가 가입하 여야 하는 손해배 상책임보험금액	법 제6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포괄적 · 일반 적 위임(재위 임) 금지의 원 칙에 반함

2) 주요내용

「우주개발진흥법」제6조 제1항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책임보험금액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12) 원자력법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한다.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 현황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방사능재난 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사능재난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 9. 23, 개정· 시행)	원자력시설 등의	시행령 제18조 제5항(법 제12 조제1항)		
2	-	응급조치요원 관련 방사선피폭 기준 및 응급조치절차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 대책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 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9. 23, 일부개정·시행) 및 「물리 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고 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 -42호, 2010. 11.26, 제정·시행)	방사능방재훈련에	시행규칙 제21 조 제3항(법 제 37조제3항)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검사방법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원자력사업자가 받아야 할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 9.23, 개정·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응급조치요원 관련 방사선피폭 기준 및 응급조치절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은 원자력사업자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i)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 등으로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피폭을 방지할 것, ii) 응급조치전에 응급조치요원에게 응급조치의 목적,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선량 및 잠재적위험도 등의 응급조치의 상황을 알리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

하는 응급조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방사선피폭 기준과 응급조치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 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③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한 사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항은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 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9.23, 일부개정·시행) 및「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42호, 2010. 11.26, 제정·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14) 유아교육법

1) 현황표

「유아교육법」은「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아교육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 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유치원교육과정」(교육인적자 원부 고시 제 2007-153호, 2007. 12.19)		법 제13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 관리	법 제14조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제2009-37호, 2009.9. 23, 타법 개정·시행)				
3	-	유아교육비 지원 기준	시행규칙 제4 조제2항(법제 24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① 유치원 교육과정

「유아교육법」제13조 제1항은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0호, 2011.9. 5, 폐지제정, 2012.3.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유아교육법」제14조는 유치원의 원장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9.23, 타법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 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즉 행정계획으로 공고하고 있다.

(1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1) 현황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제 운영규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09-43호, 2009.10.7, 일부개 정·시행)	인적자원개발 우수	시행령 제20조 제4항(법 제14 조제4항)		

2) 주요내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14조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09-43호, 2009.10.7, 일부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현황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2010-44호, 2010. 12.20, 전부개정, 2011.3.1, 시행)		시행규칙 제3조 의2 제3항(법 제 20조 제1항)		

2)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 제1항은 특수교육기관의 유 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 정을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 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교육 교육과 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44호, 2010.12.20, 전부개정, 2011.3.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7) 초・중등교육법

1) 현황표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10-24호, 2010.5.12, 개정・시행)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법 제23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	초·중등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령 제10조	대통령령→ 행정규칙	
3	-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 경비 및 산정 에 관한 사항			
4	-	자율학교등 배치 기준과 범위	시행령 제36조 의3 제1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5	-	학습부진아 등 지 원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	시행령 제54조 제4항(법제28조)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6	「특수목적고등학교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과학기 술부훈령 제182호, 2010.7.29, 제정·시행)		시행령 제90조 제6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초·중 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24호, 2010.5.12,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초 · 중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초·중등교육법」제9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 경비 및 산정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제1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 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 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집행명령 차원에서 교육감이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중학교의무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④ 자율학교등에 대한 교원 배치기준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3 제1항은 교육감이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교원을 증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⑤ 학습부진아등 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

「초·중등교육법」제2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은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은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6항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82호, 2010.7.29, 제 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현황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 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취업 후 학자금 상 환제 시행 관련 규 정」 교육과학기술 부고시 제2011-1호, 2011.1.7, 제정·시행)	취업후 상환 학 자금 대출 자격 요건,금리 등	법 제9조	법률→ 행정규칙	
2	-	생활비 대출원리 금 계산방법	법 제17조 제2항	법률 → 행정규칙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아 닌한국장학재 단이 정하고 있음
3	-	해외이주채무자대 출원리금 상환 방법	법 제20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4	-	의무상환액 체납 사실 통지방법	법 제24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5	-	재산의 소득환산율	시행령 제14조 제2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6	「취업후 학자금상환 사무처리규정」(국 세청훈령 제1891호, 2011.4.1, 제정·시행)	장기미상환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전환 방법 및절차등	시행령 제17조 제4항(법 제19 조 제4항 단서)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수탁기관인) 국세청훈령임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금리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9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 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관련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호, 2011.1.7, 제정·시행)119)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생활비 대출원리금 계산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7조 제2항은 채무자가 상환하여 야 할 생활비 대출원리금의 계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정하고 있지 아

¹¹⁹⁾ 이 규정 외에 20011.7.6자로 「2011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 건, 대출금리, 상환기준소득 등」(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26호, 2011.7.6, 제정)이 제정·고시되었다.

니하고, 다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 중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생활비 대 출원리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③ 해외이주 채무자 대출원리금 상환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20조 제1항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에게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환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④ 의무상환액 체납사실 통지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24조 제1항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의무상환액 체납사실 통지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⑤ 재산의 소득환산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은 같은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하면서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⑥ 장기미상환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환 방법 및 절차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4항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미상환대출원리금의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5조 제2항은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있고, 국세청장은「취업후 학자금상환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91호, 2011.4.1, 제정ㆍ시행)을 통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19) 평생교육법

1) 현황표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 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교 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2호, 2009.12.30, 제정・시행)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증 기준 및 대상 등			
2	-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학적부 관 리 방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법 제31 조제7항)		
3	-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 방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법 제32 조제4항)		
4	-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 설의 학적부 관리 방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법 제33 조제3항 후단)	대통령령→	
5	-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	시행령 제54조 제2항(법 제33 조제5항)		
6	『문자해득 교육과정(초등)』(교 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1호, 2009.6.18,제정, 2010.3.1, 시행)		시행규칙 제22 조 제4항(법 제 39조 제2항, 시 행령 제70조 제 2항)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7	-	문자해득교과서용 도서의 저작 등	시행규칙 제22 조 제5항(법 제 39조 제2항, 시 행령 제70조 제 2항)	법률→ 대통령령→ 부렁→ 행정규칙	

① 평생학습계좌 등록학습과정 평가인증 기준 및 대상 등

「평생교육법」제23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 입 ·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학습과정의 평가 인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평가인정의 기준을 정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2호, 2009.12.30,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 방법

「평생교육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은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없다.

③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 방법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7조 제2항은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④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 방법

「평생교육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은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없다.

⑤ 워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⑥ 문자해득 교육과정

「평생교육법」제39조는 문자해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교원, 시설·설비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은 문자해

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문자해득 교육과정(초등)」(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1호, 2009.6.18, 제정, 2010.3.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⑦ 문자해득교과서용 도서의 저작 등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 제5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¹²⁰⁾에게 문자해득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 경우 문재해득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 정된 바 없다.

(20) 학교급식법

1) 현황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급식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관리기준의준 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	시행규칙 제6 조 제2항(법 제 12조 제2항)		

¹²⁰⁾ 현행「평생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 2011. 1.27, 일부개정)은 2011. 2. 21자로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장관 명칭 변경의 반영이 요구된다.

「학교급식법」제12조 제2항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을 별표 4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급식위생관리 지침서」를 작성·배포하고 있다.

(21) 학교보건법

1) 현황표

「학교보건법」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 「학교보건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 2009.12.23)		법 제9조의2	법률→ 행정규칙	
2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01호, 2008. 6.17 제정· 시행)	학교교육환경평가	시행령 제9조 제4항(법 제6조 의2제2항)		
3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 시 제2009-37호, 2009.9. 23, 개 정·시행)	및 식품위생의 점	조 제3항(법 제	법률→ 부령→ 행정규칙	

①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보건법」제9조의2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 -41호, 2009.12.23)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1)

② 학교교육환경평가서 작성방법 등

「학교보건법」제6조의2 제2항은 학교용지 선정자에 대하여 교육환경평가 의무를 부과하면서,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서류(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평가서의 각항목별 작성방법 및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01호, 2008.6.17, 제정·시행)으로 규율하고 있다.122)

^{121) 2011. 10. 1.}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 2009. 12.23)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122)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01호, 2008 .6.17 제정)은 그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별지 제1호 서식 '교육환경평가서 검 토 신청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검토 신청서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그 조명을 적용범위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고, 제3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려면 법적 근거를 필요로할 것이다.

③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학교보건법」제4조 제1항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시 학교의 장에 대하여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 2009.9.23,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 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 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2011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 제료 산정기준」(교육과학기술 부고시 제2010-381호, 2010.11. 12, 제정·시행)	학교안전공제회	법 제49조 제 3항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381호, 2010.11.12,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행 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학습과정 평가인 정 관련 교수 또 는 강사의 자격	시행령 제5조 제1 항(법제3조제1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	학습과정별 학습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3조 (시행령 제5조 제 2항, 법 제3조 제 1항)	대통령령→	
3	-	원격교육 학습과 정 등 평가인정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시행령 제 5조 제2항, 법 제 3조 제4항)	대통령령→	
4	-	대학 또는 전문대 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학 력을 인정하기 위 한 세부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시행령 제 13조 제2항, 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	포괄적재 위임
5	「표준교육과정」(교육과 학기술부고시 제2009-37 호, 2009.9.23, 개정·시행)	을 위한 표준교육			법률의 근거 요함

2) 주요내용

① 학습과정 평가인정 관련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정하면서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관한 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학습과정별 학습설비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그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특히 학습설비의 경우 학습과정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설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격교육 학습과정 등 평가인정의 세부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영 제3조12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

¹²³⁾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에 관한 사항의 근거는 영 제3조가 아니라 영 제5조라고 생각된다.

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 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학습자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⑤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는 같은 령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 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표준교육과

정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표준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 9.23 개정)을 제정·고시하고 있다.124)

(2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 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 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학자금 지원 대상 자의 추천 등	법 제49조의5 제4항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제4항은 고등교육 기관의 장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

¹²⁴⁾ 이 고시의 명칭은 「표준교육과정」인데, 그 제목만으로는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된 '표준교육과정'도 표준교육과정 별책의 차례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과정이 학점은행제와 관련 있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고시의 명칭에서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고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기준, 대상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1) 현황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 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 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융합에너지 개 발진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 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연구개발사업 기획・			
1	-	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2항(법 제8조	대통령령→	
		방법 및 절차 등	제5항 제2호)	행정규칙	
		핵융합에너지 전문인	시행령 제15조	법률→	
2	-	력 양성기관 지정방	제2항(법 제10	대통령령→	
		법 및 절차 등	조 제3항)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8조 제1항 전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한다)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협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②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방법 및 절차 등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10조 제3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명령 차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125)

			위임건	·수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2010.7.26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	•	2	2010.12.1	
3	개항질서법	•	•	•	•	2009.12.10	×
4	건널목개량촉진법	•	•	•	•	2008.3.21	×
5	건설기계관리법	1	•	•	1	2010.7.1	
6	건설기술관리법	•	4	1	5	2010.10.13	
7	건설산업기본법	•	6	1	7	2010.7.5	
8	건축기본법	1	•	•	1	2008.6.22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1	1	2010.7.13	
10	건축법	•	•	•	•	2010.12.30	
11	건축사법	1	•	•	1	2010.10.13	
12	경관법	•	•	•	•	2008.3.21	×
13	고속국도법	•	•	•	•	2008.3.21	×
14	골재채취법	•	•	•	•	2009.10.23	×
1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4	•	4	2010.10.13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		•	•	2011.1.1	×
1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	•	•	2010.4.5	×

¹²⁵⁾ 국토해양부소관 법률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항만법」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까지에 관한 현황 분석은 생략한다.

제 3 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위임건	<u></u>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2010.11.18	×
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	2009.7.2	×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		•	2010.10.16	×
21	교통안전공단법	•	•	•	•	2009.1.30	×
22	교통안전법	1	5	•	6	2010.6.30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1	1	2010.6.30	
2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	•	•	2009.8.23	×
2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	2	•	4	2010.12.1	
26	국제선박등록법	•	•	•	•	2009.8.7	×
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 안에 관한 법률	•	•		٠	2009.12.10	×
28	국토기본법	•	•	•	•	2009.12.10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1		2	2010.12.1	
30	궤도운송법	2	1	•	3	2009.10.23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2	•	2	2011.1.1	
3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		•	2008.12.26	×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 한 특별법	•	1		1	2010.1.1	×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	•	•		•	2010.3.22	
35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2010.12.1	×
36	도로법	•	•		•	2010.12.1	
37	도선법	•	•	•	•	2010.6.30	×

			위임건	수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	•	1	2011.1.1	
39	도시개발법	•	•	1	1	2011.1.1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2010.4.15	×
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	•	•	2011.1.1	×
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	•		1	2011.1.1	
43	도시철도법	1	2	•	3	2010.12.1	
4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2010.12.1	×
4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 한 법률	•	•		•	2008.2.29	×
4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 전 특별법	•	1		1	2010.12.1	
4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		٠	2010.12.1	×
4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		•	2010.12.1	×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		•	2011.1.1	×
50	물류정책기본법	2	•	•	2	2010.11.18	
5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	•	٠	2010.12.1	×
5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			2	2011.1.1	
5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		1	1	2010.3.17	
5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2	•	2	2010.1.1	

			위임건	수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55	부동산투자회사법	•	2	1	3	2010.11.18	
56	사도법	•	•	•	•	2008.3.21	×
57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를 위한 특례법	•	•	•	•	2010.10.16	×
5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2011.1.1	×
59	선박등기법	•	•	•	•	2009.12.29	×
60	선박법	•	•	•	•	2011.1.1	×
61	선박안전법	•	4	23	27	2010.7.16	
62	선박직원법	•	2	6	8	2010.6.30	
63	선박투자회사법	•	•	•	•	2009.5.22	×
64	선원법	4	4	1	9	2010.12.30	
6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	•	•	2010.4.5	×
6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	•	•	2010.12.1	×
67	수도권정비계획법	2		1	3	2011.1.1	
6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1	2	1	4	2009.12.29	
6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	•	•		•	2011.1.1	×
70	신항만건설촉진법	•	•	•		2010.12.1	×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11.1.1	×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2009.11.28	
73	연안관리법	•			•	2010.12.1	×
74	외국인토지법	•	•			2009.6.27	×
7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	2010.7.1	×
76	유료도로법	•	•	•	•	2009.12.29	×
7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1		1	2009.11.28	

			위임건	.수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7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	•	•	1	2010.12.1	
7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	•	•	2009.3.25	×
80	임대주택법	•	2	•	2	2009.12.29	
81	자동차관리법	•	15	1	16	2011.1.1	
8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	•	1	2010.2.7	
8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	•	•	2010.7.16	×
8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	•	2009.4.1	×
85	주차장법	•	3	•	3	2011.1.1	
86	주택법	1	7	1	9	2011.1.1	
8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1	4	1	6	2009.12.10	
8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	•	2011.1.1	×
89	지하수법	•	•	1	1	2011.1.1	
90	철도건설법	•	•	•	•	2010.12.1	×
91	철도사업법	•	2	•	2	2009.7.31	
9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	•	•	2009.12.10	×
93	철도안전법	•	19	2	21	2009.4.1	
9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	4	3	1	8	2009.12.10	
95	택지개발촉진법	•	2	1	3	2011.1.1	
9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	•	•	2010.10.16	×
9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 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	•	•	2010.11.18	×
98	하천법	•	6	•	6	2010.12.1	

			위임건	수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9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٠	2009.6.26	×
100	한국공항공사법	•	•	•	٠	2010.9.23	×
101	한국도로공사법	•	•	•	•	2009.7.31	×
102	한국수자원공사법	•	•	•	•	2010.12.1	×
103	한국철도공사법	•	•	•	٠	2010.1.1	×
10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٠	•	٠	2009.1.30	×
10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	•		•	2009.12.10	×
10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	•	•	2010.12.29	×
10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 한법률	•	•	•	•	2008.2.29	×
10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		•	2009.2.6	×
109	한국해운조합법	•	•	•	•	2008.2.29	×
11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		•	2009.12.10	×
111	항공법	•	•	•	٠	2010.12.1	
11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6	2		8	2010.9.23	
113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	•	•	2010.3.17	×
114	항로표지법	•	•	•	•	2011.1.1	
115	항만공사법	•	•	•	•	2010.12.1	×
116	항만법	•	•	•	•	2011.1.1	
117	항만운송사업법	•	•	•	•	2011.1.1	×
118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 한 지원특별법	•		•	•	2009.5.27	
119	해상교통안전법	•	•	•	•	2010.6.30	
120	해양과학조사법	•	•	•	•	2008.2.29	×
1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	•	•	•	2009.12.29	

			위임건	·수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1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2010.4.23	
1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	•	٠	2009.11.28	
1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٠	٠	٠	٠	2011.1.1	
125	해양환경관리법	•	•	•	•	2011.1.1	
126	해외건설촉진법	•	•	•	•	2010.10.13	
127	해운법	•	•	•	•	2011.1.1	
1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2011.1.1	
129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 별법	•	•	•	•	2010.12.1	×
	합계	16	41	8	65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현황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 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 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 2009-148호, 2009. 12.18, 개정・ 시행)		시행령 제27조 제5항(법 제16 조 제4항)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 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77 호, 2009.10.12, 제정·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시행령 제2조 제3항(법 제3 조 제2항)		

2) 주요내용

①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의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009-148호, 2009. 12.18,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 항은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대상을, 같은 조 제2항은 지정시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77호, 2009.10.12,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2) 건설기계관리법

1) 현황표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5 호, 2009.12.24, 개정·시행)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 관리 방법 및 절차	법 제30조의2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30조의2는 건설기계조종사가「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필 요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규명령 등에 대한 위 임 없이 곧바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5호, 2009.12.24,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

1) 현황표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건설기술 심의시 요구되는 서류 작 성 및 제출 등	시행령 제13조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 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	건설신기술 평가기 준 및 절차 등	시행령 제40조 제5항(법 제18 조제2항)		
3	부 고시 제2010-973호, 2010.12. 23, 개정·시행)	건설신기술 보호기 간연장 및 활용방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법 제18 조제6항)		
4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국 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4호, 2010.12.30, 제정・시행)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시행규칙 제75 조 제4항(시행 령 제120조 제 3항, 법 제36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5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10-547호, 2010.8. 12,일부개정·시행)	우수거석 및 욧역		법률→ 대통령령→ 다통령 → 부령→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건설기술 심의시 요구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제1항은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중앙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영 제13조 제1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하여요구되는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관계 서류의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126)

② 건설신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제2항은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는 지정신청시 제출절차에 관한 사항 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지정절차에 관한

¹²⁶⁾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 아니고, 각종 서식은 부령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굳이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부령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73호, 2010. 12.23,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활용방법 등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제3항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기술 보호기간, 기간의 연장, 그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이하에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④ 건설공사 시공평가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제1항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평가의 기준·절차·항 목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은 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 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평가자의 구성, 평가시기, 결과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공평가의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4호, 2010.12.30,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⑤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지정 전문분야 분류 기준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제2항은 발주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 공능력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평가의기준·절차·항목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 지정요건, 지정기간,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은 그 밖에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건설 및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47호, 2010.

(4) 건설산업기본법

1) 현황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 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2010.11.10, 개정・시행)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시행령 제16조	대통령령→ 행정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 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 -363호, 2009.8.24, 제정ㆍ 시행)	하도급 금지의 예외	시행령 제31조 제2항(법 제29 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	
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5 호, 2009.8.24, 개정·시행)	하도급 심사기준	시행령 제34조 제3항(법 제31 조제1항)		
4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 액」(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232호, 2008.6.16, 제정·시행)	공종 및 하도급계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금액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 시 제2010-956호, 2010.12.20, 개정·시행)	하도급대금지급보 증서 발급금액적 용기준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 요금액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6호, 2009.8.24 개정·시행)	건설근로자 퇴직공 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시행령 제83조 제2항(법 제87 조제2항)		
7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공시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94호, 2009. 8.24, 제 정·시행)		시행규칙 제23 조 제1항 단서 (법 제23조 제 1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는 건설업 기술능력·자본금 등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법률상 수권 근거 없이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기술능력 등과 관련한 건설업 등록 기준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특히 기술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은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0-175호, 2010.11.10,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하도급 금지의 예외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 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건설 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 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 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는 예 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를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63호, 2009. 8.24,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하도급 심사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1항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발주자가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25호, 2009.8.24,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④ 하도급 공사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 제1항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국가·지 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 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 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 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하도급 대상자, ②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③ 하도급할 공사의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하지만 현행「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지 아니하고있고, 오히려「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2호, 2008.6.16, 제정ㆍ시행)을 통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 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 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 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 장관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956호, 2010.12.20,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제1항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근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령이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26호, 2009. 8.24,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⑦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건설업자 시공능력을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에규 제94호, 2009.8.24,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5) 건축기본법

1) 현황표

「건축기본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건축기본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 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325호, 2009.12.28, 제정・시행)	공공공간 건축디자 인 기준	법 제21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건축기본법」제21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명령의 성격을 갖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127)을 열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25호, 2009.12.28, 제정ㆍ시행)을 통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¹²⁷⁾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i)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ii)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iii)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iv)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분양사업장 설치기준」(국토해 양부고시 제2009-1070호, 2009. 11.12, 일부개정·시행)	[분양사업상 설치	시행령 제8조 제4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분양 광고에 따른 공개분양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분양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면서, 다만, 2번째 이후의 분양광고로서 광고문안에 대지의 지번,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명칭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분양사업장(분양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게시함을 밝힌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분양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0호, 2009. 11.12,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7) 건축사법

1) 현황표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859호, 2009. 9.2, 개정·시행)	공공발수사업에 대하 거추사이 언	법 제19의3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건축사법」제19조의3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이라는 조명 하에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고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

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859호, 2009.9.2,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1) 현황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공간정보 및 가공 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 어·서비스 등 품 질인증 절차	제2항(법 제12		
2	-	공간정보 및 가공 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 어·서비스 등 품 질인증기관 지정 절차	시행령 제8조 제4항(법 제12 조제5항)		
3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68호, 2009.10.1, 제정·시행)		시행령 제11조 제5항(법 제15 조제2항)		
4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 양부고시 제2009-969호, 2009. 10.1, 제정·시행)		시행령 제13조 제4항(법 제18 조제5항)		

2) 주요내용

①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2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국 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 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실시하 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품질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 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품질인증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품질 인증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요건, 지정 공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밖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도 제 정된 바 없다.

②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제2항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한 예산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8호, 2009.10.1,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항은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그 지정요건, 지정에 관한공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에 지정 및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9호, 2009.10.1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9) 교통안전법

1) 현황표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교통안전법」상 행 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교통안전진단비용	법 제46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664, 2009.8.21, 개정・시행)	교통안전진단 결과 평가	시행령 제34조 제4항(법 제45 조제3항)		
3		교통안전 교육·훈 련과정 등	시행규칙 제10 조 제2항(법 제 39조 제2항, 시 행령 제32조 제 1항)	대통령령→	
4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국토 해양부 훈령 제138호, 2008.8. 19, 제정·시행)	교통안전점검 분야 및 대상 등	시행령 제20조 제5항(법 제33 조제2항)	법률→ 대통령령 법규명령→ 행정규칙	
5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2호, 2009.8.21, 개정·시행)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평가	시행규칙 제5 조제2항(법률 제21조제3항)	부렁→	
6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고 시 제2010-667호, 2010.9.28, 제 정·시행)	자동차 운행기록 제 출방법, 점검 및 분 석 등			

2) 주요내용

① 교통안전진단 비용

「교통안전법」 제46조 제1항은 교통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안전진단 비용

의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64호, 2009.8.21,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교통안전점검 분야 및 대상 등

「교통안전법」제33조 제1항은 주기적 또는 수시교통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안전점검의 분야·대상과 분야별·대상별 점검 항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교통안전점검 대상 교통체계, 분야, 대상, 항목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밖에 교통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따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38호, 2008.8.19,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은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교통안전진단 결과 평가

「교통안전법」제45조 제1항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 안전진단기관이 행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평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평가대상, 평가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평가의 대상 및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교통안전진단지침」으로 규율하고 있다.

④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

「교통안전법」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 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 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1조 제 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 평가는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의 확인·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 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2호, 2009.8.21, 개정·시행)을 제정·고 시하고 있다.

⑤ 교통안전교육・훈련과정 등

「교통안전법」제39조 제1항은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인적 요건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마친자'를 구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교통안전진단지침」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⑥ 자동차 운행기록 제출 방법, 점검 및 분석 등

「교통안전법」제55조 제1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운행기록장치 창작의무자에 대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운행기록의 보관 및제출방법,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밖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67호, 2010.9.28,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 현황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이행강제금 산정기 준 등	시행령 제23조 제2항(법 제34 조 제2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종별 및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인건비·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 된 바 없다.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 현황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지능형교통체계 표 준 및 품질인증 등	법 제83조 제4항	법률→ 행정규칙	
2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수수료 산정 기준	법 제88조 제4항	법률→ 행정규칙	
3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 시 제2010-167호, 2010.4.1, 제 정·시행)	교통신기술 심사기 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 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교통신기 술의 지정 및 보호 에 필요한 사항	제5항(법 제102		
4	-	교통신기술 시범사 업 참여 교통신기 술개발자에 대한 지 원방법 또는 선정 기준 등	시행령 제99조 제3항(법 제102 조 제2항 및 제 4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 2) 주요내용
- ①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품질인증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제1항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의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수료 산정 기준과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관련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②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8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이들이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③ 교통신기술 심사기준, 심사 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제1항은 교통신기술 지정에 관하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교통신기술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교통신기술 심사기준, 심사 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67호, 2010.4.1,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④ 교통신기술 시범사업 참여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99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 관이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 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 토해양부훈령 제669호, 2010. 12.31, 전부개정 · 시행)	공동구 설치 시설 물 기준	법 제44조 제7항	법률→ 행정규칙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 해양부훈령 제636호,2010.10.1, 개정·시행)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공동구 설치 시설물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동구 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구 설치 및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669호, 2010.12.31, 전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636호, 2010.10.1,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13) 궤도운송법

1) 현황표

「궤도운송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궤도운송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설비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418호, 2010.6.24, 개정·시행)	궤도시설 설비기준	법 제15조	법률→ 행정규칙	
2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10-419호, 2010. 6.24 개정·시행)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	법 제19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3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국 토해양부고시 제2010-420호, 2010. 6.24, 제정·시행)	궤도시설 점검 항 목 및 절차	시행령 제17조 제2항(법 제22 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궤도시설 설비기준

「궤도운송법」제15조는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8호, 2010.6.24,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궤도운송법」제19조 제1항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해당 궤도시설에 관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9호, 2010.6.24,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궤도운송법」제22조 제2항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실시하여야 할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0호, 2010.6.24,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 현황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국토해양부훈령 제303호, 2009. 8.5, 개정·시행)	1 기억 도시 개막이의	시행령 제12조 제4항(법 제8조 제6항)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 책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534호, 2009.8.5, 개정·시행)	용 및 시행방법 등	I 시 에 더 세 I U 수		

2) 주요내용

①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 제6항은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전단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후단은 그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303호, 2009.8.5,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이주대책 세부내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4조 제6항은 사업자의 이주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그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하는 세부사항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국토해양부장관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34호, 2009.8.5 개정)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95호, 2009. 8.24, 일부개정·시행)	중교통시설에 관	시행령 제9조 제 2항(법 제9조제 1항 및 제2항)		

2) 주요내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도시의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도로·공항·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95호, 2009.8.24, 일부개정)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현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0호, 2009. 8. 13, 일부개정・시행)	시공자의 선정방 법등	법 제11조 제1 항본문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제1항 본문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0호, 2009.8.13,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7) 도시개발법

1) 현황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감정가격 이하로 조 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		대통령령→ 행정규칙	관련 조문은 대통령령 제 58조 제2항임

2) 주요내용

「도시개발법」제27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7조의 위임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별도의 법률상의 수권 근거 없이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 추후 제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관한 법률상 수권 근거를 정비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 현황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국토해 양부고시 제2009-611호, 2009. 8.20, 일부개정)	[재정비존시사영인	법 제31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제1항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재정비촉진사업의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11호, 2009. 8.2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9) 도시철도법

1) 현황표

「도시철도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 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철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 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국토 해양부고시 제2010-48호, 2010. 1.26, 개정・시행)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법 제22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권고적 사항임 (법규성 없음)
2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07 호, 2008.10. 29, 개정·시행)	, –			
3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 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68호, 2010. 7.14, 개정·시행)	도시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령 제25조 의6 제1항(법제 22조의4 제3항)		

2) 주요내용

①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도시철도법」제22조 제1항 본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이를 도시철도차량 또는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현재 도시철도차량에 대해서만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8호, 2010.1.26,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

「도시철도법」제22조의3 제1항 전단은 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과성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시험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성능시험의 대상·기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성능시험을 하는 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성능시험의 대상을, 같은 영 제25조의3은 성능시험의 인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5조의4는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07호, 2008.10.29,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성능시험자의 지정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밖에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자 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47호, 2010.1.4,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지정고시의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라 할 것이다. 즉 시행령은 지정에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고시는 성능시험자로 지정한 결과를 통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면위임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도 있기는 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정하지아니할 수도 있고, 여하튼 지정의 결과를 알린다는 의미의 고시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도시철도법」제22조의4 제1항 본문은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절차,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 제1항은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면서 그 대상 및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68호, 2010.7.14,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 현황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제34 조제4항(법 제 25조 제3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행정규칙 제 정권자를 잘 못 지정함

2) 주요내용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5조 제1항은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투자진

흥지구의 지정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 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 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시·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21) 물류정책기본법

1) 현황표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 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정책기본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 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 양부고시 제2009-538호, 2009. 8.24, 개정・시행)		법 제26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2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령」(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537호, 2009. 8.24, 일부개정・시행)		법 제41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 2) 주요내용
- ①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물류비 산정 기준 및 방법

「물류정책기본법」제26조 제1항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38호, 2009.8.24,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

「물류정책기본법」제41조 제1항은 종합물류기업인증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0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4호)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 (2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1) 현황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공공 건설임대주택 특별법"이라 한다)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부도공 공건설임대주택 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 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요청 등의 절 차 및 방법	법 제6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2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10호, 2009. 8.24, 개정·시행)	매입대상주택 지정 신청, 연차별 매입 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9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요청 등의 절차 및 방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법」제6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부도임대주택 매입 요청 시제출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매입요청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10호, 2009.8.24,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매입대상주택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법」제9조 제1항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매입대상주택 지정 신청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매 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병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 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97호, 2010.8.27, 개정·시행)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시행령 제7조 제2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집행명령적 성격의 대통 령령임

2)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

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 명령의 성격을 갖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업무수행능력에 관한 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97호, 2010.8.27,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 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 시 제2010-231호, 2010. 4.22, 제 정·시행)	부동산개발 공동사	시행령 제7조 제3항(법 제4조 제4항)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816호, 2009. 8.25, 개정·시행)	부동산개발 전문인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협약 표준기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부터 제3 항까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4항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함이 없이 등록사업자와 공 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으 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 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 은 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 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부 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1호, 2010.4.22,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인정 기준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에 곤하여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해석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시설'에 한정할 수도 있고,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시설'에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여하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16호, 2009. 8.25, 개정·시행)을 통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③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은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의 무화하면서 교육기관, 교육과정, 사전교육의 면제대상,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사전교육기관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은 은 조 제2항은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과정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자격분야별 면제 대상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교육시간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18호, 2009.8.25, 개정·시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6항은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사전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⑤ 부동산개발의 표시 · 광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표시·광고에 밝혀야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들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17호, 2009.8.25,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⑥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은 등록 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정조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시정조치의 하나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17호, 2009.8.25, 일부개정ㆍ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25) 부동산투자회사법

1) 현황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인가 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09- 115호, 2009.8. 25, 개정·시행)				
2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16호, 2009.8.25, 페지제정·시행)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시행령 제18조 제5항(법 제22 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3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 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33 호, 2009.8.25, 폐지제정·시행)	투자보고서에 포함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에 필요한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의 임대차, 증권의 매매) 및 제6호(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 제1호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영업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09-115호, 2009. 8.25,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 제1항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화사가 확보하여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이수하여야 할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009-116호, 2009.8.25, 폐지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③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제37조 제1항은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명령 차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투자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128)(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33호, 2009.8.25, 폐지제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안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 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국토해양 부예규 제2009-138호, 2009.11. 24, 제정·시행)	국내 조선소에서 건 조된 외국선박에 대 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 범위 등	조 제2항(법 제		
2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379호, 2011.7. 22, 일부개정·시행)	선박용물건의 결 정,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		법률→ 행정규칙	
3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813호, 2009. 8.24, 일부개정·시행)	선박용물건 또는 소 형선박의 선체에 관 한 예비검사 대상 및 기준 등	법제22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¹²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상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시행 2009.8.25]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33호, 2009.8.25, 폐지제정]과 같은 내용의훈령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시행 2009.8.25] [국토해양부훈령 제 2009-432호, 2009.8.25, 폐지제정]이 중복하여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는바, 1개의 훈령만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4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 및 검 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560호, 2009. 8.10, 일부개정· 시행)		법 제23조 제4 항, 시행규칙 제 58조 제2항(법 제23조 제7항)	법률→ 행정규칙/ 법률→ 부령→ 행정규칙	
5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10-184호, 2010. 4.1, 일부개정·시행)	(정기점검방법 또 는 계속점검방법을 위한) 컨테이너 안 전점검 기준	시행규칙 제64 조제2항(법제 24조제3항), 안 전한 컨테이너 를 위한 국제 협약부속서 I 제2규칙		
6	「선박구명설비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11-295호, 2011.6. 14, 일부개정·시행)	선박구명설비기준	법 제26조	법률→ 행정규칙	
7	「선박기관기준」(국토해양부고 시 제2009-1143호, 2009. 11.30, 일부개정·시행)	선박기관기준	n	n	
8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	선박설비기준	"	"	
9	시 제2011-296호, 2011.6.14, 일 부개정·시행)	법 제33조 제1항, 제2항			
10	「선박소방설비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10-449호, 2010.7.1, 일부개정·시행)	선박소방설비기준	n	n	
11	「선박전기설비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577호, 2009.8. 10, 일부개정・시행)	선박전기설비기준	n	"	
12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 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3 호, 2010.5.26, 일부개정·시행)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n	n	
13	「수면비행선박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11-82호, 2011.3.10, 제정·시행)	수면비행선박기준	"	"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4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 시 제2010-109호, 2010.2.11, 일 부개정·시행)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n	n	
15	「선박만재흘수선기준」(국토해 양부고시 제589호, 2009.8.10, 일부개정·시행)	선박만재흘수선 기준	법 제27조 제1항	"	
16	「선박복원성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590호, 2009.8.10, 일부 개정·시행)	선박복원성기준	법 제28조 제1 항, 제3항, 제4항	"	
17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547호, 2009. 8.7, 일부개정·시행)	선박위치발신장치 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	법 제30조 제1항	"	
18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법 제37조	"	
19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812호, 2010.		법 제41조의2 제6항		
20	11.12, 일부개정·시행)	선박에서의 사용금 지대상 고인화성연 료유 등	법 제44조	n	
21	-	소독약품 사용시 안 전조치방법	법 제38조	n,	
2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 양부고시 제2009-573호, 2009.8. 10, 일부개정·시행)	산 적 액 체 위 험 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 에 관한 기준	법 제41조 제4항	"	
23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556호, 2009. 8.10, 일부개정·시행)	강화검사 기준	시행규칙 제80 조 제2항(법 제 42조 제1항 및 제2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4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7호, 2009.8.10, 일부개정·시행)				

(27)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직원 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 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 비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293호, 2011.6.13, 일부개정· 시행)	해기사시험 과목내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5 항(법제5조제 1항제1호)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 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43 호, 2009.8.20, 일부개정·시행)	상선해기사 승선실 습 프로그램			
3	-	위험물 적재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 의 승무기준 등	시행령 제22조 제6항(법 제11 조제1항)		
4	「지정교육기관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11-292호, 2011.6. 13, 일부개정·시행)	지정교육기관 지정 기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시행령 제2조제7호)	부렁→ 행정규칙	
5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국 토해양부고시 제2009-378호, 2009. 6.11, 일부개정·시행)	승무경력 인정방법 및 훈련기록부	시행령 제9조 제2항및제6항	부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6	-	승무경력 인정을 위 한 비행경력증명서 작성 방법	시행령 제14조 의4 제3항	부렁→ 행정규칙	
7	「해기품질기준」(국토해양부고 시 제2009-742호, 2009. 8.20, 일 부개정ㆍ시행)	해기품질기준	시행규칙 제21 조 제2항(시행 령제16조의2 제3항)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8	-	외국인해기사에 대한 해사법교육 내용・시간 및 교육기관지정 등에 필요한사항	시행규칙 제22 조의6 제7항(시 행령 제17조 제 4항)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28) 선원법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원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 102호, 2009.8.21, 일부개정· 시행)	승선평균임금 산정		대통령령→ 행정규칙	
2	-	승선 공인신청시 여객선선장의 기준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법 제45조 제3항)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3	「선원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 부훈령 제372호, 2009. 8.20, 일 부개정·시행)	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법 제45조 제3항 본문)		
4		선원의 근로시간및 승무원 정원에 관 한기준	법 제66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5		선원의 구직·구인 등록에 관한 사항	법 제100조 제1 항 및 제2항	법률→ 행정규칙	
6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49호, 2009. 8.21, 일부개정·시행)	선원임금채권보장 기금의 운영에 관 한사항			
7	「선원 최저임금 고시」(국토해 양부고시 2011-919호, 2010.1 2·시행) ¹²⁹⁾		법 제54조		
8	-	선내급식비 최저 기준액	법 제75조 제4항 및시행령제23조		
9	「외국인선원관리지침」(국토해 양부고시 2009-747호, 2009.8. 21 일부개정·시행)	외국인 선원의 고 용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9조제 1항 제4호(법 제 104조 제3항)		

(29) 수도권정비계획법

1) 현황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 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

¹²⁹⁾ 이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1년 도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85호, 2010.12.24, 제정ㆍ 시행)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	법 제14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 호, 2009.3. 4, 제정·시행) ¹³⁰⁾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	시행령 제22조 제1항(법 제18 조제2항)	법률→ 행정규칙	
3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523, 2009. 8. 일부개정·시행) ¹³¹⁾		시행령 제13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¹³⁰⁾ 이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¹³¹⁾ 이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며,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85호, 2010.12.24, 제정·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 산출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앞서 언급한 산출방식에 따라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변경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호, 2009.3.4, 제정·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 본문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연보전권역에서는 i)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

업, 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행위나 그 허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같은 법 제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열거하면서,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3, 2009. 8.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3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현황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 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행정기 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 토해양부고시 제2009-826호, 2009.8.25, 폐지제정·시행)	밀안전진단 기	시행규칙 제4조제 2항(법 제6조 제3 항 및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제1 항 및 제2항)	부령→ 행정규칙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787호, 2009.8. 24, 일부개정·시행)		시행령 제8조 제1 항(법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 부고시 제2010-1037호, 2010. 12.31, 일부개정·시행)		법 제13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4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2004. 11.10, 개정 ·시행)	설계도서 등 사 본 작성 및 관리	시행규칙 제20조(법 제17조 제6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행정규칙 일몰제 위반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과정·내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실시 하여야 하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 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 하 에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집행명령 차원에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 항은 교육과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26호, 2009. 8.25, 폐지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은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7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 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7호, 2010.12.31,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④ 설계도서 등 사본 작성 및 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6항은 시설물의 발주자, 시공자, 관리주체 등이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설계도서 등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2004.11.10,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3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1) 현황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국토해양부 공 고 제2009-1100호, 2009. 12. 31, 개정·시행)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 결하는자	시행규칙 제2 조제5호(법제 15조제2항)		공고적 성격 의 고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제2항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법제8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그 하나로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요건을 정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관련 국토해양부고시인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100호, 2009.12.31, 개정ㆍ시행)에서는 그 요건은 정하지 아니하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다.

(3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건설 · 정보통신 융합기술의 기준	법 제20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본문은 국 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 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32)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은 융합기술의 기준을 별도로 제정·고시한 바 없다.

(33) 임대주택법

1) 현황표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 금 및 표준임대료」(국토해양부 령 제387호, 2011.9.29, 일부개 정·시행)	임대주택의 표준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 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 397호, 2009. 8.24, 개정·시행)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 저리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¹³²⁾ 다만, 제20조 제1항 단서는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주택법」제20조 제1항은 건설임대주택133)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본문은 공공건설임대주택134) 중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로즉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로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로 및 표준임대로적 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로 및 된다.

②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 저리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임대주택법」제5조 제1항은「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건설에의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로 융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 저리로

^{133)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이란 i)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ii)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4)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 대주택의 종류의 하나로 공공건설임대주택(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들고 있다.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97호, 2009. 8.24, 개정)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훈령은 기본적으로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 저리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정하고 있다.

(34)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자동차등록번 호판 봉인의 구 조 및 규격	시행규칙 제4조 제3항(법 제10 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	고시에 수권 근거에 관한 명시가 없음
2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0호, 2010.5.17, 일부개정·시행)	자동차등록번 호판의 규격· 재질·색상등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부령→ 행정규칙	수권 근거 법률 없고,고 시가 제재적 행정처분(법 제21조제1항 제9호)의 구 성요건이 됨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3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 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고 시 제2009-1328호, 2009.12. 31, 일부개정·시행)	원동기형식의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법 제 22조 제1항)		
4	「G20 정상회의 행사용 자동 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규 격」(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50호, 2010.8.16, 제정·시행)	번호판의 재질 ·규격·색깔	시행규칙 제26 조 제4항(법 제 27조 제2항)		
5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27호 2009 12 31	제원통보 및 제 원표 작성 등	시행규칙 제39 조 제4항(법 제 30조 제4항)		
6		자기인증적합 조사의 시행 세 부사항	시행규칙 제40 조의2 제5항(법 제30조의3 제 2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7		제작 결함 사실 시정조치계획 통지 및 공고절 차 · 양식 등	시행규칙 제41 조 제3항(법 제 31조 제1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8		제작결함 조사 방법 및 조사절 차 등		법률→ 부령→ 행정규칙	
9		성 등 시 혐 시 설 의 명칭 및 제 원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49 조 제2항(법 제 32조 제3항)		
10	-	자동차 또는 자 동차부품 판매시 자료 제공방법	조 제2항(법 제	법률→ 부령→ 행정규칙	안내문 제공 방법은 판매 자가 자율적 으로 결정해 도 될 사항 으로 보임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1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4호, 2010.2.2,일부개정·시행)	자동차의 안전 도평가에 필요 한 세부사항		부령→	
12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34 호, 2010.10.23, 개정·시행)	자동차성능시 험기준및 방법	시행규칙 제47 조 본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 한 규칙 제116 조(법 제32조)	부령→	
13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9호, 2010.8.6, 제 정·시행)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 승인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55 조 제3항(법 제 34조)		
14		자동차 점검 · 정비 및 구조장 치 변경하는 정 비작업의 범위 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	시행규칙 제131 조 제3항(법 제 34조)		
15	15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 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 해양부고시 제2010-814호, 2010.11.19, 일부개정·시행)	자동차의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규칙 제59 조, 제73조(법 제43조)	법률→ 부렁→ 행정규칙	
16		택시미터 검정 의 신청방법 등	시행규칙 제95 조 제4항(법 제 47조 제6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현황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 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0호, 2010.1.14, 일부개정·시행)	I 자동자보던 시를수	법제15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호, 2010.1.14, 일부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36) 주차장법

1) 현황표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1호, 2010.2.17, 제정·시행)	시설의 설계 및 설		법률→ 부령→ 행정규칙	
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16 조의5 제1항 제 9호(법 제19조 의7)	법률→ 부령→ 행정규칙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0 호, 2009.8.27 개정·시행)	기계식주차장치의 사용검사 및 정기 검사기준	시행규칙 제16 조의8 제8항(법 제19조의2 제 2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①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주차장법」제6조 제1항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등의 경우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1호, 2010.2.17,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주차장법」제19조의7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국토 해양부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의5 제1항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을 열거하면서 제9호에서 그 밖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0호, 2009. 8.27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기계식주차장치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기준

「주차장법」제19조의9 제1항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제8항은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37) 주택법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 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27, 일부개정·시행)	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	법률→ 행정규칙		
2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 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714호, 2009.8.21, 폐지제정 ·시행)	대한 주택의 규		대통령령→		
3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 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654호, 2009.8.24, 일부개정 ·시행)		시행령 제23조 제2항(법 제22 조제1항)			
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974호, 2010.12.23, 일부개 정·시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령 제26조 제2항(법 제24 조 제1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10-975호, 2010.12. 23,일부개정·시행)		시행령 제27 조제2항(법제 24조)			
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66호, 2011. 3.1, 일부개정·시행) ¹³⁵⁾	평가, 공공택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제6조(시행령 제42조의2제6항제2호가목,법제38조제1항제3호,제38조의2제1항·제5항,제38조의4	부렁→		

¹³⁵⁾ 이 지침은 2011.9.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88호로 개정되었으나, 2011.10.2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7	「시・군・구별 기본형건축 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5호, 2011.3.1, 일부 개정・시행)	주요자재별 기 준단가 및 시· 군·구별 기본 형건축비 산정 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공동주택 분 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 칙」제14조 제3 항·제4항(법 제38조의2 제3 항 단서)	법률→ 부령→ 행정규칙	
8	-	세부적인 포상 금의 지급기준	시행규칙 제51 조의2 제1항(시 행령 제118조 의2 제6항, 법 제89조의2)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9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 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14호, 2010. 6.27, 제 정·시행)	관리단지의 선		대통령령→ 행정규칙	시행령 제82 조의 2에서 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 지의 선정등 에 필요한사 항도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음

(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12호, 2011.3.30, 일부개정)	전환교통협약의 체 결, 보조금의 지원 의 기준 및 절차 등			
2	-	우수교통물류운영 자 세부선정기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법 제24조 제2항)		
3	-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34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4	-	저탄소 녹색교통물 류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 등의 기준		부렁→ 행정규칙	
6	-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18 조 제2항(법 제 48조 제3항)		

(39) 지하수법

1) 현황표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수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이행보증금 산정기준」(건 설교통부고시 제2006-537호, 2006. 12.15, 제정·시행)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	조 제2항(시행 령 제22조 제2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정부조직 변경 사 항 반영 필요함

「지하수법」제1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 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제2항은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 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재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이행보증금의 금액 은 i)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비용, ii) 그 밖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산정방 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7호, 2006.12.15, 제정ㆍ시행)이 제 정 · 고시되어 있다.

(40) 철도사업법

1) 현황표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 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사 업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7호, 2009.6.30, 일부개정·시행)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시행령 제14조 제1항(법 제44 조제1항)		
2	-	우수서비스마크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규칙 제21 조(법제28조제 4항)		

2) 주요내용

①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철도사업법」제42조 제1항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

용료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7호, 2009.6.3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우수서비스마크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사업법」제28조 제2항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그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서비스마크"라 한다)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우수서비스마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우수서비스마크는 우수철도서비스의 종류및 내용에 따라 그 모양, 표시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우수서비스마크의 모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41)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안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1' 0' Z 2 L 4 C T 1 (T E M) F F	철도표준규격(철 도차량분야 철도 용품)	시행규칙 제56 조 제7항(법 제 34조 제1항 및 제2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136) 「}한국철도표준규격」은 철도차량분야 철도용품과 철도시설분야 철도용품으로 나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한국철도표준규격」(국토해양 부고시 제2010-892호, 2010.11 .26, 제정·시행)	철도시설분야 철도 용품		법률→ 부령→ 행정규칙	
3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2호, 2009.8.21, 일부개정·시행)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부렁→ 행정규칙	
4		품질인증기관의 임무	시행령 제26조 제1호 및 제5 호(법 제28조 제2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5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72호, 2010.7.14, 일부개정·시행)	품질인증절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시행규칙 제43 조 제2항(시행 령 제23조 제2 항/법 제27조 제1항)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6		인증품의 표시	시행규칙 제49 조제2항(법 제 27조제2항)		
7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사항	시행규칙 제50 조제3항(법제 27조제3항)		
8	『청미하라 서느가원 기체기하	성능시험 면제대상 철도차량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법 제35조 제2항)		
9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63호, 2010.8.19, 일부개정·시행)	성능시험의 실시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	법률→ 대통령령→ 부렁→ 행정규칙	

누어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고시의 제정 이후 개정된 사항만을 고시하고 있어서 고시의 전체적인 사항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 정된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0		성능시험의 세부기 준 및 방법	시행규칙 제59 조 제2항 및 제 60조 제4항(법 제35조 제3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11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철도차량 제작검사 의 면제 대상 차량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법 제36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82호, 2010.7.14, 일부개정·시행)	제작검사의 실시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13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30호, 2010.4. 21, 제정·시행)	철도보호지구 안에 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			
14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15	절도송사자 신제검사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622호, 2009. 8.21, 일부개정· 시행)	관제업무에 종사하 고자 하는 자에 대 한 신체검사의 절 차・실시방법 등	시행령 제39조 제3항(법 제22 조제1항)		
16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 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구두체양보고사 제2000 624호	[교 6개 단이의 글	조 제4항(법 제		
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24호, 2009. 8.21, 일부개정·시행) 17	관제업무에 종사하 고자 하는 자에 대 한 적성검사의 절 차・실시방법 등	시행령 제39조 제3항(법 제22 조제1항)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8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627호, 2009.8. 21, 일부개정ㆍ 시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 기능 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조 제4항(법 제		
19		철도차량운전업무 경력 인정, 교육훈 련의 내용 등 운전 면허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시행규칙 제32 조 제4항(법 제 19조 제3항 제 1호 및 제2호	법률→ 부령→ 행정규칙	
20	「철도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 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73	철도종사자 등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의 방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	시행규칙 제37 조 제4항	부렁→ 행정규칙	
21	호, 2010.7.14, 일부개정·시행)	철도종사자의 철도 안전에 관한 교육 의 내용·방법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조 제4항(법 제		

(4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 하는 측량」(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8호, 2009.12.14, 전 부개정・시행)	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의 적용	법 제4조	법률→ 행정규칙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로조사의 지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3호, 2009.12.14, 제정·시행)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 위에서 제외되	법 제4조	법률→ 행정규칙	
3	-	수로조사와 관련 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법 제6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수로측량 업무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57호, 2009.8.21, 일부개정) 제34조에 따 르면, 이는국 립해양조사 원고시로 정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4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 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137)(국토해양부훈 령 제2010-29호, 2010.5.28, 일부개정·시행)	수로도서지 관 리방안	법 제35조 제4항	법률→ 행정규칙	법률에서 위 임하는 사항 과 실제 규 율 사 항 이 상이함
5	「 측량대가의 기준」138)	측량 대가기준	법 제55조 제1 항(시행령 제48 조제1항)		

¹³⁷⁾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¹³⁸⁾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6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1196호, 2009.12. 22, 제정· 시행)	학력ㆍ경력 인정	`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7	-	토지의 고유번 호를 붙이는 데 필요한사항	시행규칙 제68 조제5항	부렁→ 행정규칙	
8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151호, 2009.12. 28, 일부개정·시행)	지적측량수수 료의 세부산정 기준등	조 제2항(법 제		

(43) 택지개발촉진법

1) 현황표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99호, 2010.6.30, 제정·시행)	구체적 산정방식	시행당 제9소의 3 제3항(법 제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	시행령 제7조 제5항(법 제8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3	해양부훈령 제709호, 2001.5.31, 일부개정·시행)	공동주택의 종류별 ·지역별·규모별 배분비율 등	시행규칙 제7조	부령→ 행정규칙	

①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등

「택지개발촉진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비용 부담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은시설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되,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99호, 2010.6.30,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계획 수립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 1항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절차 내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가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709호, 2011.5.31, 일부개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집행명령의 차원에서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제4항 제1호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도록 의무화하되,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지역별·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4) 하천법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하천시설	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3 호 라목)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569호, 2010.3.4, 일부개정ㆍ 시행)	업무 종사자의	시행령 제13조 제4항(법 제18 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3	-	보전지구·복 원 지구 및 친 수지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4	-	하천수 사용허 가의 기준이 되 는 유량	시행령 제56조 제항(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제 3 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5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 토해양부고시 제2010-105호, 2010.3.1, 제정·시행)	하천점용행위 에 관한 세부적 인 허가기준			
6	-	하천수 사용허 가에 필요한 세 부적인 기준			불필요한 위 임규정임(시 행규칙 제28 조 제3항과 제4항 중복)

(4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65호, 2009.6. 4, 폐지 제정·시행)	공항건설, 유지 · 보수시 준수하 여야 보안기준	법 제11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국토해양 부고시 제2010-650호, 2010. 9.20, 제정·시행)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질(반입 허용 물질)	법 제14조 제5항	법률→ 행정규칙	
3	-	운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17조 제4항	법률→ 행정규칙	
4	「항공화물보안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341호, 2009.6.11, 폐지제정·시행)	항공화물보안 기준	법 제15조(시행 령제12조제3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 품(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651호, 2010.9.20, 제정, 2010. 9.23, 시행·시행)		법 제21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고시에 수권 근 거 명 시 필요
6	「항공안전 보안장비 종류 ·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10-257호, 2010. 4.29, 일부개정·시행)	장비의 종류, 성	법 제27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7	-	항공안전 및 보 안에 관한 업무 수행자의 교육 에 필요한 사항	법 제28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법규명령으 로위임할수 있는 사항임
8	「보안검색교육기관지정및 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92호, 2009. 6.3, 폐 지제정·시행)	기관 지정・교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법률 제28 조 제5항)		

제 3 절 보건·식품 관련법제 분약

1. 총괄표

			위임건	!수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렁→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2	•	3	2010.12.30	
2	건강검진기본법	2	•	•	2	2010.3.19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7	3	•	10	2011.1.1	
4	검역법	1	•	•	1	2010.12.30	
5	결핵예방법	•	•	•	•	2010.3.19	×
6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	•	•	2010.12.30	×
7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	•	•	•	2010.3.19	×
8	공중위생관리법	•	2	•	2	2011.1.1	
9	구강보건법	1	•	•	1	2010.3.19	
10	국립암센터법	•	•	•	•	2010.3.19	×
1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٠	2010.4.2	×
12	국민건강보험법	•	•	•	•	2011.1.1	
13	국민건강증진법	•	1	•	1	2011.1.1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	2010.3.19	
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1	•	1	2010.12.30	×
1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2010.3.19	
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	•	•	2010.3.19	×
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1	•	1	2010.3.19	

			위임건	<u>!</u> 수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렁→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19	모자보건법	•	1	•	1	2010.3.19	
2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2010.11.26	×
21	보건의료기본법	•	3	•	3	2010.12.30	×
2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	•	•	2010.3.19	
23	보건환경연구원법	•	•	•	•	2010.12.30	×
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	•	2010.3.19	
25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	•	•	2010.12.30	×
2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	2010.3.19	×
27	식품안전기본법	•	1	•	1	2010.11.26	
28	식품위생법	12	3	•	15	2011.1.1	
2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	•	•	2	2010.3.19	
30	암관리법	1	2	•	3	2010.3.19	
31	약사법	5	19	•	24	2010.12.30	
3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6	1	•	7	2010.11.26	
33	위생사에 관한 법률	•	•	•	•	2010.12.30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3	•	4	2011.1.1	
35	의료급여법	2	5	2	9	2010.3.19	
36	의료기기법	1	11	•	12	2010.11.28	
3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2010.3.19	
38	의료법	2	4	1	7	2010.11.28	
39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1	3	٠	4	2010.3.19	
4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	•	2010.3.19	×
41	정신보건법	4	•	٠	4	2010.3.19	
4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	•	•	•	2010.12.30	×
43	지역보건법	•	•	•	•	2010.12.30	×
4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	•	•	•	2010.3.19	×

			위임건]수			
순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4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1	2	1	4	2010.3.19	
4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	•	•	2010.3.19	×
4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2010.3.19	×
4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	•	•	2010.3.19	×
49	한의약육성법		•	2	2	2010.3.19	
50	혈액관리법	1	4	•	5	2010.12.30	
51	화장품법139)	4	7	•	11	2010.3.19	
5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	•	•	2010.12.30	×
	합계	55	79	6	140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이라 한다)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¹³⁹⁾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화장품법」(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 2010.3. 19, 시행)을 기준으로 행정규칙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만,「화장품법」은 2011년 8월 4일자로 전부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이 대폭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 건복지부고시 제2010-125호, 2010.12.24, 전부개정·시행)	지정감염병 등 의 종류	법 제2조 제7호, 제 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 41조 제1호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2011.7.1, 일부개정·시행)	예방접종의 실 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	시행규칙 제26조(법 제32조 제2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4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 복지가족부고시 제2010-90 호, 2010.10.28, 일부개정· 시행)		시행규칙 제6조(법 제11조 제5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정부조직 변경 사항 반영 필 요함

①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서는 '감염병'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각각의 감염병의 개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또는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는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그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그종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할 행정청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수 있고,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

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호, 2010.12.24, 전부개정·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 시기 및 주의사항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제32조 제1항은 예방접종주간 설정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는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제58조 제1호에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2011.7.1,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감염병 진단기준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기준을 별표 2로 정하고,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90호, 2010.10.28,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 건강검진기본법

1) 현황표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지급	법 제21조	법률→ 행정규칙	
2	부고시 제2010-120호, 2010.12. 23, 일부개정, 2011. 1.1, 시행)	국민건강검진 진 찰, 상담 및 검사 비용	법 제24조 본문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건강검진기본법」제21조는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 2010.12.23, 일부개정, 2011.1.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국민건강검진 진찰, 상담 및 검사비용

「건강검진기본법」제24조 본문은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건강검진 실시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은 건 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건강기능식품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건강기등식품의 기순 및 규 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 제2010-86호, 2010.11.25, 일 부개정·시행)	건강기능식품 기 준 및 규격	법제14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공전의 형 식을 취하 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 원 료 또는 성분	법제15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3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 177호, 2009.12.22, 개정·시행)		법 제14조 제2 항 및 제4항	법률→ 행정규칙	
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 약품안전청고시 제2010-76 호, 2010.10.29, 일부개정· 시행)	건강기능식품 기 능성 원료 인정	법 제15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9-43호, 2009.6.30, 일부 개정·시행)		법 제17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공전의 형 식을 취하 고 있음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6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 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95호, 2009.8. 24, 일 부개정·시행)	우수건강기능식 품 제조기준	법제22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7		우수건강기능식 품제조기준적용 업소지정및관리			
8		우수건강기능식 품제조기준적용 업소 영업자 등 교육·훈련	시행규칙 제27 조 제5항(법 제 22조 제3항)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 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0-92호, 2010. 12. 23, 개정·시행)		법 제22조의2 제2항	법률→ 행정규칙	
10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2011-3호, 2011.1. 28, 일부개정·시행)	신고포상금 운영	시행령 제19조 의2 제1항(법제 40조 제1항)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법」제14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6호, 2010.9.17,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건강기능식품법」제14조 제2항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77호, 2009.12.22,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하되, 건강기능식품의 다양성·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다 망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바, 영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이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③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건강기능식품법」제15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서 정하고 있다.

④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건강기능식품법」제15조 제2항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부터 당해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

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인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76호, 2010.10.29,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⑤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법」제17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43호, 2009.6.3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건강기능식품법」제22조 제1항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95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⑦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 및 교육훈련 등

「건강기능식품법」제22조 제2항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고시140)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

¹⁴⁰⁾ 여기서의 고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공지 (통지)적 성격을 갖는다.

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7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및 횟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은 교육훈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이들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⑧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건강기능식품법」제22조의2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등록한건강기능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2호, 2010.12.23,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⑨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건강기능식품법」제40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그 신청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3호, 2011.1. 28,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4) 검역법

1) 현황표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역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 염병」(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128호, 2010.12.24, 일부개정· 시행)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법 제2조 제1호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검역법」제2조 제1호는 '검역감염병'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사목에서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

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역시 검역감염병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8호, 2010.12.24,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5) 공중위생관리법

1) 현황표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위생관리등급 판정 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 등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지정」(보 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59호, 2008.7.1, 제정·시행)141)	공중위생교육대상 자 및 교육대상자 별위생교육기관	조 제6항(법 제		정부조직 변경 사 항 반영 필요함

¹⁴¹⁾ 이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 등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위생서비스(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생서비스(수준)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은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당 위생서비스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된 바 없다.

② 공중위생교육대상자 및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은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법적 성격은 강학상 '허가'라기보다는 '지정'에 가깝다고 생각되고,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은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지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9호, 2008.7.1, 제정ㆍ시행)를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참

고로 위 고시는 일부는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일부는 일반처분으로 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6) 구강보건법

1) 현황표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강보건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구강보건용품의 정의	법 제2조 제3호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구강보건법」제2조 제3호는 '구강보건용품'을 "구강질환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7) 국민건강보험법

1) 현황표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 강보험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고 시 제2010-132호, 2010.12.28, 일부개정, 2010.12.28, 시행)		1항 및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03호, 2009.6.5, 제정, 시행)	본인부담상한액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1 호, 2010.11.26, 일부개정, 2010. 12.1, 시행)	요양급여 상대가 치점수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 항(법제42조제 1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 2010-52호, 2010.7.21, 일부개 정, 2010.10.1, 시행)		시행령 제24조 제3항(법 제42조 제1항)		
5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29 호, 2007.12.26, 제정·시행)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실시기준 등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법 제47조 제 1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6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 절차 등			
7	-	전문요양기관 인정 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절차 등			
8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 산 또는 감액지급 의 금액 산정 기준	시행규칙 제11 조(법 제43조)	법률→ 부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 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 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2호, 2010.1.27, 일부 개정, 2010.2.1, 시행)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 여비용심사청구 서 및 요양급여비 용명세서의 서식 ·작성요령 등	시행규칙 제12 조 제6항(법 제 43조 제8항)		정부조직 변경 사 항 반영 필요함
10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 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호, 2009.2.9, 일 부개정, 2009.4.1, 시행)		시행규칙 제13 조 제5항(법 제 43조)		"
11	-	천재지변·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방법 및 절 차등	시행규칙 제13 조의2 제3항		
12	「요양비의보험급여기준및방 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61 호, 2009.4.1, 일부개정·시행)		시행규칙 제15 조 제4항 및 제 5항(법제44조제 1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부가급여 신청과	시행령 제25조 제5항(법제45조)	법률→ 부령→ 행정규칙	
1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0-3호, 2010.3.29, 일부개정, 2010.4.1, 시행)		시행규칙 제17 조 제2항(법 제 45조, 시행령 제 25조의2 제3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임신·출산 진료 비 이용권 사용 요 양기관 지정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4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 등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0-74호, 2010.9.27, 일부 개정·시행)	보장구의 급여기	시행규칙 제18 조 제6항(법 제 46조 제2항)	부령→	
15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 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11 호, 2010.12.17, 일부개정, 2011. 1.1, 시행)	민인 가입자의 자 격취득시기, 보험	시행규칙 제45 조 제5항(법 제	부령→	

① 보험료 경감대상자,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등

「국민건강보험법」제66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호 참조), 같은 조 제2항은 그 외에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의2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를 정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2호, 2010.12.28, 일부개정, 2010.12.28,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 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 (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약제(한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같은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03호, 2009.6.5, 제정·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계약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그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렁(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8호, 2010.6.11, 일부개정, 2010.7.1,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1호, 2010.11.26, 일부개정, 2010.12.1, 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④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계약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약제·치료재료(같은 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 대료는 제외한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52호, 2010.7.21, 일부개정, 2010.10.1, 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⑤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제1항은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건강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그 중 특히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영유아건강검진 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건강검진의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건

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29호, 2007.12.26,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⑥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되는 자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피부양자의 자격인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⑦ 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절차 등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제2항은 전문요양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및 절차, 그 취소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 절차 및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⑧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 산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항은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같은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 비용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등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제8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같은 조 제6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요양기관의 현황관리 기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2호, 2010.1.27, 일부개정, 2010.2.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①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절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같은 법제43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그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은 이 외에 요양급여비용심사결 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호, 2009.2.9, 일부개정, 2009.4.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① 천재지변·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천재지변· 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 급 및 정산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없다.

②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요양비 지급금액, 요양비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1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요양비 지급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요양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비의보험급여기준및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61호, 2009.4.1,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① 부가급여 신청과 지급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는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부가급여의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지급,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호, 2010.3.29, 일부개정, 2010.4.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④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지정

앞서 언급한 '부가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 조 제5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의2 제3항은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에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임신·출

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호, 2010.3.29, 일부개정, 2010.4.1, 시행)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⑤ 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제1항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장애인보장구에 관한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외에 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0-74호, 2010.9.27,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b)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등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 제2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 항부터 제4항까지는 그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밖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그 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11호, 2010.12.17, 일부개정, 2011.1.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8) 국민건강증진법

1) 현황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	흡연에 따른 경고	시행규칙 제4	법률→	
1	시내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문구, 발암성물질	조 제1항(법 제	부렁→	
	42호, 2011.4.7, 전부개정)	표시 등	8조 제6항)	행정규칙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제3항은 흡연에 따른 경고문구, 발암성물질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 표기 등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15호, 2008.10.17, 일부개정, 2008.12.15,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 현황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 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 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조(빗 제26조)	법률→ 부령→ 행정규칙	

2) 주요내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는 농어촌 한부모 가족을 선정할 때 여성가족부 소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고, 여성가족부 관련 행정규칙도 제정된 바 없다.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 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 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81호, 2010.11.12, 일부 개정·시행)	마약 등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세부사항	18조 제2항, 제	법률→ 부렁→	

2) 주요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 또는 제조품목허가(이하 "마약 등 허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마약 등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81호, 2010.11.12, 일부개정・시행)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11) 모자보건법

1) 현황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모자보건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 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 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보 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9 호, 2009.12.30, 제정, 2010.1.1, 시행)		시행령 제17조 제6항(법 제15 조의6 제1항)		정부조직 변 경 사항 반영 필요함

2) 주요내용

「모자보건법」제15조의6 제1항은 산후조리업자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산후조리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다시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9호, 2009. 12.30, 제정, 2010.1.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 현황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보건신기술 인 증 표시방법 등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법률상 표시 제도에 관한 수권 근거 없음
2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 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 부고시 제2009-158호, 2009.	보건신기술 인 증취소	시행령 제21조 제5항(법 제9조 제1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3	우고시 세2009-138호, 2009. 8.25, 일부개정·시행)		시행규칙 제10 조제1항(법제 8조 제2항, 시 행령 제18조제 8항)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4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 업관리규정」(보건복지가족 부예규 제15호, 2009.1.5, 전 부개정·시행)	기술료 징수	시행령 제23조 제4항(법 제14 조제3항)		정부조직 변 경 사항 반영 필요함

①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방법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시행규칙 제9조는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8호, 2009.8.25, 일부개정·시행)을 통하여 이를 정하고 있다.

②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9조 제1항은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인증취소의 방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밖에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8호, 2009.8.25, 일부개정ㆍ시행)을 통하여 이를 정하고 있다.

③ 보건신기술 심사 · 평가에 드는 비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제2항은 보건신기술 인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이를 구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그 밖에 보건신기술 인증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재위임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특히 보건 신기술 심사·평가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 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8호, 2009.8.25, 일부개정·시행)을 통하 여 정하고 있다.

④ 기술료 징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술료 납부 방법, 사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보건복지가족부예규 제15호, 2009.1.5, 전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3) 식품안전기본법

1) 현황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포상금의 세부적 지 급 대상 · 방법 등	시행령 제21조 제 2항(법 제30조)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식품안전기본법」제30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지급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포상금의 세부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14) 식품위생법

1) 현황표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20 호, 2011.5.13, 일부개정·시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법제7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공전의 형식을 취함

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0-33호, 2010.5. 18, 일부개 정·시행)	식품첨가물의 기 준 및 규격	법제7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공전의 형식을 취함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10-84호, 2010. 11.18, 일부개정, 2011. 5.19, 시행)	기구 및 용기포장 의 기준 및 규격	법제9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4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 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0호,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 유전자재조 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	법 제10조 제 1항	법률→ 행정규칙	
	2010.7.29, 일부개정ㆍ시행)	식품의 영양표시 기준	법 제11조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 성평가심사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9-196호, 2009.12.22, 타법 개정·시행)	유전자재조합식 품안전성평가심사	법 18조 제4항	법률→ 행정규칙	
6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09-152호, 2009.8.31, 제정·시행)	우수수입업체 등 록을 위한 수입식 품 수출국 제조업 체 위생점검 기준	법 제20조 제 1항	법률→ 행정규칙	
7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 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1호, 2010.7.30, 제 정·시행)		법 제35조 제2 항 및 제3항	법률→ 행정규칙	
8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보건복지부 예규 제32호, 2009.12.30, 일 부개정·시행)		법 제41조 제 2항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9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 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59호, 2009.10.15, 제 정·시행)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 제조·가 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법 제44조 제 5항	법률→ 행정규칙	
10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83호, 2010.11.16, 일 부개정·시행)	식품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	법 제48조 제 1항	법률→ 행정규칙	
1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0-92호, 2010. 12.23, 폐지제정, 2011.2.1, 시행)	식품이력추적에 필요한 기록의 작 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법 제49조 제2 항 및 제4항	법률→ 행정규칙	
12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10-18호, 2010.4.20, 제 정·시행)	위생수준 안전평 가기준	법 제50조 제 2항	법률→ 행정규칙	
13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2009-167호, 2009. 11.9, 일부개정·시행)	식품등 위해평가 방법, 기준, 절차 등	시행령 제4조 (법 제15조 제 6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14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 품안전청고시 제2009-182호, 2009.12.22, 타법개정・시행)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 법 및 절차 등	시행령 제63조 제2항(법 제90 조 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①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20호, 2011.5.13, 일부개정·시행) 및「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33호, 2010.5.18,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제9조 제1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84호, 2010.11.18, 일부개정, 2011.5.19,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법」제10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0호, 2010.7.29, 일부개정·시 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④ 식품의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⑤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심사

「식품위생법」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안전성평가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9-196호, 2009.12.22, 타법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⑥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입식품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

「식품위생법」제20조 제1항은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는 해당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우수수입식품업소(이하 "우수수입업소"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항의 기준은 제2항의 우수수입식품업소 등록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수입업체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52호, 2009.8.31,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⑦ 소비자 위생점검 기준

「식품위생법」제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 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위생점검을 받은 영업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1호, 2010.7.30,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⑧ 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은 사전식품위생교육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보건복지부예규 제32호, 2009.12.3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⑨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은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점검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59호, 2009.10.15,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위생법」제48조 제1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10-83호, 2010.11.16,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①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제49조 제1항은 식품이력추적관리 해당 식품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등록 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2호, 2010.12.23, 폐지제정, 2011.2.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⑩ 위생수준 안전평가 기준

「식품위생법」제50조 제1항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18호, 2010.4.20,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식품등 위해평가 방법, 기준, 절차 등

「식품위생법」제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위해평가 대상, 평가요소,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67호, 2009.11.9,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⑭ 포상금의 세부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식품위생법」제90조 제1항은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포 상금 지급액 상한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포상금의 세부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09-182호, 2009.12.22, 타법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실험동물 사용 및 사육관리 -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221호, 2009.12.22, 일부개정· 시행)	동물실험시설/우 수동물실험시설 지도·감독등	법제11조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실험동물공급자/ 우수실험동물생산 시설지도·감독등	법 제16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①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지도·감독의 내용, 대상, 시기, 기준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 사용 및 사육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에규 제221호, 2009.12.22,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실험동물공급자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도·감독의 내용, 대상, 시기, 기준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지정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 사용 및 사육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221호, 2009.12.22,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6) 암관리법

1) 현황표

「암관리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 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 부고시 제2011-6호, 2011.1.21, 제정·시행)	료비 지원대상, 지	제1항 및 제4 항(법제13조제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보건 복지부고시 제2010-129호, 2010. 12.27, 일부개정, 2011.1.1, 시행)				

2) 주요내용

①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

「암관리법」제1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에 대한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호, 2011. 1.21, 제정ㆍ시행)를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암검진사업의 검진주기 · 검진방법 및 검진절차

「암관리법」제11조 제1항은 암검진사업 시행의 근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 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 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암관리법」제11조 제3항은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암 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 기준 등 암 검진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9호, 2010. 12.27, 일부개정, 2011.1.1, 시행)142)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¹⁴²⁾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이 고시 제정 전인「암조기검진사업실

(17) 약사법

1) 현황표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약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 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10-141호, 2010.12.30, 일 부개정·시행)		법 제2조 제9호	법률→ 행정규칙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 가족부고시 제2009-218호, 2009.12.1, 타법개정·시행)		법 제23조 제5항	법률→ 행정규칙	"
3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 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 부고시 제1995-15호, 1995. 3.15, 제정·시행)		법 제23조 제6항	법률→ 행정규칙	행정규칙 일 몰제 위반(재 검토를 요함)
4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7호, 2010.9. 20, 일부개정·시행)		법 제33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5	-	면허·면허증 의 재교부, 허 가·등록 등 수 수료	법 제82조	법률→ 행정규칙	

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 일부개정·시행)만 탑재되어 있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6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보건복지 부고시 제2011-76호, 2011.7. 1, 일부개정, 일부개정·시행)		시행령 제32조 의4 제4항(법제 47조의2)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7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10-17호, 2010.4.14, 일부개정·시행)	희귀의약품 지정	시행규칙 제12 조제10호(법제 23조제4항)		
8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10-5호, 2010.3.30 제정· 시행)		시행규칙 제12 조제11호(법제		
9	「약국제제 지정」(보건복지 가족부고시 제2009-153호, 2009.8.24, 폐지제정·시행)	약국제제 및 조 제실제제의 범위	시행규칙 제18 조(법제41조제 2항)		정부조직 변 경 사항 반 영필요함
10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 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 품안전청고시 제2010-23호, 2010.4.30, 일부개정·시행)			법률→ 부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제 3 6 조 (신약 등의 재심사신 청 등), 제 37조 (조건부 허가 신청 등), 제 41 조(제조관리자 등), 제 52조(멸 종 위기에 놓 인 약생 동 · 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 제 88 조 (허 가사 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 100 조 (면 허 증 등 의 재발급), 제 104조(의약품 등의 허가사항확인 등)		
11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9-58호, 2009.7.22, 일부 개정·시행)		시행규칙 제24 조 제1항 제1 호 가목 및 제 26조 제1항 제 3호	부령→	
12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심사규정」(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47호, 2007.7.2, 일부개정· 시행)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 사의뢰서 작성 방법	시행규칙 제24 조 제1항 제1 호 바목 및 제 26조 제1항 제 4호 및 제5호	부령→	
1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0-50호, 2010. 6.29, 일부개정・시행)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시행규칙 제24 조 제2항 제3 호 및 제5호, 제25조	법률→ 부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4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10-81호, 2010.11. 12, 일부개정·시행)	허가신고심사		법률→ 부령→ 행정규칙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시포이야포아저천고시) 계	의약품 임상시 험 관리기준	시행규칙 제32 조제1항(법제 34조제7항)		
1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9-211호, 2009.12.22, 타 법개정·시행)	의약품 임상시 혐의 관리 및 임상시험실시 기관의지정	시행규칙 제32 조 제2항(법 제 34조 제7항)		
16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09-208호, 2009.12. 22, 타법개정·시행)		시행규칙 제42 조의3 제1항 제 3호(법 제37조 의2 제2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17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0호, 2010.12.20, 전 부개정·시행)	의약품 낱알식	시행규칙 제43 조 제10호(법 제38조제1항)	부령→	이 규정은 시 행규칙 제75 조 제1항 제 11호, 시행규 칙 제77조 제 13호 등도 결 부됨
18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 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07-90호, 2007.12.28, 일부개정·시행)	한약규격	시행규칙 제43 조 제20호(법 제38조 제1항)	부령→	
19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78호, 2009.9. 30, 제정·시행)	생산·수입·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20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2009-160호, 2009. 10.16, 일부개정·시행)		시행규칙 제62 조 제1항 제14 호(법 제47조 제1항)	번듄→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1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 령」(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4호, 2009.12.18, 일 부개정·시행)	의약품 가격표시	`		정부조직 변 경 사항 반 영필요함
22	-	의약품광고심 의 대상 매체 또는수단	시행규칙 제84 조의2 제1항 제 4호(법 제68조 의2)	법률→ 부령→ 행정규칙	
23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 지부고시 제1995-15호, 1995. 3.15, 제정·시행)		시행규칙 제10 조후단(법률제 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제9조)	부령→	행정규칙 일 몰제 위반

2) 주요내용

① 일반의약품 분류기준

「약사법」제2조 제9호는 일반의약품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열거하되, 그 의약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1호, 2010.12.3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지정 등

「약사법」제23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및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18호, 2009.12.1, 타법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

「약사법」 제23조 제6항은 한약 조제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 1995.3.15,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④ 의약품 재평가 방법·절차 등

「약사법」제33조 제1항은 의약품 재평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7호, 2010.9.2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⑤ 면허·면허증의 재교부, 허가·등록 등 수수료

「약사법」 제82조는 면허·면허증의 재교부·허가·등록·검정·재 검정·재생판매·광고심의 등과 관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수수료 규정)은 제정된 바 없다.

⑥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산청방법

「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4 제4항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신청 방법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6호, 2011.7.1, 일부개정,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⑦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약사법」제23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예외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감염병 예방접종약·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제6호).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i)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제10호)과 ii) 그에 준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제11호)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17호, 2010. 4.14, 일부개정,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0-5호, 2010.3.30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⑧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

「약사법」제41조 제1항은 약국제제 제조,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약국제 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조제실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는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를 대한약전에 실려 있는 의

약품 중 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하는 제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제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제와 대한약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의약품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국제제 지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3호, 2009.8.24, 폐지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⑨ 의약품 등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약사법」제31조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 및 제조판매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기준·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52조, 제88조, 제100조, 제104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들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약사법」은 신약 재심사(제34조, 제42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 약사, 한약사 등 면허증·등록증 등 재발급의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52조, 제100조 등 참조). 이들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23호, 2010.4.3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⑩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약사법 시행규칙」24조 제1항은「약사법」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서류 중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들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성분의 종류·규격·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의약품등 신고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표준화하여 고시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의경우 자료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같은 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이들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58호, 2009.7.22,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①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방법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서류 중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들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바목).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의약품등 신고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고대상품목으로 고시한 의약품 등의경우 자료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같은 규칙 제26조 제1항 제4호및 제5호).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47호, 2007.7.2,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①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서류 중의 하나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등을 들고 있다(제3호 및 제5호 참조). 그리고 같은 규칙제25조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50호, 2010.6.29,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첨부자료의 종류, 작성요령 등

「약사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할 품목의 제조와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경우 첨부하여야할 자료의 종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81호, 2010.11.12,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⑭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약사법」제3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임상시험 계획에 포함될 사항·시험 대상자의 동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상시

험피험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1호, 2009.12.22, 타법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⑤ 의약품 임상시험의 관리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약사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상시험의 관리와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1호, 2009.12.22, 타법개정·시행)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16 의약품 시판후 안전성 정보관리

「약사법」제37조의2 제1항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실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는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준 준수의무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다(제3호 참조).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08호, 2009.12.22, 타법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약사법」제38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의약품등 의 제조 및 품질관리[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다], 그 밖의 생산 관리 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하도록 (소위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 의무지우고 있다(제10호 참조).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0호, 2010.12.20, 전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1호, 시행규칙 제77조 제13호 등과도 결부된다.

⑧ 한약규격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 제20호는 같은 규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약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90호, 2007.12.28,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⑭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78호, 2009.9.30,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0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제14호는 같은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국개설자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판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60호, 2009.10.16,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의약품 가격표시

「약사법」제56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역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려는 가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4호, 2009.12.18, 일부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의약품광고심의 대상 매체 또는 수단

「약사법」제68조의2는 의약품광고심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제1항은 의약품광고심의 대상 매체 또는 수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 또는 수단(제4호)을 들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②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

「약사법 시행규칙」제10조 후단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1995-15호, 1995.3.15,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1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 현황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6호, 2009.8.24, 일부개 정·시행)		법 제8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2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0-54호, 2010. 7.7, 제정·시행)	판매금지대상 정서	법 제9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3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 량·저영양 식품』(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0-64호, 2010. 9.7, 제정·시행)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 양식품	법 제10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4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 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0-3호, 2010. 1.12, 제정·시행)	식품접객업 중 어 린이 기호식품 등 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 및 방법	법 제11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16호, 2011.3.29, 일부개정·시행)	의 영양성분 표시	법 제12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 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0-53호, 2010.6.30, 일부개 정·시행)	어린이 기호식품 품	법 제14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7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9-87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		시행규칙 제15 조 제1항(법 제 19조 제2항)		

2) 주요내용

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 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6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판매금지대상 정서저해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 제1항은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등 소위 정서저해 식품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서저해 식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정서저해 대상식품의 모양, 도안, 문구 등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54호, 2010.7.7,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대상 정서저해 식품만을 정의하고 있고, 모양, 도안, 문구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제2항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시간의 일부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4호, 2010.9.7,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④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제1항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부 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 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3호, 2010.1.12,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 제1항은 소위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16호, 2011.3.29, 일부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제1항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 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53호, 2010.6.30, 일부개정·시행)을 제 정·고시하고 있다.

⑦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9조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조 제2항은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지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7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119호, 2010.12.22, 일부개정, 2011.1.1, 시행)	응급의료수가 기준	법 제23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2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 시 제2008-52호, 2008.6.10, 일 부개정, 2008.7.1, 시행)		시행규칙 제9조 제1항(법 제22 조 제2항)		"
3	-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38 조의3 제3항(법 제47조 제3항)	부령→	
4	-	응급의료기관등 평가의 기준·방법 및절차등	제3항(법 제17		

2) 주요내용

① 응급의료수가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은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을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19호, 2010.12.22, 일부개정, 2011.1.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미수금의 대불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호, 2008.6.10, 일부개정, 2008.7.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이다.

③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특정 시설의 경우 자동제세동

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3 제1항은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④ 응급의료기관등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현지평가와 서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및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20) 의료급여법

1) 현황표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 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 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 시 제2010-12호, 2010.1. 27, 일부개정, 2010.2.1, 시행)	청구서・명세	조 제7항(법 제	법률→ 부령→ 행정규칙	정부조직 변 경사항 반영 필요함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 2009.5.8, 일부개정·시행)	의료수가기준 및계산방법등	법 제7조 제2항	부렁→ 행정규칙	"
3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 복지가족부고시 제2009-4호, 2009.1.19, 제정·시행)		법 제14조 제2항	부렁→ 행정규칙	"
4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 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36호, 2010.2.26, 일부개정, 2010.3.1,시행)	. –	시행규칙 제8조 의2 제3항	부렁→ 행정규칙	수권 근거 타 법에 있음
5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 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 시 제2010-38호, 2010.2. 26, 제정, 2010.3.1, 시행)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 약품 중복투약 관리		부령→ 행정규칙	정부조직 변 경사항 반영 필요함
6	-	제1차의료급여 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시행규칙 제16 조(법 제9조 제 2항)	법률→ 부렁→ 행정규칙	
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 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 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 시 제2010-12호, 2010.1. 27, 일부개정, 2010.2.1, 시행)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등	시행규칙 제20 조 제2항(법 제 11조 제5항)		정부조직 변 경사항반영 필요함
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 2009.5.8, 일부개정·시행)	심사결과통보	시행규칙 제21 조 제5항(법 제 11조 제2항)		"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서의 서식과 급 여비용의 심사 ·지급에 필요 한사항등			
9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0-74호, 2010. 9.27, 일부개정·시행)		시행규칙 제25 조 제9항(법 제 13조 제2항)		

2) 주요내용

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의료급여법」제12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긴급한 경우 등의 요양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요양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의료급여기 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등을 구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그 밖에 요양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2호, 2010.1.27, 일부개정, 2010.2.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의료수가기준 및 계산방법 등

「의료급여법」제7조 제1항은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3호, 2009.5.8,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건강검진의 대상 · 회수 · 절차 등

「의료급여법」제14조 제2항은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4호, 2009.1.19,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④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및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36호, 2010.2.26, 일부개정, 2010.3.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조제를 제한하면서, 급여일수의 산정방법과 통보 및 동일 상병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38호, 2010.2.26, 제정, 2010.3.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⑥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의료급여법」제9조 제1항은 의료급여 실시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제2차·제3차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특히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료를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⑦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등

「의료급여법」제10조는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 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 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 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구체 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의료급여기관이 급여 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의 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항은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방법, 의료 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 의 급여비용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재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2 호, 2010.1.27, 일부개정, 2010.2.1, 시행)을 제정 · 고시하고 있다.

⑧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의료 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3호, 2009.5.8, 일부개정·시행) 제19조 이하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의료급여법」제13조 제2항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그 밖에 보장구급여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0-74호, 2010. 9.27,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1) 의료기기법

1) 현황표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 -202호, 2009.12.22, 타법개정・ 시행)		시행규칙 제10 조 제5항(법 제 8조 제2항)		
2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 품안전청고시 제2009-134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		법 제18조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3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1호, 2010.12.21, 일부개정·시행)	의료기기업 제조 · 품목허가 또는 제 조품목신고 신청 또 는 신고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 요령, 각 자료의 요 건 및 면제범위 등			
4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10-42호, 2010.6.11, 일부 개정·시행)		시행규칙 제7조 제4항(법 제6조 제5항)		
5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0-69호, 2010. 10.6, 일부개정·시행)	기술문서심사기관 의 지정 기준·절 차·운영 등			
6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 -142호, 2009.8.24, 일부개정· 시행)		시행규칙 제11 조 제4항(법 제 9조 제2항)		
7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호, 2009.5.1, 일부개 정·시행)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시 제 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 위, 승인요건·기 준 및 절차 등	시행규칙 제12 조 제5항(법 제 10조 제5항, 제 7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8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 -77호, 2010.10.29, 전부개정· 시행)		시행규칙 제13 조 제4항(법 제 10조 제7항)		
9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09-139호, 2009. 8.24, 일부개정·시행)		시행규칙 제13 조 제4항(법 제 10조 제7항)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0	「의료기기생산및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7호, 2005.2.24, 제정·시행)	의료기가 생산 및	조 제2항(법 제		
1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 -145호, 2009.8.24, 일부개정· 시행)		시행규칙 제30 조 제1항(법 제 25조 제2항)		
12	「의료기기 부작용보고등 안전 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98호, 2009.12.22, 타법개정·시행)		시행규칙 제32 조 제2항(법 제 27조 제5항)		

2) 주요내용

① 의료기기 재심사신청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과 각 자료의 요건, 면제범위 등

「의료기기법」제8조 제1항은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국내에 대상질환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희소의료기기의 재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심사대상 기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사 신청시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부작용사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재심사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재심사신청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과 각 자료의 요건, 면제범위 및 심사의 범위・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02호, 2009. 12.22, 타법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의료기기 기준규격

「의료기기법」제18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34호, 2009.8. 24, 일부개정,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의료기기업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의료기기법」제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료기기업 제조·품목 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 등의 대상·절차·기준·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청·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1호, 2010.12.21,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④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제4항은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과 면제 절차와 범위 및 심사범위와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42호, 2010.6.11, 일부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⑤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기준 · 절차 · 운영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제4항은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의료기기법」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기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9호, 2010.10.6,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⑥ 의료기기 기술문서 간이심사 기관 지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은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심사기관에서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9호, 2010. 10.6, 일부개정ㆍ시행)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⑦ 의료기기 재평가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과 면제 범위 및 재평가범위와 실시기준 등

「의료기기법」제9조 제1항은 의료기기 재평가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평가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재평가 대상품목 공

고, 재평가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과 면제범위 및 재평가범위와 실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42호, 2009.8.24, 일부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⑧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기준 및 절차 등

「의료기기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임상시험계획에 포함될 사항·피험자의 동의내용·시기 및 방법·임상시험실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호, 2009.5.1,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⑨ 임상시험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기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임상시험실 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상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기준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77호, 2010.10.29, 전부개정·시행)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39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①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의료기기법」 제12조 제2항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년도의 생산 및 수출실적을 매년 4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생산및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7호, 2005.2.24,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제25조 제2항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은 인체안에 1년 이상삽입되는 의료기기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45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⑩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관리

「의료기기법」제27조 제1항은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하여 의료기기의사용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부작용 보고의 절차 및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부작용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작용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부작용보고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98호, 2009. 12.22, 타법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22) 의료법

1) 현황표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 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9호, 2011.6.24, 제 정·시행)		법 제3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2	-	의료기관 인증기 준의 세부 내용	법 제58조의3 제7항	법률→ 행정규칙	
3	-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한 의료광고 의 세부 기준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4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 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1호, 2010.8. 13, 제정·시행)	의료기관에서 환 자의 처치에 사용 되는 기구 및 물 품의 소독 등의 방법	조 제10호(법		
5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고가 의료 장비 설치·운영 기준		법률→ 행정규칙	의무부과 를 위한 법 률 근거 필 요함
6	-	의료기관 등에 두 어야 할 의료인 인원			의무부과 를 위한 법 률 근거 필 요함
7	-	한지 의료인 허가지역 변경시기 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	조 제2항 제2호	법률→ 부렁→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의료법」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별 종류를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9호, 2011.6.24,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

「의료법」제5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은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의 세부적 기준

「의료법」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광고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그 구체적인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특히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④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의 소독방법

「의료법」제36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3조 제10호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1호, 2010.8.13,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⑤ 고가 의료장비 설치・운영 기준

「의료법」제36조 제4호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시설·장비 등의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의 시정명령 등이 발해질 수 있다(제63조 참조). 이를 근거로「의료법 시행규칙」제3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설치·운영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⑥ 의료기관·종합병원에 두어야 할 의료기사·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은「의료법」제36조 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8조 제2항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의료인 외에 두어야 할 필요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때 의료기관에 두어야 할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종합병원에 두어야 할 의무기록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⑦ 한지 의료인 허가지역 변경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허가지역

「의료법 시행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한지 의료인이 허가지역을 변경하려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은 변경 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로한정하지만, 같은 항 제2호는 벽지, 오지 또는 도서 등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2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 에 관한 기록 보 존 방법	법 제20조	법률→ 행정규칙	
2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247호, 2009.12.30, 제정, 2010. 1.1, 시행)	•관리 및 이식	시행규칙 제8조 제2항(법 제15 조 제3항 단서)	부령→	정부조직 변경사항 반영 필 요함
3	-	조직은행 정도 관리 절차 및 내 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5 조제3항(법제 11조제2항)		
4	-	조직은행의 설 립허가, 허가갱 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 부렁→ 행정규칙	

① 조직의 기증 · 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 보존 방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는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② 조직은행 기증・관리 및 이식 등 소요 경비 산정기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본문은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게 시술에 필요한 조직제공시 비영리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실비 보전 차원에서 조직은행이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조직은행이 조직이 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비 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7호, 2009.12. 30, 제정, 2010.1.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조직은행 정도관리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은 조직은행정도관리(精度管理, 조직품질·조직검사 또는 조직관리의 정확도 평가)의 근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도관리의 절차, 정도관리결과의 공개 그 밖에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정도관리의 횟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의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정도관리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④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허가갱신, 정도관리 및 조직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조직이식의 적합성 검사 및 폐기명령, 정도관리 명령 및 결과 공개,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허가갱신, 정도관리 및 조직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은행허가등 세부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5호, 2009.12.22, 타법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4) 정신보건법

1) 현황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 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 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09-172호, 2009.9.2, 전부개 정, 2009.10.1, 시행)	용・입소비용 수	법 제51조	법률→ 행정규칙	정부조직 변경 사항 반영 필 요함
2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 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보 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171 호, 2009.9.2, 전부개정, 2009. 10.1, 시행)	용・입소비용 수	법 제51조	법률→ 행정규칙	"
3	-	정신요양시설에 서의 요양과 사회 복귀 훈련방법	법 제10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4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 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 해할위험의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97-18호, 1997.3.31, 제정·시행)	신 또는 타인을 해	법 제25조 제4항	법률→ 행정규칙	

① 사회복귀시설 · 정신요양시설 이용 ·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

「정신보건법」제51조는 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설이용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고, 이때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72호, 2009.9.2, 전부개정, 2009.10.1, 시행)와「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71호, 2009.9.2, 전부개정, 2009.10.1, 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 훈련방법

「정신보건법」제10조 제2항은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③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훈련방법

「정신보건법」제15조 제3항은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④ 정신질환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정신보건법」제25조 제3항은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자신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97-18호, 1997. 3.31,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25) 첨단의료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현황표

「첨단의료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의료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 규칙의 현황은 다음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외국 의사·치과 의사에 대한「의 료법」특례	법제21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2	-	의료연구개발기 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	시행령 제2조(법 법률→ 대통령령→		
3	-	첨단의료복합단 지 입지선정에 관 한세부기준	시행령 제5조 제3항(법 제5조 제3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4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 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 품안전청고시 제2010-23호, 2010.4.30, 일부개정·시행)	입주의료연구개 발기관 의약품 수 입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	시행규칙 제4 조제6항	부령→ 행정규칙	수수료의 감면을 위 한 법률의 수권근거 필요함

2) 주요내용

① 의료법에 관한 특례

「첨단의료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1항은 「의료법」제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의료행위를 인정하

는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②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첨단의료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정의하면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의 기준을 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 관한 세부기준

「첨단의료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의약품 수입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

「첨단의료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수입 승인에 관한「약사법」상 특례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입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은 수입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항은 수입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23호, 2010.4.3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6) 한의약육성법

1) 현황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의약육성법」상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우수한약관리 기준	시행령 제14조 제1항		법률의 수권 근거 필요함
2	-	우수한약관리 기준 적합 표시	시행령 제15조 제2항		법률의 수권 근거 요함

2) 주요내용

①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의약육성법」제14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직접 정하거나 또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

니하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률의 직접적인 수권 근거는 없지만,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② 우수한약관리기준 적합 표시

「한의약육성법」제14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권고적 성격).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27) 혈액관리법

1) 현황표

「혈액관리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혈액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 와 헌혈환부예치금」(보건복 지가족부고시 제2009-251호, 2009.12.30, 일부개정, 2011. 1.1, 시행)		법 제11조	법률→ 행정규칙	정부조직 변경 사항 반영 필 요함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21호, 2010.4.30, 일부개정· 시행)	혈액원의 혈액관 리업무 심사평가 의 세부기준 등	2 제5항(법 제		
3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 작용 보상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4호, 2009.12. 9, 제정·시행)	용・채혈부작용	시행규칙 제13 의2 제2항(법 제 10조의2 제1항)	부령→	
4	-	헌혈환부예치금 면제비율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법 제15 조 제1항 단서)		
5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 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102호, 2011.8.30, 일부개정 ·시행)		시행규칙 제12 조 제4호(법 제 9조 제1항)		

① 혈액제재의 수가

「혈액관리법」제11조는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51호, 2009.12.30, 일부개정, 2010.1.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혈액관리법」제13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근거는 없지만, 집행명령 차원에서 심사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0-21호, 2010. 4.3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금 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은「혈액관리법」제10조의2에 제1항에 따라 혈액원이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24호, 2009.12.9,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④ 헌혈 예치금납부면제비율

「혈액관리법」제15조 제1항 본문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환부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헌혈혈액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부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예치금 납부 면제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매년 예치금납부면제비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치금납부면제비율은 정하여 고 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51호, 2009.12.30, 일부개정·시행)에서 헌혈환부예치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⑤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혈액관리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혈액원등은 채혈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혈액관리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는 혈액관리업무를 채혈업무, 혈액제제의 보존업무, 혈액제제의 공급업무로 나누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4호는 혈액관리관리업무를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절차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표준업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02호, 2011.8.30, 일부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28) 화장품법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화장품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9호, 2010.12.31, 일부 개정·시행)	능한 원료, 배합	법 제4조제3항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화장품 원료의 배 합한도	시행규칙 제13 조제2항(법 제 10조 제1항 제 3호)	법률→ 부령→ 행정규칙	
3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 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 158호, 2009.10.7, 일부개정 ·시행)		법 제9조	법률→ 행정규칙	시험방법 에 관한수 권근거는 없음
4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09-129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 의 표시대상 등	법 제10조 제 1항 제5호	법률→ 행정규칙	
5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 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 시 제2010-73호, 2010.10.26, 일부개정·시행)	화장품의 용기 또 는 포장 및 첨부 문서에 사용기한 및 안전 정보 관 련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기재·표 시하여야 하는 대 상 등	시행규칙 별표 2(법 제10조 제 1항 및 제3항)		
6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1-18호, 2011. 4.21, 제정, 2011.10.22 시행)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 의 종류와 타르색 소의 기준 및 시 험방법	법 제13조 제 7호	법률→ 행정규칙	시험방법 에관한수 권근거는 없음
7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65호, 2009.11. 5, 일부개정·시행)	기능성화장품 심 사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범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법 제4조 제1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8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2009-166호, 2009.11. 5, 일부개정)	기능성화장품과 국내에 최초로 도 입되는 화장품 원 료의 심사와 관 련된 자료의 작 성요령 및 심사 기준 등	제5항(법 제4조		
9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2011-55호, 2011.9. 19, 타법개정·시행)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에 관한 세부사항	제2항(법 제5조		
10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 전청고시 제2009-190호, 2009. 12.22, 타법개정·시행)	수입화장품의 품 질검사를 면제받 기 위하여 수입화 장품의 제조업자 에 대한 현지실사 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절 차·제출자료 및 평가방법 등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11	-	안전용기·포장 의 개봉하기 어려 운 정도의 구체적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규칙 제12 조의2 제2항(법 제9조의2 제2항)	부령→	지식경제 부장관이 정하여고 시하는 바 에 따르도 록함
12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 제 실시 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9호, 2010.4.2, 일부 개정・시행)	판매가격표시대 상, 표시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 표시방법, 과태료, 보고등	시행규칙 제13 조 제1항 제2 호(법 제10조 제3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제 4 절 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143)

			위임건	수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	2009.9.19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	•	•	•	2011.1.1	×
3	계량에 관한 법률	•	1	•	1	2009.3.18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4	1	6	2010.10.13	
5	광산보안법	•	2	•	2	2010.7.5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1	•	1	2008.6.29	
7	광업법	1	2	1	4	2010.12.1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	•	•	2010.11.18	×
9	국가표준기본법	•	3	•	3	2010.7.6	
10	기술개발촉진법	•	•	•	•	2009.10.23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	•	•	•	•	2010.7.13	×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2011.1.1	
1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	•	•	2008.2.29	×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	•	2010.12.7	×

¹⁴³⁾ 지식경제부소관 법률 중 「유통산업발전법」,「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전기공사업법」에 관한 현황 분석은 생략한다.

제 3 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위임건	수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1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	•	•	•	2010.12.1	×
16	대외무역법	•	2	•	2	2010.10.6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	•	•	2009.7.8	×
18	대한석탄공사법	•	•	•		2010.6.8	×
19	도시가스사업법	1	5	•	6	2011.1.1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2010.7.6	×
21	무역보험법		•	•		2010.7.6	×
22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	•	•	•	2009.11.22	×
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2008.2.29	×
2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		2010.3.31	×
25	별정우체국법	•	1	•	1	2010.7.1	
2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1		2	2010.9.1	
2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 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010.7.6	×
2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			2	2011.1.1	
2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		2009.5.21	×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	2009.5.1	×
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2	•	2	2011.1.1	
32	산업디자인진흥법		1	1	2	2009.5.21	
33	산업발전법	2	3	•	5	2010.4.14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1			1	2010.12.1	

			위임건	수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35	산업표준화법	•	4	•	4	2010.12.9	
36	상공회의소법	•	•	•	•	2011.1.1	×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4	8	1	13	2011.1.1	
38	석탄산업법	1	1	•	2	2011.1.1	
3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6	9	•	15	2011.1.1	
40	송유관 안전관리법	•	•	•	•	2010.12.1	×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3	6	1	10	2010.4.14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	2	3	8	2011.1.1	
4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	•	•	2010.2.8	×
44	에너지법	•	2	•	2	2010.6.8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	9	4	23	2010.4.14	
4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	6	•	7	2010.10.13	
4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4	1	7	2009.3.18	
48	외국인투자 촉진법	•	•	•		2010.11.26	×
4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7	2		9	2010.3.19	
50	유통산업발전법	•		•		2010.12.1	
5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	•	•	•	2011.1.1	
5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2009.10.2	
5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	•	•	2010.7.5	
5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	•	•	2010.7.13	×
55	전기공사업법	•	•	•	•	2009.11.22	
56	전기사업법	•	•	•	•	2009.11.22	

제 3 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위임건	수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5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	•	•	2010.1.1	
58	전력기술관리법	2	6	•	8	2009.11.22	
59	전시산업발전법	2	3	•	5	2011.1.1	
60	전원개발촉진법	•	•	•	•	2010.12.1	
61	전자거래기본법	2	2	•	4	2011.1.1	
6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3	5	•	8	2009.8.23	
6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4	•	4	2011.1.1	
6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 한 특별법					2009.12.30	×
6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 진법	•	6		6	2011.1.1	
6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 제특례법	•	•	•	•	2010.12.1	×
67	집단에너지사업법	1	3	•	4	2011.1.1	
6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	•	1	2010.5.5	
6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5	1	•	6	2010.3.19	
70	한국가스공사법	•	•	•	•	2010.12.1	×
7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	•	•	2008.12.26	×
72	한국석유공사법	•	•	•	•	2009.5.21	×
73	한국전력공사법	•	•	•	•	2010.10.13	×
7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4	1	•	5	2009.4.1	
7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2	•	2	2010.3.31	
7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	•	•	2008.2.29	×
77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	•	•	2008.2.29	×

			위임건수				
순 번	법률명	법률→ 행정 규칙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법규 명령→ 행정 규칙	합계	시행일자	비고
78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1	2010.3.19	
7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 환촉진에 관한 법률	1	5	2	8	2010.4.14	
80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 보급촉진에관한법률	•	3	•	3	2009.11.22	
	합 계	66	124	15	205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1) 계량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지식경 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등록 · 영식중인 · 검사 등에 따른 수	조 제1항(법 제		

「계량에 관한 법률」제42조는 등록・형식승인・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은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현황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행정기관이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 등	법 제13조의2 제4항	법률→ 행정규칙	
1		[현엔된다][중 편의	시행규칙 제18 조 제3항(법 제 11조 제7항)		
2	시행)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평가 기 준 및 주기 등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3		고압가스 시설·기 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시행규칙 제 62조	부렁→ 행정규칙	
4	-	고압가스사고손해 보상보험가입 절차 및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 등	시행령 제18조 제4항(법 제25 조 제2항 및 제 3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 수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 부고시 제2009-193호, 2009.8. 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부담금의 부과·징 수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			

① 고압가스 안전성 평가기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144)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7호, 2008. 12.24 전부개정ㆍ시행)를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14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② 안전성관리규정 심사기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 (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의견서 첨부를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은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평가 기준 및 주기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 제6항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고압가스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7호, 2008. 12. 24전부개정)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⑤ 고압가스사고손해보상보험가입 절차 및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5조 제1항은 고압가스사고손해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하여금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및 제2항은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대상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보험가입 절차 및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⑥ 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의2 제1항은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 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부담금 납부기한, 가산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3) 광산보안법

1) 현황표

「광산보안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보안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 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시행령 제2조 제 1항 제4호(법 제2 조 제2호)		부속시설의 범위 관련
2	217호, 2009.10.14 개정· 시행)		시행령 제33조의 2 제12호(법 제8 조제1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 내지신고대 상관련

①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보안법」제2조 제2호는 '광업시설'을 정의하면서, 광물의 채굴 (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부속시설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기타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17호, 2009.10.14,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 승인 · 신고대상 시설

「광산보안법」 제8조 제1항은 광업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승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시설을 열거하면서 제12호에서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들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17호, 2009.10.14, 개정·시행)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 현황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 3 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광해방지사업 핵 심공법 또는 핵심 기술과 주된 공사 의 범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법 제15 조제1항제5호)	대통령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은 전문광해 방지사업자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 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를 그 취소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5) 광업법

1) 현황표

「광업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업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광업권설정 불허가 사유	법 제24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2	「광업업무처리지침」(지식경제 부고시 제2011-11호, 2011.1.17,	광상설명서 기재사 항, 작성방법 등	시행령 제9조 제4항(법 제15 조제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3	가정·시행)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방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법 제50 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	
4		광산단위에 의한 인 가 등	시행령 제58조	시행령→ 행정규칙	

① 광업권설정 불허가 사유

「광업법」제24조 제1항은 광업권 설정 불허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업무처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호, 2011. 1.17,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

「광업법」제15조 제1항은 광업권 설정 출원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광업권설정 출원시 제출 서류를 열거하면서그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광상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업무처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호, 2011.1.17,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 방법

「광업법」제50조 제1항은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특정광산을 "배수수준 상부재채굴지역의 광상또는 주가행광상(주가행광상: 주로 채굴 대상이 되는 광상)과 분리되거나 단층 등으로 인하여 따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 광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수권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업무처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호, 2011.1.17, 개정ㆍ시행)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광업법 시행령」제58조는 "제32조, 제33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8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보고·신고·신청·인정 또는 명령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업무처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호, 2011.1.17, 개정·시행)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6) 국가표준기본법

1) 현황표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표준기본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 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78호, 2009.4.14, 개정·시행)	국가교정업무 전담 기관의 지정 및 운 영 등			
2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 2009-389호, 2009.7.30, 일부개 정·시행)		시행령 제13조 제2항(법 제15 조제2항)		
3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1호, 2009.9.16, 일부개정·시행)		시행령 제14조 제3항(법 제16 조제2항)		

2) 주요내용

①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교정145) 제도의 확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국가교

¹⁴⁵⁾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2조 제16호).

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1항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8호, 2009.4.14,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표준물질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가표준기본법」제15조 제1항은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146)의 인증 제도의 근거 및 그 보급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표준물질의 인증제도의 운영에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9-389호, 2009.7.30,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③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국가표준기본법」제16조 제1항은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 요한 참조표준147)의 제정·평가 및 그 보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¹⁴⁶⁾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조 제15호).

¹⁴⁷⁾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 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같은 조 제2항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제14조 제1항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11호, 2009.9.16, 일부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7) 대외무역법

1) 현황표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상 행정기관이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 부고시 제2011-2호, 2011.1.3,	원산지 판정 기준	시행령 제61조 제2항(법 제34 조제2항)		
2	구고시 세2011-2호, 2011.1.3, 개정·시행)	원산지 판정 요청 방법 등	시행령 제62조 제5항(법 제34 조제7항)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2조 제6호).

① 원산지 판정 기준

「대외무역법」제34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수출 또는 수입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호, 2011.1.3,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원산지 판정 요청방법 등

「대외무역법」제34조 제3항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산지 판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원산지 판정의 요청 방법과 그밖에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호, 2011.1.3,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8) 도시가스사업법

1) 현황표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 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 제부고시 제2011-70호, 2011. 4.27, 일부개정·시행)	도시가스시설 등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법 제44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호, 2009. 1.12, 제정 ·시행)	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 기준	시행령 제11조 제3항(법 제21 조제1항)		
3	-	도시가스사고 손해보험가입 절차 및 도시가 스사고 예방사 업 수행자에 대 한 지원 방법・ 절차 등	시행령 제24조 제3항(법 제43 조 제2항 및 제 3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4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 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	안전관리규정 심사기준 등	시행규칙 제37 조제3항(법 제 26조제6항)		안전관리규 정 심사기 준 등 관련
5	업고시』(시작경제구고시 제 2010-171호, 2010.9.24, 개정 ·시행)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 등	시행규칙 제41 조 제3항(법 제 26조 제5항)		안전관리규 정 준수 여 부의 확인 ·평가관련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6	「도로굴착공사에의한도시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통 상산업부고시 제1997-168호, 1997.10.21 제정·시행)	도시가스배관 도면에 포함되 어야할사항		부령→	행정규칙 일 몰제 위반

① 도시가스시설 등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도시가스사업법」제44조는 도시가스사업 인허가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등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0호, 2011.4.27, 일부개정ㆍ시행)를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② 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 기준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 제1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를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 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온압보정장치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호, 2009. 1.12,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③ 도시가스사고손해보험가입 절차 및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보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험가입 절차 및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④ 안전관리규정 심사기준 등

「도시가스사업법」제26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및제2항은 의견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1호, 2010.9.24, 개정·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⑤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 등

「도시가스사업법」제26조 제5항은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할 행정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및제2항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과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1호, 2010.9.24, 개정ㆍ시행)를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⑥ 도시가스배관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7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도로굴착공사에의한도시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68호, 1997.10.21,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⑦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변경,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고 있다.

(9) 별정우체국법

1) 현황표

「별정우체국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 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별정우체국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호, 2009. 8.19, 전부개정・시행)	별정우체국 지정시 우수자 선정기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법 제3조 제1항)		

2) 주요내용

「별정우체국법」제3조 제1항은 별정우체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정우체국 설치·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정우체국 설치·운영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호, 2009.8.19, 전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1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현황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품소재 전문기업법"이라 한다)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 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신뢰성평가·인증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2000-44호, 2000.5.10, 제정·시행)	부품 · 소재 신뢰 성인증 대상 품 목 및 평가기준	법 제25조 제4항	법률→ 행정규칙	행정규칙 일 몰제 대상
2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 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193호, 2009.8.21, 개정·시행)	부품·소재전 문기업 해당 여 부 확인에 필요 한 사항	시행령 제3조 제3항(법 제2조 제2호 나목), 시 행규칙 제6조 제4항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집행명령 차 원에서 시행 령에서 규정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2) 주요내용

①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부품소재전문기업법」제25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소관별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인증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8)

^{14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418호, 2001.2.3)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신뢰성평가・인증사업 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44호, 2000.5.10,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부품·소재전문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부품소재전문기업법」제2조 제2호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을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i)총매출액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ii)「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규칙으로 수권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규칙 제6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는 집행명령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밖에 부품·소재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인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 현황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1호, 2008.8.22, 개정·시행)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법률→ 행정규칙	
2	-	산업지원단지 사업 시행자 및 입주자 자금지원 관련	법 제19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주요내용

①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준에 관한 사항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7조는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인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입주기준에 관한 사항 등 운영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 기술단지조성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1호, 2008.8.22, 개정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산업지원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 자금지원 관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단지를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제19조 제1항은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원대상·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 현황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2	(자극경제구고시 제2008-22호, 2008. 4.15, 개정·시행)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이의신청 등	시행령 제14조 의3 제6항(법 제 11조의2 제2항)		

2) 주요내용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권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평가의 지표·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2호, 2008.4.15,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②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이의신청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등이 연구 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히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와 관련하여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를 구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밖에 평가 및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2호, 2008.4.15, 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13)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 너제도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09호, 2009.9.7, 제정·시행)	추천디자이너제도	시행령 제8조	대통령령→ 행정규칙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 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8 호, 2009.9.7, 제정·시행)		시행규칙 제9 조 제1항 제1 호(법제9조제 1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14)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발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 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지 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2010. 12.29, 폐지제정·시행)	첨단기술 및 첨단 제품의 범위	법제5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2	-	사업의 지속가능 성을 측정·평가 하기 우한 평가기 준 및 지표	법제18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시행령 제19조 제6 항(법 제30조 제1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4	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 호, 2011.1.25, 일부개정ㆍ시행)	시행령 제20조 제5 항(법 제31조 제1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인중심사단가 및 인 중심사일수에 관 한 기준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공장입지기준」(지식경제부고 시 제2009-193호, 2009.8.21, 타 법개정·시행)		법 제8조	법률→ 행정규칙	

(16)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 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 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 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 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반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 용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08호, 2009.3.27, 제 정·시행)	정기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세부적인 사항	조 제6항(법 제		기술표준 원장 제정 고시임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 증단체 등에 관한 세부적인사항	시행규칙 제18 조 제3항(법 제 25조)		n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2010. 12. 31 기술표 준원고시제2010-721호)	단체표준의 제정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시행규칙 제19 조 제5항(법 제 27조 제3항)		"
4		단체표준 인증 등 에 필요한 세부적 인사항	시행규칙 제20 조 제3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n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유 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석유 수입 판매부 과금액	법 제18조 제2 항 제2호	법률→ 행정규칙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및 환급」(지식경제부고시제2010-94호, 2010.5.4, 일부개정·시행)	상자, 부과기준, 징	제5항,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5항, 제27조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과다환급금 징수, 수입부과금의 징 수대상자, 석유 수 입·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 물량 등			
3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	석유제품 품질기준	법 제24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4	방법 및 검사수수료」(지식경제 부고시 제2010-236호, 2010.12. 31, 일부개정, 2011.1.1, 시행)」	품질검사 수수료	시행규칙 제47 조 제1항 제1 호부터 제3호 까지(법 제41조 제3항)	부렁→	
5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 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 시 제2010-230호, 2010.12.24, 일부개정)	석유제품을 대체하 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 급확대할 필요가 있는 연료	법 제29조 제2 항 제6호	법률→ 행정규칙	
6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 품 질기준	법제31조제1항	법률→ 행정규칙	
7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지식 경제부고시 제2010-231호, 2010. 12.24, 일부개정·시행)	석유대체연료의 품 질시험방법 및 절 차등			
8	-	특수판매소의 정의	시행령 제2조 제7호	대통령령→ 행정규칙	
9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63호,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 비축석 유의 사용방법 등	제1항, 제3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10	2009.11.26, 일부개정·시행)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 비축장소등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1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유통질서 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	제3항(법 제39	대통령령→	
12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 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0 호, 2011.6.29, 일부개정, 2011. 7.1, 시행)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	`	대통령령→	
13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호, 2011.1.31, 제정· 시행)	유사석유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18)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 (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 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탄산업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 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지 식경제부고시 제2011-159호, 2011.8.1, 일부개정·시행)	무연탄 및 연탄 의 최고판매가 격, 가격안정지 원금 지원, 과 징금 등	법 제24조 제1항 제6호	법률→ 행정규칙	「물가안정 에 관한 법 률」제2조 를 수권 근 거로 규정 하고 있음

제 3 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지 식경제부고시 제2010-61호, 2010.3.15, 일부개정, 2010.4. 18, 시행)	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	조 제2항, 제41	법률→ 부령→ 행정규칙	

(1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 경제부고시 제2010-54호, 2010.2. 26, 일부개정·시행)	분리발주대상 소프 트웨어	법 제20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8호, 2011.7.22, 일부개정·시행)	소프트웨어사업자 기술성 평가 기준	법 제20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3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식경제부고 시 제2010-55호, 2010.2.26, 일 부개정·시행)		법 제20조 제6항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4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 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 등	법 제21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5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 2010.2.26,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기준	법 제22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6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198호, 2009.9.1, 일부개정)	어사업자가 참여할		법률→ 행정규칙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166호, 2009.8.21, 제정·시행)		시행령 제3조, 제5조 및 제6 조(법제5조 및 제7조)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 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시행령 제9조 의2(법 제13조 제3항)		
9	제2009-136호, 2009.7.7, 일부개 정·시행)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	시행령제10조 제3항(법 제 13조)		
10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 증제도 운영지침」(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프로세 스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시행령 제16조 의3 제2항(법 제23조 제3항)	대통령령→	
11	고시 제2008-145호, 2008.10.16,	소프트웨어프로세 스 인증비용의 청 구에 필요한 사항		' '	
1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에 필요한사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법 제24 조제1항)		
13	2009.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신고수수료	시행규칙 제12 조 제5항(법 제 24조 제3항)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4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경력 관리기 관의	`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15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 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 부고시 제2009-193호, 2009.8. 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하도급 계약 적정	조 제2항 및 제	법률→ 부령→ 행정규칙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지식 경제부고시 제2010-244호, 2010. 12.30, 제정, 2012.1.1, 시행)	공급자의 의무공	법 제12조의5 제3항	법률→ 행정규칙	
2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2010.9.27,일부개정·시행)	발전에 의하여 공	법 제17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3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 품에 대한 공용화품목 지정에 관한 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1257호, 2007.12.27, 제정· 시행)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및 부품 공용 화품목	법 제21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4	-	무 비율, 건출물 예 제1항 제1호 및 대기 제2호 제3항(법 제2호 제2호(법 제2호 제2호(법 제2호 제2호(법 제2호 제2호(법 제2ō(d (d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	과징금 수납기관	시행령 제18조 의6 제2항(법제 12조의6제1항)	대통령령→	
6	-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시행령 제18조 의9(법 제12조 의7 제3항후단)	대통령령→	
7	-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으로서 성능시 험, 검사장비 및 전 문인력	시행령 제20조 제2호(법 제13 조제3항)		
8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177호, 2011.9.9, 일부개 정·시행)	설비인증기관으로 부터 설비인증을 받 을 수 있는 신·재 생에너지 설비	시행규칙 제4조	법률→ 행정규칙	
9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 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0호, 2009.4.29, 제정·시행)	신·재생에너지설 비 성능검사기관 지 정방법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0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대 상별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102 호, 2010.4.12, 일부개정·시행)	신ㆍ재생에너시 설비인증 대상별 성능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	액화석유가스 품 질기준	법 제25조 제1 항 및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사 소요 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 타 법개정, 2009.8.24·시행)	액화석유가스 품 질검사 비용 지 원방법	법 제26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3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 식경제부고시 제2011-69호, 2011.4.27, 일부개정·시행)	액화석유가스시 설등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법 제41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4	-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세부기준	시행령 제6조 제3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5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시행규칙 제22 조제3항	부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6	-193호, 2009.8.21, 타법개정 ·시행)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 인·평가기준, 주기등	시행규칙 제24 조 제3항(법 제 12조 제6항)		
7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1호, 2009.8.21, 제정·시행)	충전량과 상호표 시규격 등	시행규칙 제42 조 제2항(법 제 22조 제1항)	부렁→	
8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 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 시에 관한 특례기준」(산업자 원부고시 제2005-101호, 2005. 11.28, 제정, 2005.12.1, 시행)	액화석유가스 시 설기준 및 기술 기준 등의 특례	시행규칙 제 58조	부령→ 행정규칙	정부조직 변경사항 반영 필 요함

(22) 에너지법

「에너지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 업 운영규정」(산업자원부고 시 제2005-92호, 2005.10. 28, 폐지제정·시행)	발 실시기관 연	의2 제2호(법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정부조직 변 경사항반영 필요함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신청 자격·방법등	조 제4항(법 제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에너지사용계획 내용, 협의 및 의 견청취절차, 대행 기관의 요건, 에 너지사용계획 수 립 대행 비용 산 정기준등	법 제10조 제5 항 및 제6항	법률→ 행정규칙	
2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 호, 2009.8.21, 타법개정·시행)	에너지사용계획 의 구체적 기재사 항, 작성방법 등			
3		에너지사용계획 수 립 대행기관 인력	시행령 제22조	대통령령→ 행정규칙	
4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의 구체 적내용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5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 목표소비 효율 또는 목표사 용량의 기준, 효 율관리기자재의 범위 등	법 제15조 제1 항,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법률→ 부령→ 행정규칙	
6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1 호, 2011.5.6, 일부개정・시행)	효율관리시험기 관 측정을 대체할 수 있는 자	법 제15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7		효율관리기자재 광고매체	시행규칙 제10 조 제1호(법 제 15조 제4항)		
8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조사	시행규칙 제10 조의2 제3항(법 제16조 제4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9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지 식경제부고시 제2010-93호, 2010.4.26, 일부개정·시행)		법 제17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10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대기전력 저감대 상제품의 각 제품 별 적용범위 등	법 제18조	법률→ 행정규칙	
11	제2011-23호, 2011.2.16, 일 부개정·시행)	대기전력경고표 지대상제품	법 제19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1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고효율에너지인 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 범위 등	법 제22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13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 부고시 제2011-203호, 2011. 10.17, 일부개정·시행)	시험기관 시험업 무 정지 요건으로 서의 측정방법, 시 험설비 및 전문인 력기준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4		에너지관리기준, 에너지진단의 범 위와 방법 등	법 제32조 제1 항 및 제8항	법률→ 행정규칙	
15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지 식경제부고시 제2010-50호, 2010.2.19, 일부개정·시행)	에너지진단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29 조 제2항(법 제 32조 제4항)		
16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	시행령 제38조 제3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17	「목표에너지원단위 대상제품 및 해당사업장 고시」(통상 산업부고시 제97-96호, 1997.5, 제정·시행)	목표에너지단위	법 제35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행정규칙 일 몰 제 위반
18	-	에너지저장의무 부과 대상자, 저장 시설의 종류 및 규 모등	시행령 제12조 제2항(법 제7조 제1항)		
19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지식경 제부고시 제2010-194호, 2010. 10.27, 일부개정·시행)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 획, 시행결과의 구 체적 기재사항, 작 성방법 등	제4항(법 제9	대통령령→	
20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 식경제부고시 제2011-71호, 2011.4.28, 일부개정·시행)	온실가스배출 감 축실적 등록에 관 한 세부사항 등	시행령 제32조 제3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21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 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 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97호, 2005.11.10, 제정·시행)	기후변화협약특 성화대학원 지정 요건으로서의 과 목,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절차 등	시행령 제34조 제1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정부조직 변경 사항 반영 필 요함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2	「건물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냉난방온도 점검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31 조의4 제4항 (법 제36조의2 제4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23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12호, 2011.1.18, 제정ㆍ시행)	냉난방온도 제한 온도 적용 부적절 구역	시행규칙 제31 조의3 제2항 제 4호(법 제36조 의2 제1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2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7호, 2011.4.27, 제정·시행)	엔지니어링사업 대 가기준	법 제31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2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 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 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3호, 2011.9.19, 제정 ·시행)	문기관 지정요건의			
3	-	엔지니어링전문인 력 양성 교육·훈 련기간·과정등	제2항(법 제13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4	-	엔지니어링사업 시 행과정의 세부 내 용 및 절차 등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지식 경제부고시 제2011-59호, 2011. 4.11, 제정·시행)	엔지니어링사업자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 차 등	제4항(법 제31		
6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76호, 2011.4.27, 제정·시행)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2호 비고 라목 및 제3호 비고 라 목(법 제26조 제7항)	대통령령 (별표비고)→	
7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182호, 2011.9.19, 제정·시행)		시행령 제37조 별표 5 2 비고 (가)(법 제28조)	법률→ 대통령령 (별표비고)→ 행정규칙	

(2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오존 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특정물질 포함제품	법 제11조 제4항	법률→ 행정규칙	
2	-	특정물질 배출 억 제와 특정물질의 사 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	법 제17조	법률→ 행정규칙	
3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조	특정물질사용합리 화기금에 내는 수 입금 포함제품	시행령 제6조 제2항	대통령령→ 행정규칙	
4	성을위한수입금의징수금액및 징수방법등에관한고시」(지식	수입금 징수금액, 징수비율 차등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 항(법제23조제 2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수입금 징수방법 등	시행령 제8조 제6항(법 제23 조제2항)		
6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186호, 2011.9.30, 일부개 정·시행)	특정물질 제조·수 입부담금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			
7	-	특정물질 파괴 기 준 및 방법	시행규칙 제8 조제1항및제 3항(법 제12조 제1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2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 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 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 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산 업자원부고시 제2007-153호, 2007.12.27, 제정·시행)	위해성평가서 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	법 제8조 제7항	법률→ 행정규칙	과학기술부 고시제2007- 19호/농림 부고시제 2007-80호/ 보건복지부 고시제2007- 105호/환 경부고시 제2007-189 호/해양수 산부고시 제2007-115 호/식품의 약품안전청 고시제2007- 78호
2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상태로 후입되는 유전 자변형생물체 에관한기중등	`		
3		유전자변형생물 체 표시방법 등	법 제24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4		유전자변형생 물체 취급관리 방법등	법 제25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5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 형생물체		법률→ 행정규칙	
6		약제내성 유전 자를 가진 유전 자변형생물체	법 제12조 제1 항 제3호 단서	법률→ 행정규칙	
7		병원성미생물 을 이용하여 얻 어진 유전자변 형생물체		법률→ 행정규칙	
8		보고, 자료 또 는 시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9		연구시설의 운 영에 관한 안전 기준	법 제23조 제9항	법률→ 행정규칙	

(2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용 품안전 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5호, 2009.9.29, 일부개정・시행)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법률→ 행정규칙	
2		안전인증대상전기 용품에 관한 안전 과 공장심사기준	법 제3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3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	법 제11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4		안전인증 면제품목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법 제3조 제1항 제 1호)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품목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8)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력기술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 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21, 타법개정, 2009.8. 24, 시행)		2(법 제6조의2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감리원 배치 기준	법 제12조의2 제1항	법률→ 행정규칙	
3		설계·감리 용역 대가	법제14조제5항	법률→ 행정규칙	
4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법 제12 조제2항제1호)	대통령령→	
5	-	전력기술인 경력 확 인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6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 제기회 (기시경제부구시 제2000	감리업무의 수행 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령 제23조 제2항(법 제12 조 제4항)		
7	· 행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160호, 2009.8.3, 제정·시행)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 법, 가입절차 등	시행령 제27조 의5 제3항(법 제 14조의2 제3항)		
8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지식 경제부고시 제2011-151호, 2011. 7.27, 일부개정·시행)	설계감리업무 수행 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령 제1조 제6항(법 제11 조제4항)		
9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 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리용역 또는 공사	조의2 제2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29)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

산업발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 입찰에 관한 절차와 기준	법 제19조	법률→ 행정규칙	
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	법 제21조 제5항	법률→ 행정규칙	
3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지 식경제부고시 제2009-212호, 2009. 9.17, 일부개정·시행)		시행령 제8조 제3항(법 제4 조제3항)		
4		전시산업 지원금 사 용실적 보고	시행령 제14조 제3항(법 제21 조제1항)		
5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	시행령 제15조 제3항(법 제22 조제1항)		

(30)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거래기본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용 및 형태의 동일	법 제5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2	「전자문서 보관 등 표준업무준 칙」(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 호, 2009.8.21, 타법개정, 2009. 8.24, 시행)	에 필요한 요건ㆍ	법 제23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 준 중 인력기술능력」(지식경제 부고시 제2009-193호, 2009.8. 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공인전자문서보관 소의 지정기준 중 인력의 자격		법률→ 대통령령→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 제부고시 제2011-181호, 2011. 9.22, 일부개정·시행)		시행령 제15조 의3 제2항(법 제 31조의2 제4항)	대통령령→	

(3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이용요금(변경)신고	법 제8조	법률→ 행정규칙	
2		전자무역문서 표준	법 제13조	법률→ 행정규칙	
3		첨부서류 제출 면 제 범위	법 제19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_ 2011-201호, 2011.10.10, 일부개 정, 2012.3.1, 시행)	전자무역기반사업 자 지정기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가 목(법 제6조 제 1항)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5		전자무역기반사업 자 설비에 관한 세 부기준			
6		전자무역전문서비 스업자 운영시스템 에 관한 세부사항			
7		전자무역기반사업 자 지정신청 서류 에 포함되는 내용	`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8		전자무역전문서비 스업자 등록 신청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시행규칙 제7 조 제2항(시행 령 제19조 제1 항, 법 제22조 제1항)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 담금 산정 및 부과」(지식경제 부고시 제2009-308호, 2009.12. 16, 일부개정·시행)	연구개발부담금	시행령 제19조 제4항(법 제43 조제1항)		
2		지식정보보안 컨설 팅 전문업체 지정 기준(보안대책)	제5호 라목(법		
3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지 식경제부고시제2009-174호, 2009.	구성・운영에 관한			
4	8.17, 일부개정, 2009.8.23, 시행)	지식정보보안 컨설 팅전문업체의 지정 및 재지정의 기 준·절차·방법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조 제3항(법 제		

(3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126호, 2009.6.26, 제정)	지능형로봇제품 품질인증기관 지 정기준			
2		품질인증 대상품목	시행령 제8조 제1항(법 제9 조제3항)		
3		공장심사 면제 대상	시행령 제8조 제3항제3호(법 제9조제3항)		
4		변경신청시 재인증 심사기준	시행규칙 제4 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9조 제1항, 법 제9 조 제3항)	법률→ 대통령령→ 부렁→	
4	-	투자위험보증사업 기관	시행령 제21조 제1항(법 제27 조제1항)		
5	-	지능형로봇전문연 구원 지정기준	시행령 제31조 제1항(법 제42 조제1항)		

(34)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 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187호, 2009.8.20, 폐지제정 ·시행)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 요한기술기준	법 제21조	법률→ 행정규칙	
2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 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7호, 2001.4. 21, 제정·시행)	열생산용량 및 전 기생산용량의 계산 방법			행정규칙 일 몰 제 위반
3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 자선정기준」(지식경제부고 시 제2010-97호, 2010.5.4, 일 부개정·시행)	한 다수인 허가 신	시행규칙 제7 조제3항(법제 9조제1항)		
4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지 식경제부고시 제2009-186호, 2009.8.20, 제정·시행)	열공급시설 검사 방법	시행규칙 제34 조제2호(법 제 23조 제3항)		

(3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 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지식 경제부고시 제2010-197호, 2010. 11.1, 제정·시행)	우선 입주자 선정 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 제16조 의3 제5항(법제 11조의4)		

(3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 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1호, 2009.12.29, 제정·시행)	품질경영인증체제 인증 업무 수행자 보고 방법	법 제7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113호, 2009.3.30, 일부개정· 시행)		법 제14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 기준」(기술표준원고시 제2010- 677호, 2010.12.27, 일부개정· 시행)		법 제19조 제2항	법률→ 행정규칙	
4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기준」(기술표준원고 시 제2010-678호, 2010.12.27, 일부개정·시행)	안전·품질표시대 상공산품 안전· 품질표시기준	법 제22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의 안전인증」(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80호, 2009.12.30, 일부 개정·시행)		법 제24조 제3항	법률→ 행정규칙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6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205호, 2009.9.1, 전부개정·시행)	서비스품질우수기 업 수상자 선정방 법, 선정절차, 포상 기준 등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3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항공우주산업 특정품목 및 특 정사업자의 지정과 지원에 관 한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항공우주산업을 위 하여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2	제2009-193호, 2009.8.21, 타법 개정, 2009.8.24 시행)	특정사업자 지정 및 지원	법 제5조 제2 항(시행규칙 제5조)	법률→ 행정규칙	
3		항공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면제 품목	법 제10조 제1항	법률→ 행정규칙	
4	「항공기 표준부품 검사기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12 호, 2008.10.29, 개정·시행)	자사생산품 중 자 사검사업체 지정 검사대상		법률→ 행정규칙	
5		검사 합격증 규격 · 도안 및 봉안방법	시행규칙 제22 조 제3항(법 제 10조 제5항)		

(38)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행정기관 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의 교육에 관한 규정」(지식경 제부고시 제2010-119호, 2010. 6.4, 개정)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2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시행령 제12조 의7 제1항(법제 13조의8 제1항)		

(39)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 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실 적(계획)신고서 첨부서류」(통 상산업부고시 제1997-109호, 1997.6.21, 제정·시행)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 학물질의 제조 량등의 실적(계 획)신고서 첨부 서류	시행규칙 제9 조(법제13조제 1항)	법률→ 부령→ 행정규칙	행정규칙 일몰제 위반

(4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 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 환촉진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재제조 대상제품」(지식경제 부고시 제2009-177호, 2009. 8.21, 제정·시행)		법 제8조의2 제 1항	법률→ 행정규칙	「재제조 대 상제품」에 서는 대상제 품별 재제조 공정 등은 규 정하지 아 니함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2	「산업환경 실천과제」(통상산 업부고시 제1998-18호, 1998.2, 개정・시행)	산업환경실천 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			행정규칙 일 몰제 위반
3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7호, 2008.4.30, 일부개정·시행)				
4	-	지원금 또는 출 연금 사용실적 보고 방법	시행령 제11조	대통령령→ 행정규칙	
5	-	품질인증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대통령령→	
6	「환경설비 품질인증 운용요 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107호, 2004.3.31, 개정・시행)	환경설비 품질인 증기준, 절차 등	시행령제12조 제2항(법 제 10조)		
7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445 호, 2010.10.8)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절차, 사 후관리등	시행령제12조 제3항(법 제 10조)		
8	-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권고 기 준·절차·방 법등	시행령 제22조 제3항(법 제 25조)		

(41)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친화 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상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 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행정규칙명	규정사항	수권근거 조문	위임 방식	비고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 부고시 제2011-187호, 2011.	에 너지소비효 율의 기준, 기 술적 세부사항 에 관한 요건	시행규칙 제2 조(법 제2조 제 2호 가목)		
2	10.17, 일부개정·시행)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표지	시행규칙 제6 조제2항(법제 11조)		
3	「2011년도 환경친화적자동 차 보급시행계획」(환경부고 시 제2010-183호, 2010.12. 29, 제정·시행)	환경친화적 자 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의 기 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	조 제2항(법		환경부고시임

제 4 장 행정규칙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제 1 절 교육· 과학기술분야

-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 (1) 외국학위 과정 정보시스템 구축
- 1) 행정규칙명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 술부훈령 제2008-72호, 2008.7.28, 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고등교육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4조 제2항

고등교육법

-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과학기술부 소관) ① (생 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제12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 및 <u>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u>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8 조의2(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①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 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고등교육법」제27조 제1항은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은 외국학위 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으로 관련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위임규정은 없으며, 단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수리 권한만 한국연구재단에 위탁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훈령인「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구축'업무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사실상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다.

5) 개선방안

외국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위 훈령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2) 기술사신고 등 위탁사무 비용
- 1) 행정규칙명
- 「기술사신고등의 업무위탁요건 및 위탁사무처리 기준」(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2008-107호, 2008.8.1,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기술사법」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기술사법	기술사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 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20조제1 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무"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 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 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 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 한다)를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 관에 위탁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과

기술사법	기술사법 시행령
6.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 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 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4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 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4.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 술사의 실적관리 6.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검토 및 기간 인정에 관한 업무 7.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 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8. 제1항의 업무 (이하 생략)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기술사신고등의 업무위탁요건 및 위탁사무처리 기준

- 5. 수탁기관의 조치사항
- 가.~라(생략)
- 마.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바.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검토의견

「기술사신고등의 업무위탁요건 및 위탁사무처리 기준」제5호 마목은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민간위탁은 특정한 사무를 행정기관이 직접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따르는 비용은 당연히 업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그 비용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수 없는 규정이다.

또한 같은 호 바목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신고나 등록 등 위탁사무에 따르는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정해서 수령하고 그 수수료 수입을 위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령상 신고나 등록 의무 등에 따르는 비용은 법령에 규정 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수수료 수입을 위탁비용으로 직접 사 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신고 또는 등록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5) 개선방안

신고나 등록 등에 따르는 수수료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지정절차 등
- 1) 행정규칙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 부훈령 제60호, 2008.7.28,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 제1항 및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 ②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 경영기관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임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 임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 영기관으로 본다.
 - ④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제1조 및 제4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u>지정 절차</u>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제 2 조 · 제 3 조 (생 략)

- 제 4 조(지정절차)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도·감독 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지도 · 감독 부처와의 협의 결과
 - 2. 정관(대학원과 그 외 부서로 정원을 분리한 것 포함)
 -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교원 및 사무직원 정원이 포함된 각종 규정 등
 - 2. 법인부담금 부담 능력 등 예산 현황
 - 3.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 4.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원 및 사무직원 정원이 포함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연구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법인부담금 등 부담 능력
 - 2. 내부 구성원간의 사학연금 가입 합의 여부
 - 3. 연구기관의 경우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이 실제로 대학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와 대학원과 타부서와의 순환근무 여부 등

4) 검토의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 제1항은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 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도 마찬가지로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지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그 근거를 법률에 두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그런데 이 조항 및 이 법은 어디에서도 그에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훈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제1조는 이 훈령의 목적의 하나로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제4조 및 제5조는 수권 근거 없이 지정 신청절차, 첨부서류, 지정 여부 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대상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매우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지정방법, 요건, 기준 및 절차의 대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직접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평생학습계좌 평가인정 권한의 위탁
- 1) 행정규칙명
-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2호, 2009.12.30,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평생학습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 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 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 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4조의2(평가인정) ① 법 제23조제2 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 생교육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있다.
 - 1. 교육시설 및 설비
 - 2. 교수과정
 - 3. 교원・강사
 - 4.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 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사항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이하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7 조(평가인정의 신청) ① 신청인은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대표자로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기관의 경우 총장 또는 학장으로 한다.
 - ②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인정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8 조(평가인정심의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 기구로 평가인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 위원은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진흥원장이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호 생략)
- 제 9 조(평가단) ① 진흥원장은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과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10조(평가인정 기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 제11조(평가방법)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서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제12조(예비인정) ① 진흥원장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10조제1항<별 표>의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 ② 예비인정은 부분적인 평가인정으로서의 효력은 가지지 않으며, 재평가 결과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예비인정은 취소된다.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학습과정의 분류) ①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해당 교육 분야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교육내용의 수준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14조~제18조(생략)

- 제19조(시정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운영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장은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계획에 따라 시정 명령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할 수 있다.
- 제20조(평가인정의 취소) ①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법 제23조제3 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기 위한 처리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계획에 따라 평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르면, 평생학습계좌에 대한 평가인정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평생학습계좌 평가인정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전부 평생학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심지어 위 고시 제19조에서는 시정명령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를 평생학습진흥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평가인정에 관한 사실상 모든 업무를 평생학습진흥원에 맡기고 있다.

생각건대,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에 주어진 권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실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

하는 경우에도 법령(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인바, 위 고시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평가인정의 주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평 생학습진흥원장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한 고시에 해당한다.

5) 개선방안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평생학습계좌 평가인정의 주체를 평생학습진흥원장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업무를 위탁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평생학습계좌 평가인정에 관한 업무를 평생학습진흥원장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으면,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 (1) 원자력시설 주변의 위해시설 설치제한 협의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1) 행정규칙명
- 「원자력시설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0호, 2008.4.18,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원자력법」제9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7조의8 제2 항 제4호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제96조의 2(위해시설 설치제한) ① 제 <u>11</u>	제297조의8(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조·제21조·제43조 또는 제76조의	및 대상시설) ① 법 제96조의2제1항에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 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 지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 에 동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 설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 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 ② 법 제9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하는 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항공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중 포사격장 및 미사 일기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승인대상사업으로 설치되는 것 에 한한다)
- 3. 「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 시설 중 댐 및 하구둑
- 4. 기타 폭발·진동·유독성물질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 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원자력시설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

원자력시설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

-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원자력법 시행령」제297조의8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진동·유독성물질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이하 "원자력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협의대상 시설의 범위)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범위는 관계 원자력시 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로 한다.
- 제 3 조(협의대상 폭발·진동 시설) ① 폭발·진동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제6조,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판매·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 2.~7. (생 략)
 -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중 제조·판매·저장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 [별표 1]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양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 ③ 제1항 각호의 시설중 공사과정에서 [별표 2]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수반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 제 4 조(협의대상 유독성물질배출시설) ① 유독성물질배출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
 -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동법 시행령제30조가 규정하는 물질

원자력시설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

- ② 협의대상은 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별표 3]에 주어진 거리 및 독성한계에 따른 양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한다.
- 제 5 조(기타 협의대상) 화재·온천 및 지하수개발 또는 여타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타 협의대상은 다음 각호 와 같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 축시설
 - 2. 「페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페 기물의 최종처리시설
 - 3. 「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 천개발계획
 - 4.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 5. 「항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만공사실시계획
 - 6.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어야 하는 송유관공사계획

제 6 조(협의 필요 서류) (생략)

부칙 <제2008-70호, 2008.4.18>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이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인가 또는 승 인한 협의대상 시설 등은 이 고시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4) 검토의견

「원자력시설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는 행정 관청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인허가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원자력법」제9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7조의8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협의대상 시설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 부칙 제2조는 위 고시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한 시설은 이 고시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이 고시가 제정 되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협 의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인 경우에는 타당한 경 과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록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원자력법」상 위험시설에 대한 협의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인 허가를 받은 위험시설에 대해 사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 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위험시설의 이전이나 폐쇄 등 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손실보상 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종전 위험시설 에 대한 협의를 고시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협의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위험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법령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설이전이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위 고시의 본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시설은 모두 법령 상 근거를 두고 있는 인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굳이 고시라는 행정규칙 형식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령 수범자 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직접 법령 차원에서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개선방안

「원자력시설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부칙 제2 조의 경과조치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고시의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 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자율학교 등 컨설팅 전문기관의 지정
- 1) 행정규칙명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과학기 술부훈령 제184호, 2010.7.29,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5항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 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ㆍ제 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24조제1항 · 제26조제1항 · 제29조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 를 거쳐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 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할수있다.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생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고 시하는 사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6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제16조(컨설팅 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교수-학습방법 및 교원능력 개발 방안
- 3. 교육과정 등 우수사례 배포 및 확산 등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4) 검토의견

교육과학기술부훈령「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훈령 제23조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컨설팅을 실시할 때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정을 받은 업체는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얻게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그 이용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훈령에서 이와 같은 지정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이 사례와관련하여서는 컨설팅 업체의 지정이 단지 우수업자를 선정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지정된 컨설팅 전문기관만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5) 개선방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6조를 삭제하고, 만일 정책적인 필요에서 컨설팅 업체의 지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 (1) 연구실 사고에 관한 보상 기준
- 1) 행정규칙명
-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9.23, 타법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보험가입) ① 연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제 7 조(보상금액) 영 제15
<u>구주체의 장은 대통령</u>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 14조제1항에 따라 가입	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	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	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
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	류는 연구실에서 발생	<u> 어야 한다.</u>
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	한 사고로 인한 부상・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
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	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성에 관한 법률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연 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명 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 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 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사 립학교교원 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이하 생략)	당상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원료된 후 그 부상이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한다)가생긴 때에는후유장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4. 부상자가치료중에그사망한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 5. 부상한자에게 그부상이원인이되어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제2호및제3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 6. 제3호의금액을 지급한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1호의금액의 기급한금액에서제3호에따라지급한금액의공제한금액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1조 단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 제 1 조(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호에 의거 연구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별표 1에 따라 최저한도로 하여 보상한다. 단, 발생한 의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 제 2 조(후유장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호에 의거 연구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인 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 긴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1인당 보상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보상한다.
- 제 3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4) 검토의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위임에 따라 연구실 등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의 직접적인 위임 근거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시 제1조 단서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규정을 두어 상위 근거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상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5) 개선방안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1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4.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 (1) 전문대학 수업연한 연장
- 1) 행정규칙명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8호, 2009.10.7, 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고등교육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생략)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 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수 있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 제 1 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설치계획 및 보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치운영계획을 정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조(설치기준) 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50%이상일 것
 - 2. 자체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전년도의 확보율이상일 것
 - ② 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대학의 학생 편제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수만큼 전년도 입학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이 설치하고자 하는 3년제 과의 편제정원완성연도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2조의3에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한다.
 -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학과의설치 기준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제 4 조(제재) 3년제 학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대학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5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 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06일까지로 한다.

4) 검토의견

「고등교육법」제48조 제1항 본문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 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을 3년제 학과로 정하 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학과의 경우는 전문대학의 장이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내용은 수업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다시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으로서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도 학과별 교육과정의 차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설립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전문대학의 모든 학과를 3년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수업연한을 정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5) 개선방안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할 사항의 구체적 기준, 예컨대「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 제1항 각 호의 설치기준 정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의 범위
- 1) 행정규칙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교육과학기 술부훈령 제60호, 2008.7.28,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 제4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 ②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임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 임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 영기관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한다.
 -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 3. 제3항에 따른 공단 임직원으로서 이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
- 제 3 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 제 3 조(적용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교수요원은 대학원의 교수요원 정원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강의를 전담하는 자
 - 2. 연구요원은 대학원의 연구요원 정원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강의 또는 연구를 전담하는 자
 - 3. 사무직원은 대학원의 정원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
 -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정관 또는 규칙 등에서 정한 정원 범위 안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한다.
 -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범위 안의 임원 및 직원으로 한다.

4) 검토의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60조의4 제4항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의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이처럼 법률의 적용범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자의적인 법 집행을 초래할 수있고, 더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한 때에도 이를고시하거나 공고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아니하다는 문제가 있다.

5) 개선방안

위임의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적용범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물리적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 1) 행정규칙명
-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42호, 2010.11.26,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 4 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① 제 7 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정부는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수립)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위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시설등에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시 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 력시설등에 대한 위협 평가 및 물리적 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위협별 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 대응기준(이하 "위협대응설계기준"이 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인 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확보 및 운영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3. 원자력사업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 공단체 및 사회단체(이하 "지정기 관"이라 한다)의 장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이나 요 구를 받은 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협평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위협대응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사회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 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 다. (각호생략)
-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운영관리 (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 2.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 관련 조직 및 인력의 운영(원자력사 업자에 한한다)
- 3. 물리적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정보를 입 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방호조치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고시」제2조부터 제5조까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고시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물리적방호 교육) ① 물리적방호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원자력사업자가 지정하는 물리적방호업무 종사자(이하 "방호종사자"라 한다.) 가. 방호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
 - 나. 과학화 보안설비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
 - 다. 청원경찰 및 이와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 2. 원자력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원자력시설근무자"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되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기본교육: 방호종사자, 원자력시설 근무자
 - 2. 실무교육: 방호종사자
- 제 3 조(물리적방호 교육대상자 지정·제출)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의 실무 교육대상자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사 이동 등으로 물리적방호 교육대상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조(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물리적방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고시

-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물리적방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교육수행을 위하여 강사보유 현황, 교육시행절차서 및 규정, 교육 장비 및 시설이 미흡한 때
- 2. 연간 교육실적이 없거나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
- 제 5 조(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육일시 및 장소
 - 2. 교육 대상
 - 3. 강사의 인적사항
 - 4. 교육내용 및 기자재
 - 5. 교육방법
 - 6. 교육의 평가방법
 - 7. 기록의 유지
 - ② 교육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검토의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조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면 원자력사업자 등에 게 필요한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는 그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물리적 방호체제 업무를 담당하 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그 교육이나 훈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의 주체, 그 밖의 내용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고시」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해당 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법률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포괄적인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규제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이 고시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이는 포괄적・일반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범자에게 이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률, 적어도 대통령령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과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역시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개선방안

법률 또는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교육 및 훈련의 실시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기 타

- (1) 행정절차법 시행령 준용
- 1) 행정규칙명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 시 제2009-37호, 2009.9.23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제 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

- 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 발 서비스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방 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서비스업자중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 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 확 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육 성·지원방안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 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갖 추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각호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 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 ③ (생략)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 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정보·전 문연구인력·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조성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회 확대
-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 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 제 6 조(처리기한)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 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연구개 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정 한 기한내에 요구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및 첨 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교육과학기술부고시「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제 6조 단서에서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서 상위의 법령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이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이와 같이 하위의 행정규칙에서 상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여야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방식이다.

또한 같은 고시 제7조에서는 신고서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반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행정절차법」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다.

5) 개선방안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제6조 단서 및 제7조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행정규칙 중에는 행정규칙 그 자체만으로도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거나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준용이나 반복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법(시행령/시행규칙)에따라 △△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상위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않은 행정규칙 사례
- 1) 행정규칙명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관리및운용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 46호, 2008.7.28,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축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삭제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관리및운용규정」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관리및운용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검토의견

「한국연구재단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 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기금 과 사무가 모두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훈 령은 여전히 남아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5) 개선방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관리및운용규정」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 (3) 수권근거를 잘못 지정한 행정규칙
- 1) 행정규칙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1호, 2011.2.1,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교육기본법」제28조 및「장학금규정」제1조

교육기본법

-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u>를 위한 장학제도(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학금규정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29, 타법개정]

- 제 1 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5 조(관리기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 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 · 확인
 - 2. 장학생 선정 · 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3. 각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 4.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및 포탈시스템 운용
 - 5. 그 밖의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②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생 추천 및 세부 사업운영 등 장학사업 업무의 일부를 각 고등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각 고등교육기관에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 제 **7** 조(**장학생**)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 ② 장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제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
 -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3. 장학금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4. 반기 및 연차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5. 그 밖의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6. 장학사업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실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동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출한도 제한대학
 - ② 제1항에 의한 제재 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교부된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교부된 장학금을 환 수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교육과학기술부훈령인「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제1조는 이 훈령의 법적 근거를「교육기본법」제28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교육기 본법」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제도(또는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통령령이 아닌 교육과학기술 부훈령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제5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은 그지정에 따라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점검을 하는 등고등교육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바, 그 지정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제7조는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의 환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는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사항은 수범자에게 침익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바이를 위해서는 훈령으로 규정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육기본법」제28조는 종전의「교육법」제158조부터 제1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본법 체제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법」체제에서는 제162조에서 학비 또는 연구비의 보조 또는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장학금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체제로 전

환된지 10여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장학금규정」제1조는 그 근거규정으로「교육법」제158조 내지 제162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이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바, 정확한 근거조문을 적시하여야 할 것이고, 대통령령인「장학금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훈령인「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제정을 요하는 행정규칙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1항 및 제20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 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 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 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평가인정의 기준) ① 법 제3조제 4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 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 2.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띠	 }
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	5
과학기술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리	}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습시설·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 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정하면서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149)

¹⁴⁹⁾ 오히려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indexs.html)에 게시하고 있다. 참고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으로부터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위탁받은 업무는 i)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의 수리(受理)에 관한 업무, ii) 법 제7조제1항 및 제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 의 사항의 하나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으나, 그 심의에 선행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을 미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5월 자로 2008년도 학점은행제 제18차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기본계획 (안)을 공고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도 교수 또는 강사의 기본적인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 www.cb.or.kr/indexs.html) 게시하고 있다. 참고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위탁받은 업무는 i)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의 수리(受理)에 관한 업무, ii)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업 무, iii)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iv) 제4조제4항에 따 른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v) 법 15조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업무이다.

3) 개선방안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접 정하거나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전문적인 사항으로서 정책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iii)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iv) 제4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v) 법 15조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업무이다.

제 2 절 국토·해양분야

-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 (1) 건설업 등록신청 거부사유
- 1) 행정규칙명
-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0-175호, 2010.11.10 개정· 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9 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제 2 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류)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 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 · 광역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 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렁이 정하는 바 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2.(생략)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및 제 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법인인경우에는 말소당시의원인이된행위를 한자와대표자를 포함한다.(이하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건설업관리지침」 제2장 제3호 사목 (2)

건설업관리지침

제 2 장 건설업의 등록

- 1.~2. (생략)
-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가.~바.(생 략)
 - 사.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등록 신청의 처리
 - (1)(생략)
 - (2)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는 업체가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한 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건설업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4) 검토의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는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2항은 건설업 등록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 위임 근거는 없지만,「건 설업관리지침」은 건설업 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 수탁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지침 제2장 제3호 사목 (2)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건설 업자가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한 후 다른 건설업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해당 건설업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 13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지침 제2장 제3호 사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등록제도는 행정관청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바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이 법정등록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바, 행정규칙인 「건설업관리지침」에서 건설업 등록신청 거부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할 것이다.

5) 개선방안

「건설업관리지침」제2장 제3호 사목 (2)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의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 다른 업종의 건설등록을하는 경우를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거나 같은법 제9조에서 등록의 수리거부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1) 행정규칙명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818호, 2009.8.25,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후단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 조(부동산개발 전문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	제 9 조(사전교육기관의
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인력의 사전교육) ① 법	지정 등) ① 영 제10조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제5조제2항 후단에 따	제1항에 따라 사전교육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	른 사전교육 기관은 다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는 자는 국토해양부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동 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사전교육의 면제대상,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 른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자격분야별 면제 대 상 등은 국토해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기관의 지정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한다.	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한다. (각호생략)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전교육기관이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 상황을고려하여야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3.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 사항 ③(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사전교육기관의 운영 등에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6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제 6 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 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각호 생략)
 - ③ 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 의 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이를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 ⑤ 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월 전까지 제1항의 신청에 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생략)

4) 검토의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6조 제4항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기관의 지정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대학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중에서 사전교육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제6항은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사

전교육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지정의 대상기관, 지정절차, 지정요건에 관 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는 지정받은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정받은 사전교육기관의 법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창설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에서 사전교육기관 지정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 려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전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국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정의 유효기간'을 법령이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5) 개선방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근거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계약서 등 보존의무 부과
- 1) 행정규칙명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333호, 2009. 8.25, 폐지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부동산투자회사법」제39조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9조(감독·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
 -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제12조 및 제14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 제12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u>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 이</u> 내에 영업보고서 2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별지 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14조(계약서등의 보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계약권유문서 및 계약관련서류(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서류를 포함한다)
 - 2. 고객에게 제공한 투자자문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
 - 3. 제12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4) 검토의견

국토해양부훈령「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제12조에서는 법령의 직접적인 수권 근거 없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영업보고서 2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에서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고객과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ii) 계약권유문서 및 계약관련서류(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서류를 포함한다), ii) 고객에게 제공한투자자문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 iii) 제12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비록「부동산투자회사법」제39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일반적인 자료제출·보고명령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 한령에서 자료제출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고, 이와 같은 보고서 제출 의무, 서류 보존의무 부과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측면이나,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바, 가급적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 (1)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신청 등
- 1) 행정규칙명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 토해양부고시 제2009-1205호, 2009.12.24 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설기계관리법」제30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 1. 덤프트럭
 - 2. 아스팔트살포기(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5 조, 제6조 등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적용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제 5 조(경력관리 신청) ①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제공 및 활용동 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 6 조(경력관리 확인신고) ①공단에 경력을 신고한 자는 매년 1월 20일 및 7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 확인신고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건설기계 정보통신망 자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생략할 수 있다.(이하 생략)

4) 검토의견

「건설기계관리법」제30조의2는 건설기계조종사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규명령 등에 대한 위임 없이 곧바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5호, 2009.12.24 개정)(이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규정」제2조는 일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의 경력관리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것만을 본다면,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력관리를 위해서 그 신청 및 변경신고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그 절차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되려면 이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규정」제2조는 수권 근거 없이「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입법론적으로는 현행「건설기계관리법」제30조의2처럼 곧바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수권하는 것보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을 두고, 그 신청, 변경신고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의 경우를 「건설기계조종사경력관리 규정」에서 규율하려면 명시적인 법률상 수권 근거를 두고마찬가지로 그 신청, 신고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공공발주사업 관련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 1) 행정규칙명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859호, 2009.9.2 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축사법」제19조의3 제2항

건축사법

-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장총칙

-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축 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 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가 제5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 3 조(자료의 요청) 건축사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각호 생략)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 4 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 제 5 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생략)
- 제 6 조(설계업무) ①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 7 조(공사감리업무) ①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② (생 략)

제 3 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 제 8 조(대가산출의 원칙) ①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호 생략)
 -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제 9 조(대가의 조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 제10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이하 생략)
-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이하 생략)
- 제12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발주자는 건축사에게 제6조제5항에 따른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 제13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중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각호 생략)

-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①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생략)
- 제15조(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산정) 제5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 제16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4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생략)
- 제17조(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이하 생략)
-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 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이하 생략)

4) 검토의견

「건축사법」제19조의3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이라는 조명 하에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고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859호, 2009.9.2 개정)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사법」은 제19조의3의 조명을 '공공발주사업'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법문의 내용상으로는 '공공발주사업'에 관한 건축사의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공사의경우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및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어야 하는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이를 법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 제2항을 근거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사항(제4조)도 규정하고 있다. 공공발주사업과 관련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축사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대강은 법령에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수권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상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대강은「건축사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히 대가기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신기술 지정신청 자격 제한
- 1) 행정규칙명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 시 제2010-973호, 2010.12.23,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39조(신기술의 지정신 제16조(신기술 지정신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 **청**) 법 제18조제1항에 서) 영 제39조제1항에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 해당하는 건설기술을 개 기술"이라 한다)의 지 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발한 자(이하 "기술개발 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 같다. 자"라 한다)가 요청한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 제17조(신기술의 심사기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 등) ① 영 제40조제1 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 항에서 "국토해양부령 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 출하여야 한다.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설기술을 새로운 건설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 이란 영 제129조제3항 기술(이하 "신기술"이 발 배경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 라 한다)로 지정・고시 2. 신기술의 내용(신기 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 할수 있다. 술의 요지와 지정요 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 1. 국내에서 최초로 개 건인 신규성 · 진보성 하다. 발한 건설기술로서 신 • 현장적용성에 대한 ② 법 제18조에 따른 신 구체적인 내용을 포 규성·진보성 및 현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장적용성이 있다고 판 함한다) 및 범위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 단되는 건설기술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자의 성명(법인의 경 되지 아니하다. 개량한 것으로서 국 우에는 그 명칭 및 대 1. 신청인이 서류를 보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내에서 신규성 · 진보 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설기술 ② 신기술의 지정에 필 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 술개발자를 보호이 기술에 보호기 간을 정하여 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다시 보호 기술사용료를 받을 다시 보호 기술에 하거나 보호 기상의 연장을 그 성하 는 경우에는 직 인기 근 경우에는 직의 할용실적 한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기 술로 보호기간(보호 기간의 연장을 대용하는 대통령 명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기 술로 보호기간(보호 기간의 연장을 대통령 명으로 정한다.	표자의 성명) 4. 국내외 건설공사에 서의 활용 전망 5.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그 밖에 품질검사전 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영 제30조제 1항 각호의 기관 또는단체를 말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5항 및 제28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4 조(지정신청의 접수) ①~④ (생 략)

- ⑤ 지정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여 제재중인 경우 그 제재기간동안 평가원장에게 신기술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 2. 본 규정 제2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

제28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① (생략)

- 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1이 정한 때로부터 2년간 신청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된 때
- 2.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법 제1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가 고시된 때
- ③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이해관계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견서가 반려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이해관계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⑥ 평가원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 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 ⑧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4) 검토의견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항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거나「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 28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해 신기술 지정 신 청 제재기간 중인 때에는 신기술 지정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일정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의 신청 제한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 고시로서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신기술 지정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개선방안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인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을 제한할 정책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의 제한은 국민의 신기술 지정 신청과 관련한 법적 지위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 고시보다는 「건설 기술관리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의 신기술 지정 제 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건설기술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공간정보산업시설의 지정
- 1) 행정규칙명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969호, 2009. 10.1,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 및 제1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
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	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1.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서울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공간정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사업자)가 입주할 것

-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공간정보사업자 중「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 3. <u>공간정보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u>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 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 ②·③(생 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 제 4 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② 입주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 ③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공간정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4) 검토의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3조는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으로 i)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 이상의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할 것, ii)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입주한 공간정보사업자 중「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iii) 공간정보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의 3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는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으로 ii) 진흥시설내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ii) 입주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는 것, iii)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공간정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위 규정은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국 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기 보다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지정요건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만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의 지정조건 3가지(특히 같은 조 제2항)를 모든 신청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 지 정요건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
- 1) 행정규칙명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9호, 2009.10.1,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해양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국 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 토해양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 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 해제할수 있다. 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 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제 7 조(공간정보산업진홍시설의 지정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u>영 제14조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3.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이하 생략)

4) 검토의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9조는 i)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ii)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해제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의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다.

그런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는 마치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하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해제요건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가 있고, 특히 제7조 제1항 제3호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지정 해제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고시에서 지정해제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 규정에서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짓,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은 지정처분과 관련한 중요한 하자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고시 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법령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지정 취소의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그 근거를 법률 등 상위법령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혁신도시 조성토지 우선공급
- 1) 행정규칙명
-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644호, 2010.11.29, 일부개정 · 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 사업시 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 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 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 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 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 · 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 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따른다. 다 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 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 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 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 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 약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토지 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 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 1.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에 사무소를 신 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2. 공공청사용지 · 학교시설용지와 일 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 지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3.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 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 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 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 기업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 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전공공기 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지 또는 기숙사용지를 이전공공기 관에 공급하는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 며, 그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 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 게 양도한 자[제6조제2항에 따른 공 고일(법 제5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 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 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 전소유자로부터 그가 예정지구 안 에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 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 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도시의 미관·경관·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수 있는 경우 ④ 법제51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에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에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2항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수있다.(이하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제7조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제15조(채권보상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그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으로 수령하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자의 범위, 우선하여 공급하는 토 지의 범위, 공급방법 및 공급기준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토의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도록 함),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제15조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그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수령하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개선방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그 대가를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 조성토지의 우선공급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그 근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토지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입법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7)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
- 1) 행정규칙명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2호, 2009.
 8.21 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교통시설설치ㆍ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	제 5 조(교통안전관리규
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	정의 검토 등) ① 교통	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
리규정) ① 대통령령이	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	평가) ① 법 제21조제3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정하는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및 교통수단운 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 · 관리 자등"이라 한다)는 그 가설치 · 관리하거나 운 영하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1.~5. (생략)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교통시설설치 ·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가장을 준수하여야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구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한다.	지·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교통안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학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학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교통안전의 작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의 작보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하다고 있다고	항에 따른 교통안전관 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 인ㆍ평가는 영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관리규정을 제출한 날 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90일 이 내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 항 외에 교통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의 확 인ㆍ평가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 관이 정한다.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④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을 받은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제출한 교통안전관 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 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 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자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등

-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u>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u>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7** 조(심사절차와 방법) ① 공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 2.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 각호의 내용의 포함 여부
 - ② 공단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평가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 요청
 - 2. 서류의 보완, 추가하는 서류 또는 도면 등의 제출 요청.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사업장내에서 관련 자료 등의 확인
 - 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 · 평가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검토기준과 별표 3의 확인 ·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4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조(심사결과의 조치)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1. 적합: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조건부 적합: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부적합: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 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별표 5의 배점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1.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결과
 - 가. 90점 이상: 적합. 다만, 계량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한다.
 - 나. 70점 이상 90점 미만: 조건부 적합
 - 다. 70점 미만: 부적합
- 2.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 평가결과
 - 가. 80점 이상: 적합
 - 나. 60점 이상 80점 미만: 조건부 적합
 - 다. 60점 미만: 부적합
- 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여부 확인 ·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 및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을 검토 또는 확인 · 평가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최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공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또는 이행을 하는데 30일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등이 조건부 적합판정에 따른 공단의 변경 또는 이행 권고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하여야 한다.
- ⑥ <u>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 ·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부적합통지서"를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u>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9 조(재심사 신청) ①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후 안전관리 규정을 재작성하여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호의 재심사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는 최초로 심사를 받는 절차와 같다.

- 제10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u>공단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안전관리규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u>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또는 화물자동차운 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공단 지사장
 - 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 공단 도로안전본부장
 - 3. 삭도사업자 및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 공단 교통안전연구원장
 - ② 제1항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재심사 신청자 소속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다만, 재심사 신청자가 교통시설설 치·관리자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 2. 심사를 실시한 공단의 직원
 - 3.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제11조(변경명령 등) ① 공단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 기관의 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과장
 - 3. 삭도사업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평가 결과 제8조제6항에 따른 부적합 통지를 받고 재심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3항 관련 별표 9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4호서식의 처분결과 내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훈련) ① <u>공단은 매년 교통안전담당자가 안전관</u> 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영 제44조제2항·제3항

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8시간의 범위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훈련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훈련실시 60일 전에 교육기간 등을 일간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역별로 순회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교통안전법」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150)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2호, 2009. 8.21 개정)(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¹⁵⁰⁾ 시행규칙은 확인·평가기간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포괄 적으로 재위임하고 있음.

한편, 「교통안전법」 제21조 제4항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심사지침」의 직접적인 수권근거는「교통안전법」제2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심사지침」에서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심사지침」 제1조는 그 수권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포함시키고 있고, 그리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기관 및 방법등, 제출시기에 관한사항 역시 규율하고 있다.

「심사지침」에서 순수하게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율한다고 하면 별도의 수권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기관 및 방법등,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제3조부터 제6조까지) 등은 교통 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자가 이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법령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다.

「심사지침」은 심사결과의 조치(제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판정 기준은 이미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행정규칙 차원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적합 통지를 받았을 경우의 재심사 신청방법 및 절차(심사지침 제9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지침제10조)은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므로 이는 「심사

지침, 차원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 차원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심사지침」 제11조 제2항은 부적합 통지를 받고 재심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통행정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적합 통지시 재심사에 관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안전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규율하면 될 것이므로 「심사지침」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사지침」 제14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교통안전담당자의 안전관리규정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교통안전담당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5) 개선방안

먼저「심사지침」제1조상의 수권 근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삭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ㆍ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기관 및 방법등,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법령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심사 신청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그 대강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 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규정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그 근거를 법률에 두고,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심사지침」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8)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신청시 첨부서류
- 1) 행정규칙명
-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68호, 2010.7.14일 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시철도법」제22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 제 1항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5조의6(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에 사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 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도시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인증기관(이 1. 품질인증의 대상: 별표 4의3의 도시 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철도용품별 세부 품목으로서 기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하여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 장관이 고시한 품목 2. 품질인증의 기준: 기술위원회의 심 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도 시철도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니하다. 한 다음 각 목의기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 자,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등에게 에 관한 평가기준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을 우 나.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시험기준 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는 품질인증에 관한 기준 기준・유효기간・절차, 품질인증기관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

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려는 자는 품질인증신청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할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⑤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철도용품이 제 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품질인증표시를 한자에 대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품질인증표시를 한자에 대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품질인증자의 작합한 도시철도용품을 제조하는지를 조사할수 있으며, 도시철도용품이 제 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기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기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표시의 사용금지, 해당도시철도용품의 판매정지・수거 등을요구할수 있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 제 **3** 조**(품질인증대상)** ① 영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대상은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도시철도용품을 품질인증대상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용품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2. 용품의 품질시험기준(안)
 - 3. 품질시험기준(안) 해설서
- 제 5 조(품질인증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1의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직 및 관리체계를 기재한 서류
 - 2. 기술인력,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목록
 - 3. 대상용품에 대한 설계도 및 설명서
 - 4. 기술제휴(도입)증명 및 특허증명(해당자에 한함)
 - 5. 관련법령에 의한 품질인증 관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6. 자체시험 성적서
 - 7. 기타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 품질인증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6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도시철도법」제22조의4 제1항 본문은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절차,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 제1항은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면서 그 대상 및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68호, 2010.7.14일 개정)(이하 "품질인증요령"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서는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품질인증요령」은 품질인증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자료도 규정하고 있다. 즉 「품질인증요령」 제5조는 품질인증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자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요령 제3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인증대상 외의 도시철도용품을 품질인증대상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다.이들 서류는 품질인증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 제2항은품질인증신청시 신청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어떤 것이 '증명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품질인증요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요령 제3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 인증대상 외의 도시철도용품을 품질인증대상으로 선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인 증대상 외의 도시철도용품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법령에 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품질인증요령」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첨 부 서류를 삭제하고 이를 「도시철도법 시행령」제25조의6 제2항에서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 시하는 품질인증대상 외의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신청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9)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 1) 행정규칙명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32 호, 2009.8.25, 폐지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39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 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 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2.~4. (생략)
 -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 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있다.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 제39조(감독·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 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
 -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 제 9 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①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②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 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 2. 위탁받는 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 회사가 부담하거나 자산의 투자 · 운용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약속하는 행위
- 3.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검토의견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는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및 위탁받는 자산의 운용으로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회사가 부담하거나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있다.

이처럼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라는 자산관리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고, 자산관리회사가 위탁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가증권시장의 가격

형성기능을 왜곡시키고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투자관련 유가증권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지행위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금지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역시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개선방안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회사의 i)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자산운용업무수행 금지, ii) 일정한 이익의 보장, iii) 손실보전 약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산관리회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집합투자업'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입법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 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10)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유가증권 취득 제한과 그 예외적 허용
- 1) 행정규칙명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32 호, 2009.8.25, 폐지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39조 제1항

-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 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 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2.~4. (생략)
 -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 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 ·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 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 제39조(감독·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
 -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제1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 제10조(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제한) ①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고유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발기인으로서 설립당시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당시의 발 기인으로서 해당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의 설립 후에 신규로 발행한 주식을 그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인수 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 3의2. 그 운용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4.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국채증권 및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라 한국은행통 화안정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5.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시설관리회사· 중개회사·감정평가법인·「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등 (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자기 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 한한다)
- 6.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 7.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 8.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9. 영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10.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11. 해외법인의 설립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1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및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13. 국공채가 편입된 MMF(머니마켓펀드)를 취득하는 경우
- 14. AA등급이상의 회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 15. A2등급이상의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
- ② 자산관리회사는 제1항제1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제10조는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의 고유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영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서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운용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고유재산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 제한과 예외적 허용은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하여 금지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므로 이를 국토해양부 훈령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개선방안

자산관리회사의 유가증권 취득 제한과 예외적 허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도 불건전 영 업행위 금지의 한 유형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입법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6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 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 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 자격 제한
 - 1) 행정규칙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74호, 2010.
 12.23,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주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주택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 인권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 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 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 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 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 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 지방자치단 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②~⑥(생략)
-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 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주택법 시행령

-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① 법 제2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 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 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 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 출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 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4조 제3항 및 제6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제14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감리자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 자는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된 감리원을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③ <u>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u>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각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특별한 사유(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사업주체 사유로 인한 1년이상의 착공지연, 기타 천재지변 등)없이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 3. 감리비 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적발된 경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각 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기록 ·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각 협회의 장은 감리자지정권자가 부정행위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확인되어 각 협회에 통보된 감리자 및 감리 자지정신청자는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자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검토의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4조 제3항은 감리자지정권자(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자)는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가 i)

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ii) 사업체의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iii) 감리비입찰서 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각 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협회에 통보된 감리자 및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그 사실이 통보된 날부터 1년간 감리자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위법령인 「주택법」제24조 제7항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 중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감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감리자 교체 및 감리업무 지정 1년 제한 사유로 i)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iii) 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iii)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iv)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의 4가지를 들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 제3항에서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감리비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감리자지정 신청 자격 제한사유로 새로이 드는 것은 「주택법」 제24조 제7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개선방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감리비 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제한사유를 「주택법 시행령」제29조 각 호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12) 철도용품 품질인증 재신청
- 1) 행정규칙명
-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1호, 2009.
 8.21,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철도안전법」제27조

철도안전법

- 제27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 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인시 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의 전부를 면제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제14조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 제14조(품질인증의 재신청) ① 인증신청자는 품질인증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자는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품 품질인 증신청서에 철도용품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부적합사유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 치 및 이에 대한 유효성입증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품질시험심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심사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반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제14조는 품질인증 부적합 판정시재신청, 재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재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신청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인에게는 중요한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인바,「철도안전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제14조를 삭제하고, 품질인증제도의 근거규정인「철도안전법」제27조에 이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지침 제14조 제2항에서 재신청시 첨부하도록 요구하 고 있는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서류는 마치 품질인증기관이 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하는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는바, 부적합에 대한 보완 사항 정도로 수정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13) 철도용품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 1) 행정규칙명
-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1호, 2009. 8.21, 일부개정·시행) 및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수수 료」(건설교통부고시 제2006-91호, 2006.3.23,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철도안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철도안전법 제74조 (수수료)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 면허 • 검사 • 시험 • 정밀 진단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신체검사 지정병원 · 적성검사기관 · 교육훈련 기관 · 성능시험기관 · 제작검사기 관·정밀진단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 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 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 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 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 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제17조 및 「철도용품 품질인증기 관 지정 및 수수료」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 제17조(수수료) 인증신청자는 품질인증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품질인증 수수료를 품질인증을 착수하기 전에 품질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 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 가. 지정번호 : 제1호
 - 나. 기관명:(생략)
 - 다. 대표자: (생략)
 - 라. 사업장소재지 : (생략)
 - 마. 인증업무분야: 철도시설(I)철도시설(I)철도차량
 - 바. 인증업무개시일 : 2006년 3월 24일 사. 인증기관지정일 : 2006년 3월 17일
- □ 품질인증 수수료
 - 1. 기술검토료

구 분	수 수 료(원)	비 고
기술검토료	400,000	200,000(원/일)×2일

주) 본 수수료는 문서 심사 및 계획서수립, 품질인증결과의 처리 등 관련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심사원급으로 2일 기준

(이하 생략)

4) 검토의견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제17조는 인증신청자가 품질인증기 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인증신청자 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수수료 납부가 사실상 강제되므로 수수 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철도안전법」제74조 제1항 단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신체검사지정병원·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성능시험기관·제작검사기관·정밀진단기관의 경우에는 이들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행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기준)를 정하면 되므로,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제17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2006년 3월 23일자「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91호)에서는「철도안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을 근거로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과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를 고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고 시에 관한 법적 근거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고시의 법적 성격은 공고 내지 통지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측량·수로조사
- 1) 행정규.칙명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8호, 2009.12.14, 전부개정) 및 「측량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로조사 의 지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3호, 2009.12.14, 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 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 2.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 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또는 수로조사
 -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탐사를 위한 수로조사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로조사의 지정 고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 I. 국지적 측량
 - 1.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송전선로송전탑광산시설의 보수 측량
 - 2. 건축사업에 관련되는 택지조성, 설계, 시공을 위한 측량 중 좌표기준점측량을 제외한 측량
- Ⅱ.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 1.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 ※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그 렌즈가 정격이 되고, 수차 수정표가 첨부 되고 그 수차가 7μm 이하 일 것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 2.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
- 3. 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 Ⅲ. 순수 학술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 1. 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 서 시행하는 실습측량
 - 2.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 3.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로조사의 지정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로조사는 다음과 같다.

- 1.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수로조사
 - 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육 및 순수 학술연구를 위한 수로 조사
 - 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해양학, 해양지질·해양물리·해양화학·해양생물 및 음향자료 등에 관한 수로조사
-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탐사를 위한 수로조사
 - 가. 해저조광권자가 실시하는 탐사 · 채취 또는 지질조사
 - 나. 해저광구 및 유망광구 설정을 위해 실시하는 수로조사

4) 검토의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 대하여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으로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법기술적인 이유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도 한다.151)

그러나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그 법률의 효력이 어떤 대상에게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의 적용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를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조의 위임에 따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로조사의 지정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일견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법률의 적용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이를 법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로조사의지정 고시」은 폐지하고, 이들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¹⁵¹⁾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06, 73쪽.

(15) 시설부담금 면제

- 1) 행정규칙명
-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 토해양부고시 제2010-399호, 2010.6.30,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택지개발촉진법」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 제 9 조의 **3(건축물의 존치 등)** ① · ② 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 (생략) 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 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 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단가(「국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 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 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하여 산정한다)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 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되, 용도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령령으로 정한다.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5.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5. 시설부담금의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 공공청사,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존치하는 경우
- 나. 공원, 녹지 등 자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전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
- 다. 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

4) 검토의견

국토해양부고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적용기준」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3 제3항을 근거로 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부담금 부과 및납부 시기 등을 정하면서 납부의 면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수권규정에서는 납부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납부의 면제에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자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법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5.를 삭제하고,「택지개발촉진법」제12조의2 제2항에서 '비용 부담의 기준·방법'외에 '면제'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면제대상에 관하여「시설부담

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5.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16) 장기체류화물 매각 방법
- 1) 행정규칙명
-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호, 2011.3.10,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항만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제74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국토 해양부장관은「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 [장치(藏置)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수 없	항만법시행령 제77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국토 해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른 독 촉통보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공고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 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 으로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 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④(생 략)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의 소유자 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 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생 략)	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 체류화물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제10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 제10조(수의계약) ①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체류화물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1. 영 제7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3회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경우
 - 3. 당해 화물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4.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상품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4) 검토의견

「항만법 시행령」제77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항만의 장기체류화물 중 화물의 반출통보 또는 독촉통보 후 반출기한 내에 반출하지 아니 한 화물에 대해서는 공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되,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매 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은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외에도 i) 3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이상의 응찰자가 있거나, ii) 당해 화물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iii)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상품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iv)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도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매각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수의계약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항만법 시행령」제77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5) 개선방안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상품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매의 방법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장기체류화물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정책적으로는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수의계약 대상을 「항만법 시행령」제77조 제1항 단서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세법」제210조 제3항의 경우 i)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ii)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입법례

- 【관세법】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2.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 (17)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의 새로운 면허신청152)
- 1) 행정규칙명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4호, 2008.4.3,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면허)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수해역 안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받은

¹⁵²⁾ 이 사례는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의 사례에도 해당할 것이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국토해양부정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절차·신청방법 및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수해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3.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제11조(면허심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2. 재정적 · 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 3.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 4. 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低減)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5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 5 조(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신청) 면허증이 이미 교부 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취수해역과 관련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는 해양심층수개 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면허심사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5조는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취수해역과 관련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이미 면허증을 받은 자와 협의하도록 할 경우 사실상 기존의 면허권자가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면허권자가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협 의를 해주는 대가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5조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도 없이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개선방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기존 권리자가 미리협의하도록 할 필요성이 공익적·정책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법률에근거를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8) 해양화물운송사업 등록 조건

- 1) 행정규칙명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384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¹⁵³⁾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해운법」제24조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	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

¹⁵³⁾ 이 사례는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의 사례에도 해당할 것이다.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자는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 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 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3.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한 다)(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제17조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 제17조(등록조건) 지방청장은 화물사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1. 여객(12인 이하를 말한다),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의 공제 또는 시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화학류를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은 선박 보험가입을 제외한다.
 - 2.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피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유류수송 선에 대한 등록에 한한다)
 - 3. 예선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않아야 한다.(예부선에 대한 등록 에 한한다)
 - 4. 등록선박의 수송화물 또는 수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화물 또는 같은 목적의 수송에 한정한다.

4) 검토의견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제17조는 지방청장이 화물사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i)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또는 시중은행에 가입할 것, ii)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피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iii) 예선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예부선에 대한 등록에 한한다), iv) 등록선박의 수송화물 또는 수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화물 또는 같은 목적의 수송에 한정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제도의 완화수단으로서 등록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행정 청이 허가기준을 심사할 때 판단 또는 재량의 여지가 많은 데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그에 따라 등록기준은 허가제의 허가기 준보다 더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등록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등록은 조건(강학상의 부관)에 친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등록을 하면서 행정청이 일정한 조건을 붙 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운법」역시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 본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등록요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5) 개선방안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제17조에 따라 등록시 붙일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i)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또는 시중은행에 가입할 것, ii)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iii) 예선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예부선에 대한 등록에 한한다), iv) 등록

선박의 수송화물 또는 수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화물 또는 같은 목적의 수송에 한정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국토해양부 훈령 차원에서 등록의 조건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상위법령에서 선박 운행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등을 직접 부과하고 그 위반시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 (1)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대상
- 1) 행정규칙명
-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94호, 2009.8.24,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 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공사의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 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 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 시하여야 한다. 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삭제 <19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 · 환경설비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 공사업의 경우는 산업 · 환경설비의

건설산업기본법

는 국토해양부렁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 기술자보 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 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 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 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 의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 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 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 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 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 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 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 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 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 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 산한다. ⑥ (생 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 공시에 관한 지침

- 제 1 조(목적) 동 예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수시평가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공시를 할 수 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인 경우
 - 2.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규정에 따른 양도의 경우
 - 3. 합병의 경우
 -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경우
 - 5.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 6.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

4) 검토의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는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새로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제2조는「건설산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결정된 경우를 시공능력 수시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규의 상위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은 시 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 사항 및 공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은 건설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같은 법 제18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같은 상속인, 건설업 양도의 경우로서 i)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ii)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iii)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되,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을 등록한 경우, 파산자로서 복권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를 수시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수시평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5) 개선방안

먼저 i)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ii)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iii)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 수시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도입취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 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려는 것인데(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 참조), 비록 시공능력 평가가 해당 건설업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발주자 의 건설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해당 건설업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리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건설업 자가 건설시장에의 진입을 위해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경 우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 경우 현행「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건설업을 등 록한 경우,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 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에 시공능력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뒤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 시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시공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

한 지침」은 이를 명확한 근거 없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역시 상위법령의 규정 방식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건설 관련 공제조합 공제자산 운용 금지 및 제한 등
- 1) 행정규칙명
-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29호, 2009.
 8. 24 일부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제65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 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제33조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 제33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 1. 금융기관에의 예탁
- 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 3. 국채 · 지방채 및 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
- 5. 대출
- 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 처분·임대·이용 등
- 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 ③ 제2항 각 호의 운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 1. 제2항제1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 이상
- 2. 제2항제2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
- 3. 제2항제3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내. 다만,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 4. 제2항제5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 5. 제2항제6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

4) 검토의견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조 제1호),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제금 지급 능력을 확보를 위한 자산 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자산 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은 공제제도의 본질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제33조 제1항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의 유형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제자산의 운용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공제자산 운용에 있어서 각 방법별 운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5조 제3항에서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감독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지, 공제자산 운용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제33조는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고시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으로 공제자산의 운용 제한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참고로「보험업법」제105조 이하에서는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정하고 있다.

5) 개선방안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제33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공제제도의 본질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므로「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자산 운용 제한의 대강을 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건설 관련 공제조합 공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등
- 1) 행정규칙명
-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29호, 2009.
 8.24 일부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

건설산업기본법

-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제56조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 제 1 조(목적)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56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 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 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검토의견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제56조 제4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하여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제사업의 정지와 같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근거는 법률 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국토해양 부고시에서 제재규정을 창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부실조합이 나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의 근거를 두고 있고(제4조), 부실조합에 대한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제6조).

참고 입법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4조(적기시정조치) ①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참고 입법례

- 1. 조합에 대한 주의 · 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 경고 · 견책 또는 감봉
-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 조직의 축소
-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 6. 합병
-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예금 · 대출 등 신용 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같은 항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41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참고 입법례

-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기 3일 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5) 개선방안

공제조합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 근거와 이를 위반 한 경우 해당 조합의 공제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그 근거를 법 률에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4) 혁신도시 조성토지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
- 1) 행정규칙명
-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644호, 2010.11.22, 일 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 사업시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	④ (생 략)
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 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 · 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 · 의료시설 용지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특 정시설용지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제16조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제16조(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사업시행자가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토의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i) 학교시설용지 · 의료시설용지 등 국토해양부장고나이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와 ii)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훈령인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제16조는 이 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 공급대상자의 자격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 대상 토지를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 것도 상위법령의 위임 내용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개선방안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제16조에서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5항의 위임 내용 및 취지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i) 특정시설용지의 종류와 ii) 그 밖에 공급대상자의자격 제한이 필요한 토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국토해양부 훈령에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정시설용지의 종류와 토지의 종류를 명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개정하여 대통령령에서 직접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용지 및 토지의 종류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승인의 대상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법적 안정성 확보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5)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 등
- 1) 행정규칙명
-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9호, 2010.6.24 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궤도운송법」제19조 제2항

궤도운송법

-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 사를 받아야 한다.
 -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2. 임시검사: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실시하는 검사
 - ② <u>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u>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 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궤도운송법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제3조 제4항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 제 3 조(안전검사) ①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2의 안전검사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책임자 및 1인 이상의 검사원으로 기술인력을 구성(재검사 및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한 궤도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별표3에서 별표7 까지의 검사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별표8에서 별표11 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가 규칙,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궤도시설의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검토의견

「궤도운송법」제19조 제1항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해당 궤도시설에 관한 안전 검사를 받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 장 등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9호, 2010.6.24 개정)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여기서 「궤도운송사업법」이 국토해양부장관에 위임한 것은 안전검 사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제3조 제4항은 궤 도시설 안전검사기준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에 관한 사항과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운행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권 법률의 위임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이미 「궤도 운송사업법, 제23조에서 시설개선명령 및 해당 시설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시설개선 명령의 일환으로 재검사에 관한 사항 및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 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개선방안

수권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제3조 제 4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 1) 행정규칙명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0호, 2009.
 8.13, 일부개정)

- 2) 수권 법령 및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u>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u>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 5 조(입찰의 방법)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수 있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제1항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수 있는 방법으로 ii) 경쟁입찰의 방법, 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의 2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미응찰 등의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서조항의 수의계약방법은 수권조항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제1항의위임범위를 일탈한 문제점이 있다.

5) 개선방안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계속하여 유찰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수의계약을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을 개정하여 "수의계약"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상의 수의계약의 수권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독촉 및 강제징수
- 1) 행정규칙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009-113 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8조 및 제4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 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 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 · 관리 · 운용에 관한 업무
 -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제1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 제11조(분담금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분담금관리자는 분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회사등에게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 ② 분담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기한내에 이를 내지 않으면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③ 분담금관리자는 보험회사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을 3월이상 내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분담 금관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경리운용 및 교부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 위탁의 근거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8조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도록 규정하고, 분담금이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담금의 납부독촉 및 강제징수 권한은 같은 법 제45조의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관련 단체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같은 법 제38조와 제45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분담금의 독촉과 강제징수에 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에 따른 분담금의 독촉 업무와 분담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분담금관리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5) 개선방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8)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 1) 행정규칙명
-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7호, 2009. 6.30,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철도사업법」제42조 및 제44조, 같은 시행령 제14조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점용허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제18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생 략)	제14조(점용료)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의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생 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제8조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 제 8 조(점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점용허가 받은 자가 국가에 귀속하는 별동의 건물부지 및 국가에 제공한 건물부지 또는 시설부지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 ② 제1항의 건물 및 시설을 임시로 설치한 경우와 공사기간의 점용부지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면제한다.
 -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검토의견

「철도사업법」제42조 제1항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154)을 제정·고시하고 있는데, 이 고시 제8조는 i) 국가에 귀속하는 별동의건물부지 및 국가에 제공한 건물부지 또는 시설부지, ii) 'i)'의 건물및 시설을 임시로 설치한 경우와 공사기간의 점용부지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면제를, iii)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위임범위는 '점용료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것으로, 점용료의 면제나 감면에 관한 부분까지 위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제8조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5) 개선방안

점용료를 감면해 줄 경우 그 상대방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감면의 기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용료의 징수 규정과 함께 그징수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근거도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제8조에 규정된 점용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¹⁵⁴⁾ 이 고시의 명칭은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인데, 제1조에서 철도사업법시행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역시 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제9조에서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고시의 명칭을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등'으로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입법례

- 【도로법】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4.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기준
 - 1) 행정규칙명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956호, 2010.12.20 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② (생 략)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의 명시) ①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 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 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
여야 한다.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 보증서 발급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ㅇ 적용요율

공사규모		요 율
50억원] 미만	0.070%
50억원~100억원 미만		0.069%
100억원~300억원 미만		0.064%
300억원 이상(최저가낙찰	건축	0.058%
대상공사) 토목(산업설비 포함)		0.058%
턴키 • 대안공사		0.073%

-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4) 검토의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 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56호, 2010.12.20 개정)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할 때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재위임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그대로 다시 위임할 수 없다'는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155)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 및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사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¹⁵⁵⁾ 헌재결 1996.2.29, 94헌마213.

유사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①(생략)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행정규칙: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6호, 2009. 8.24 개정)

5) 개선방안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다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려면 일단 대통령령에서 그에 관한 대강을 정하고, 그 전문적·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를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기 타

- (1)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
- 1) 행정규칙명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6호, 2009. 8.25, 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 1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 9 조(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 영 제9조제1항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4호에서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란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검토의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156) 제9조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4호에서 말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는 건설기술자를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를 규정하면서,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기술사)를 명시하고 있고, 고급

¹⁵⁶⁾ 국토해양부고시「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은 2008. 2. 29「정부조직법」 전면개정에 따라 부처 장관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과거의 장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추후 고시 개정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자 및 특급기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및 절차 기준」에서 굳이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로 중복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5) 개선방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제9조는 불필 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2)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된 경우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투자진홍지구의 지정 등) ①~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한다.

2) 검토의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5조 제1항은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시·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이들에 관한 규정은 제정된 바 없다. 그런데 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그 법적 성격에 비추어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따라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자를 달리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제34조 제4항의 '발전위원회'를 시·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규정하면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1) 행정규칙명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24호, 2011.4.4, 일부개정, 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 령 제33조 제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 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7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 구(이하"취락지구"라한 다)로 지정할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 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 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 계설정기준 등 취락지 구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정비) ① 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취락 지구(이하 "취락지구" 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을 구성하는 주 택의 수가 10호 이상 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 터당 주택의 수가 10 호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 설 정은 다음 각 목을 고 려하여 지정할 것 가. 도시관리계획의 경 계선, 다른 법령에	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 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 기준 등) ①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2. 주택을 용도변경한근 원생활시설은 이를주택으로 산정할 수있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연면적·건폐율 및 용 적률에 관하여는 제27 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따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의한지수, 도로 경계선, 도로 경계선, 도로 가 이 경계선 가 는 이 이 생물이 가 는 이 이 용하여 다 가 는 이 이 사 보 한 다 지 이 이 가 는 로 한 지 이 이 가 는 로 한 지 이 이 가 는 로 한 지 이 이 가 는 로 한 지 이 이 가 는 로 한 지 이 이 가 는 로 한 지 이 이 가 는 로 한 지 이 이 가 는 로 한 지 이 이 가 는 로 한 지 이 이 가 는 다 이 이 가 는 다 이 이 가 는 다 이 이 가 는 다 이 이 가 는 다 이 이 가 는 다 이 이 가 는 다 이 이 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은 별표 7의 산정기준 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 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의 지역은 제외 할 것 사. 취락지구의 경계 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 하여지지 아니하도 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주택의 수 산정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 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 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 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취락지구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1.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을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 아목을 제외한다) 로 용도변경 하는 경 우. 다만, 휴게음식점 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 자 또는 지정 연면적 은 300제곱 마터 인 접한 토지를 이어야 하며 인 접한 토지를 이어야 하여 모이제곱 마터 이내의 주차장을 다른 우에는 주차장 지의 음식점 변경하는 지를 환원할 수 의 기준에는 지를 환원할 수 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다음 건축하는 건축하는 건페율은 100분의 1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용적률은 100퍼센 트 이하로 건축하 는 경우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 는 3층 이하로 건 축하는 경우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지침」 4-5-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변경등에 관한 지침

- 4-5-1.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건 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 (1)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을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동호 아목을 제외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표 2-5).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m2 이하 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m2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 (2) 영 제33조 별표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가)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나) 용적률은 10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4) 검토의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4-5-1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연면적・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사항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0년 6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종래 허용되던 단독주택뿐 아니라, 슈퍼마켓, 이용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고, 취락지구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완화하였다(제3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33조 제2호 및 별표 2 제6호 참조).

이처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연면적・건폐율 및 용적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이 잘못 집행될 우려가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대비표>

종전 규정	개정규정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
도·높이 등에 관한 특례) <u>법 제28조</u>	도·높이 등에 관한 특례) <u>법 제28조</u>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	제3항에 따른
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	

종전 규정	개정규정
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u>의</u>	
<u>한다.</u>	<u> 따른다.</u>
1.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 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 린생활시설을 말하며, 동호 아목을 제외한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 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가.·나.(생 략)	가.ㆍ나. (종전 규정과 같음)
2. <u>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u> 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2. <u>별표 2 제6호에 따른 주택, 근린생</u> <u>활시설</u>
가. 건폐율은 <u>100분의 20</u> 이하로 건 축하는 경우	가 <u>100분의 40</u>
나. • 다. (생 략)	나. • 다. (종전 규정과 같음)

5) 개선방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4-5-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한 것이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침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고,「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지침」에서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경우,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그 시행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지침에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지침」 4-5-1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불명확한 행정규칙(1)
- 1) 행정규칙명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6호, 2009.8.25, 일부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비고

-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u>이에 상당하는 분야</u>의 학사학위 이 상 소지자
 -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u>이에 상당하는 분야</u>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제6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 6 조(부동산 관련 분야) 영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를 말한다.

4) 검토의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1호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i)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ii)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열거하고 있는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6조 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주 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로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이 조는 '이에 상 당하는 분야'의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과연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가 어 떤 학과인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오히려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은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바,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우리 행정법학계 다수의 견해나 대법원 및 「행정규 제기본법」이 고시 등 행정규칙 차원에서의 규율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행정규칙 차원에서 이를 규율한다고 하면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명확하게 열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5) 불명확한 행정규칙(2)
- 1) 행정규칙명
-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72, 2019.
 7.14, 일부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철도안전법」제27조 제1항 단서

철도안전법

제27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 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u>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인시</u> <u>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에</u> 대하여는 품질인증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제11조 제1항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 제11조(품질인증절차의 면제) 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가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품질인증절차의 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절차의 면제여부를 검토한 결과 품질인증절차의 면제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품질인증절차 면제의 불인정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4) 검토의견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품질인증기 관은 인증신청자가「철도안전법」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인증절차의 면제를 신청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품질인증절차의 면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내지 기준이필요할 것인데, 여기서는 단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품질인증절차를 면제받는 것은 신청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바, 어떠한 요건 내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철도안전법」제27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면제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바, 이 지침 제11조 제1항에서는 '타당성'이라는 용어 대신 "「철도안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인증절차의 면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현행화를 요하는 행정규칙

- 1) 행정규칙명
-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2004.11.10, 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0조 제2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또한 같다.
 - ②(생략)
 - ③ 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 · 시설물관리대 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 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 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감리 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 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 제20조(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절차는 별표 6과 같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
 - 4) 검토의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6항은 시설물의 발주자, 시공자, 관리주체 등이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도서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2004.11.10)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침은 2004년 11월 10일자로 제정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모법의 개정사항, 정부조직 개편사항(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과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그 번호도 없다.157) 위 지침은 시설물의 관리주체, 시공자

¹⁵⁷⁾ 당연히 이 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및 발주자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참고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의 선진화 및 수범자의 불편경 감 등의 차원에서 모법의 개정사항, 정부조직 개편사항,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산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7호, 2006. 12.15, 제정) 역시 정부조직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장관명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해당 고시 제정 이후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의 정비 여부 등을 검토할필요가 있을 것이다.158)

- (7) 제명과 규정내용이 상이한 행정규칙
- 1) 행정규칙명
-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159) (국토해양부훈령 제2010-29호, 2010.5.28, 일부개정)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5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 도서지를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158)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역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¹⁵⁹⁾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탑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u>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u>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

수로도서지 판매가격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5 조(판매관리) ① 대행업자는 접적해역 및 군항에 해당하는 수로도서지 판매 시에는 매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행업자는 제1항의 매수자에 대한 기록관리 사항을 매월초 협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③ 협회는 매월 수로도서지 판매실적 및 제1항의 매수자에 대한 기록관리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수로도서지의 교환) ① 대행업자는 폐간·개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수로도서지를 교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종류의 신간· 개정판 수로도서지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제 7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발령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4) 검토의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서는 수로도 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로도서지 판매 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은 비위임사항인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고, 판매가격・대행수수료에 관한 사 항은 전혀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국토해양부예규인 「수로도서지판매가격결정내규」(국토해양부내 규 제55호, 2009.8.19, 일부개정)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고, 이 예규에서는 수로도서지판매가격심의위원회(제2조), 판매가격의 심의 및 협의(제3조),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제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예규의 재검토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는바(제5조), 현재도 수로도서지판매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 예규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한다면, 이 예규의 제1조 목적에서 위임의 근거로 종전의 '수로업무법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6호'를 들 것이 아니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으로 수정하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의 제명은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무 관리방안」 정도로 변경하고, 「수로 도서지판매가격결정내규」의 위임근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은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없이 곧바로 제5조로 조번호를 이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순서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 (8) 행정규칙 일몰제 위반
- 1) 행정규칙명
-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2004.11.10,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0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자 제출하여야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

- 제20조(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절차는 별표 6과 같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 하여야 한다. ④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 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관련 서류의 중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 검토의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6항은 시설물의 발주자, 시공자, 관리주체 등이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2004.11.10,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2009.4.23, 제정, 2009.5.24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 내에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훈령・예규등에 해당하므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보건 · 식품분야

-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 (1)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160)
- 1) 행정규칙명
-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09-158호, 2009.8.25, 일부개정·시행)

¹⁶⁰⁾ 이 사례는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의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 8 조(보건신기술의 인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 제 9 조(보건신기술 인증 증) ① 보건복지부장관 표시의 사용) ① 법 제8 표시의 사용) ① 영 제 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 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 19조제1항에 따른 보건 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 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별표와 같다.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 ② 보건신기술 인증의 품의 포장 · 용기 및 홍 표시는 영 제18조제6항 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보건신기술 인증을 보물 등에 보건복지부 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 령으로 정하는 보건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 연장받은 기간에 생산 용할 수 있다.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한 제품 등에만 사용할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신기술 인증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③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 2항에 따라 신청된 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술을 심사 · 평가하여 보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신기술로 인증하면 이 매년 보건신기술 인증 를 고시하고, 보건신기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한다. 술임을 인증하는 인증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전자문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보건신기술 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 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한다)하여야 한다.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 워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생략)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6조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제16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①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은 자가 제14조를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HT마크를 사용하는 등 HT마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1차 적발: 시정권고
 - 2. 2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1년 간 해당기술에 대한 HT마크 사용금지
 - 3. 3차 적발 또는 경고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HT마크 사용정지
 - 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자(제품포함)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시정결과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 채취를 할 수 있다.
- 제14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①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HT마 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보건신기술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 된 제품
 - 2. 보건신기술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제15조에 따라 추후 보건신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받은 제품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② H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H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진흥원장은 이를 익년도 2월까지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제1항은 보건신기술인증제도의 근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보건신기술 인증심사·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보건신기술의 인 증 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 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보건신기술인증표시제의 근거를 정하고 있고, 이 때 그 수권 근거를 같은 법 제8조 제3항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보건신기술 심사·평가, 그 인증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엄격하게 이해하면 그 수권근거 유무가 문제될 수 있나, 인증의 개념에 그 사용, 즉 표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본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게다가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임의 인증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규율을 법령으로 엄격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고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 리에 관한 규정」제16조에서는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HT마크"라 한다)의 사용방법 위반이나 인증기간 종료 후 사용, HT마크 부정사용 등의 경우에 대하여 한국보건진흥원장이 시정권고, 사용금지, 사용정지 등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금지, 사용정지등 제재적 행정처분은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표시제도의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개선방안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6조를 삭제하고,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화장품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 행정규칙명
-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10-9호, 2010.4.2,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화장품법」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	제13조(용기 등의 기재·표시사항) ①
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명
각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	칭,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 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에는 명칭·상호 및 가격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품의 명칭
-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3.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 분(인체에 무해한 소량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 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 용기한)
- 6. 가격
- 7.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 품"이라는 문자
- 8. 사용상의 주의사항
- 9.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6호의 가격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재·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수 있다. 다만, 견본이나 비매품의 표 시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용기 또는 포장
- ②~④(생략)
-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다.
- 1.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분서(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기 재·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2.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제10조

화장품 ·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 5 조(가격표시)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화장품 ·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 제 6 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의 경우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원』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검토의견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화장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가격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에 따라가격의 기재·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는 가격의 기재·표시방법을 부렁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부렁에서는 이를구체화하기 보다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다시 행정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어 포괄적 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화장품법」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 항 제2호를 근거로 제정된 보건복지가족부고시「화장품·의약외품 가 격표시제 실시 요령」제10조에서는 같은 요령 제5조(가격표시)의 규정 및 제6조(표시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부과근거, 불복절차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만, 개정「화장품법」에서는 제11조를신설하여, 현행「화장품법」 제10조 제6항 및 제7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2호에서 제11호를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실시 요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문제점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도있으나,「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정비시에 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제 거래가격 표시는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61)

5) 개선방안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제10조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1) 행정규칙명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2009-177호, 2009.12.22, 개정·시행)

¹⁶¹⁾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8.4, 전부개정, 2012.2.15, 시행)에서도 실제 거래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및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수있다.
 - ③ (생 략)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제 4 조(인정신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중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각호 생략)
- 제10조(인정사항의 변경) ① 제8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새로이 기준 및 규격 인정신청을 하여야하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과 기준 및 규격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신청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출자료의 범위)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영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 생략)
- 제13조(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제11조에 따른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과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 생략)
- 제14조(평가원칙)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위한 평가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 3. 총 식이에서 섭취하게 되는 기능성 원료의 양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일 것
 - 4. 건강기능식품의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및 당류의 함량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도일 것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적합할 것

4) 검토의견

「건강기능식품법」제14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권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 항에 따른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 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인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 전청 고시 제2009-177호, 2009.12.22 개정)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하되, 건강기능식품의 다양성·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다 망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바, 영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이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생각건대, 행정실무에서 행정규칙의 실제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지라도, 모법률에서 곧바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과연 법규범의위계에 따른 조화로운 규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 → 법규명령 → 행정규칙'으로 층을달리한 규범체계를 견지하는 것은 대상을 효과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다. 법률에서 바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자칫 법률에서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162)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규율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우려가 있다.

물론 대법원 판례는 고시의 형태로 정하여진 기준이 상위법령과 결합하거나 상위법령을 보충할 경우에는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그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163)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역시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4조 제2항).

¹⁶²⁾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I, 법문사, 2008, 430쪽 참조.

¹⁶³⁾ 대판 1999. 11. 26, 97누13474; 대판 1987. 9. 29, 86누484 등 참조. 우리 헌법재 판소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재결 2008. 11. 27, 2005헌마161·189 (병합); 헌재결 1998. 4. 30, 97헌마141.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전문적·기술적이지 아니한 사항도 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곧바로 위임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는바, 전문적·기술적이지 아니한 사항을 규율할 때에도 법률이 헌법에 정하여진 법규명령으로 위임하고, 다시 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는 단계적 형식164)을 갖추기보다는 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곧바로 위임하는 경향의 남발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최근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소판부처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을 검색할 수 있어 행정규칙의 내용을 찾아보려는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행정규칙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탑재되어 있지만, 소판부처 홈페이지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양 홈페이지에 제·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되지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며, 같은 이름의 행정규칙이 중복하여 탑재되어 있는 경우나, 수권법령의 제·개정 사항이나 정부조직의 개편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행정규칙도 다수 존재하는 등 행정규칙과 관련한문제가 존재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불편・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의 경우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정(변경)신청방법, 평가원칙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입법론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하거나 대통

¹⁶⁴⁾ 물론 이러한 단계적 위임방식을 갖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즉 법률에서 법규명령으로 위임하든, 법률에서 곧바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든 입법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령령 또는 부령 등 법규명령의 법형식에 위임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나 기술적인 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지정 등
- 1) 행정규칙명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29호, 2011.3.14,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 여외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 비·상병수당 기타의 급 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 여는 임신·출산 진료 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 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 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 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 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 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 되, 그 지급액은 40만원	제16조(임신·출산 진료 비의 신청·지급 및 이 용권 발급 등) ①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 비(이하"임신·출산 진료 비(이하"임신·출산 진료 보) 그려면 영 제25조제3 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 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 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실제 부담한 금액으로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신청하여야한다.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제3항에 따라임천한 당시에 법제 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심청할당시에 법제 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기상에 따른 부가급여를실시하지아니한다. ⑤ 임신한 가입자 또는 기상에 따른 부가급여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기사에 따른 부가급하여 의 전한 기대(전자적 또는 기사에게 이용권[그명 정도는 이 기재(전자적 또는 지적 방법에 따른 기적 방법에 따라 기적 방법에 따라지정된 요양기에 따라지정된 요양기에 따라지정된 요양기에 따라지정된	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 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 용권(이하 "이용권"이 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 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 기관에서 임신과 출산 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 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 다)를 받은 경우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급받 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 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 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 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 액에 해당하는 임신·출 산진료비를 해당 요양기 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 항 외에 임신·출산 진 료비의 신청과 지급,이 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이용권의 발급과 사용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이용권 사용요양기관) ① 공단은 임신과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제1항에 따라 지정된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한다.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① 영 제2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그 밖에 이용권 사용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 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제5조(제3조, 제4조)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제 2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3. (생략)
 - 4. <u>"이용권"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u>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 제 3 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한다)에 통보하고,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이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 ③ 금융기관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합 통보가 있는 임신부에게 이용권을 발급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서식에 의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 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지원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 ①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1 서식 중 요양기관의 의사가 확인하는 임신확인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 제 4 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40만원이며, 1일 6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이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 ③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임신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일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요양기관은 이용권의 1일 사용 가능한 6만원을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 비용을 임신부에게 청구한다.
 - ④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 제 5 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
 -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가. 초음파 영상
 -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 검사)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③ 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공단은 지정요양기관 중 제2항의 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정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6 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 고한 비급여 검사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 2호의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임신·출산 진료비의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서는 공단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165)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16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이용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하는데,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제2조 제4호에서는 '이용권'을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를 종합하여 이용권을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에서는 "제1항 및 제2항166)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그밖에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절차, 지정요건, 변경신청 사항 및 절차, 탈퇴,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지정은 '대통령령→부령 →행정규칙'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규율되고 있으나, 대통령령 및 부령 단계에서는 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정하지 아니한 채, 결국 이를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이나, 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정신청에 중요한 사항이라고볼 수 있는바, 이를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변경신청 사항 및 절차, 탈퇴,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수권 근거 없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 역시 법률에 수권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 에 일반적으로 지정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탈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사적 계약적 성격이 강한 지정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취 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¹⁶⁶⁾ 제2항에서는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제3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이자, 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제3조), 이용권의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역시 법령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 지정요건, 탈퇴,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 차원 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 등
- 1) 행정규칙명
-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09-158호, 2009.8.25, 일부개정·시행)
 - 2) 수권 법령 및 조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 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신기술 인증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 2.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보건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8 조(보건신기술의 인증)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 할 수 있다.

②~⑥ (생략)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보건 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하려는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 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 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 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 출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 고 인정되면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7조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및 신청자격 제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 제 21조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 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게 할 수 있다.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 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심사위원회 에 회부하여 의결한다. 진흥원장은 심사결과를 제9조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보건신기술인증서 인증번호
- 2. 기술의 명칭
- 3. 기술보유자
- 4. 인증기간
- ④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 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보건신기술 신청자격의 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9조 제1항은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인증취소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밖에 보건신기술인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7조를 통하여 인증 취소 방법 및 절차, 취소에 따른 조치 등을 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 등을 명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한 뒤, 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 소정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건신기

술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검토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제7항), 이는 소명자료의 이유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증 취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의 평가의견서를 받아 종합심사위원회가 한 인증 취소 여부의 의결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그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증취소의 후속조치로 보건산업진흥원장은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회수하고, 심사위원회167)는 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보건신기술 신청자격의 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증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바,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심사위원회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사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설령 심사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게 제재조치를 발한다고 한 들, 이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가될 것이다. 결국 취소권자와 제재조치 발령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인증 취소 결정을 위해서 심사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도모를 위해서는 인증 취소 결정을 위해서 그 심사가 행해진다는 것이 법령상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167)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7조는 이를 '심사위원회'라고만 표시하고 있으나, 규정의 전체적인 맥락상 종합심사위원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보건신기술인증 취소 여부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 이의신청 평가결과 심사,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임무 등을 수행하는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상 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조직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 전문분과위원회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종합심사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가 수행하는임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근거 규정을 법령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5) 개선방안

인증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취할 수 있는 자 역시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증 취 소의 절차,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등을 명확하게 법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산후조리업자 교육비

- 1) 행정규칙명
-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보건복지가족부고 시 제2009-249호, 2009.12.30 제정, 2010.1.1 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모자보건법」제15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 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 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 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 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 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수있다.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 염 예방, 감염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 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 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 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제4조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 제 4 조(교육비)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육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산후 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 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 ⑥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검토의견

「모자보건법」제15조의6 제1항은 산후조리업자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은 다시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침 제4조에서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피교육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비 산정시 고려사항, 교육비 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교육에 당연히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교육자에게 법

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바,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식품위생법」제41조 제6항은 식품위생 교육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참고 입법례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 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⑤ (생략)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5) 개선방안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교육비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사후관리
- 1) 행정규칙명
-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90호, 2009.12.22, 타법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9조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5 조(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등)

- ①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화장품제조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 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제 품의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하여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 사하여야 한다.
- ③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품의 생 산실적 또는 수입실적등을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조(규격기준 검사) ① 법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 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규 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조업자는 용수를 포함한 원료와 반제품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
 -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는 품목별 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품질관 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제조(수입)일부터3년간 보존할 것
 - 3. 제1호 및 제2호의 품질검사 후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보관품을 보존할 것② 수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간 상호인증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등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경우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기록서에 갈음한다.
- 제 9 조(**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① 수입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여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사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제7조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 제 4 조(현지실사 및 평가방법)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른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실사팀을 구성하여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는 청장이 고시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③ 청장은 현지실사 일자, 평가자 명단 등을 수입자에게 현지실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제 7 조(사후관리) ① 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화장품법」제5조 제2항은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간 상호인증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등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은 수입자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하도록의무화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지실사에 필요한 신청절차ㆍ제출절차및 평가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고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후관리권을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의 범위 내에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르면, 사후관리 결과 시정지시 또는 평가인정 취소도 가능하게 되는바, 수범자의 법적 안 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의 결과 시정 지시 또는 평가인정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고시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제7조를 삭제하고, 사후관리, 시정지시 또는 평가인정 취소의 요건 등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 규칙 사례
-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자체교육
- 1) 행정규칙명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95호, 2009. 8.24,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7조 제3항, 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7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한 건	업소의 영업자 등의 교육훈련 등) ①
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
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영
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	업자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 시할 수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 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 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우수건강기 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 소의 지정절차, 영업자 및 그 종업원 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건강 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때
-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 4. 그 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 준적용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 지 아니한 때
- 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 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우수건강 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 하사항
- 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 리기준에 관한 사항
- 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교육훈련대상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적용을 담당하는 품질관리인으로 하며, 동품질관리인은 영업에 종사하는 다른 종업원에게 월 1회 1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 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기 전에 실시하거나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교체로 인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이하 "신규교육훈련"이라 한다)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이하 "보수교육훈련"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되, 그교육시간과 교육횟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신규교육훈련 : 영업자는 1회 8시간이내, 품질관리인은 1회 16시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ㆍ광고

⑥ (생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훈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품질관리인은 2년마다 8시간 이내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④ 삭제 <2011.4.1>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제27조 및 제28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 제27조(교육·훈련 등) 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육전문기관은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문기관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교육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수료증을 교부하고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교육훈련실시결과는 교육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연간 교육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자체 교육훈련) GMP적용업소는 종업원이 각자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제조관리, 품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교 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이하 "적용업소"라 한다)의 지정절차, 영업자 및 그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영업자 및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업소 지정 취소 또는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교육훈련의무 위반을 제재적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려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두기에 앞서 적용업소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 차원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적용업소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무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수권근거의 인용역시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것으로보이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교육훈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제27조에서는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외에 같은 기준 제28조에서는 (GMP¹⁶⁸))적용업소는 종업원이 각자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조관리, 품질관리 및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법

¹⁶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서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또는 "GMP"로 칭하고 있다.

시행규칙」제27조 제2항에서는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실시의무 외에 별도의 교육훈련실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령의 규정을 다시 한번 명시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일 전자라면 이는 상위법령의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를 적용업소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며, 후자라면 이를 굳이 고시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제조기준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 및/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서로 내용을 달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가급적 별개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행정규칙의 제명에서 제조기준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역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제28조를 삭제하고, 만일 적용업소가 자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면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금 제한
- 1) 행정규칙명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24호, 2009.12.9,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혈액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 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수 있다. 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2.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질병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등) ① 혈액원이 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4. 장제비5. 일실소득6. 위자료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 3 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자의 질병 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위자료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에이즈의 경우, 5천만원
- 2. B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천 5백만 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천만원
- 3. C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2천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천만원
- 4. 기타 질병의 경우는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제 4 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①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의 결정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혈액원은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진료비 등의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 5 조(보상금의 재산정) ① 수혈부작용자는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진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혈액원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7 조(보상금의 지급제한) 채혈부작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채혈부작용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2. 채혈부작용자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 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 8 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간부직원 또는 혈액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혈액원장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9 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 ① 보상금은 제8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혈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으로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함으로써 신속한 위로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 2. 사고의 종류, 피해의 정도 및 보상금 지급액이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된 선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 ③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혈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혈액원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혈액관리법」제10조의2 제1항은 혈액원은 i)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ii)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은 혈액원이 지급할 수 있는보상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여기서 일단「혈액관리법」은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은 보상금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고시「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결정 및 지급절차, 재산정,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제한 등은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그 대강은 법률로 정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제3조 제2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질병 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 한 적정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 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 외에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의 경우 혈액원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혈액원은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따라서현행법상 사인도 혈액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제8조의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되며, 위원은소속 간부직원 또는 혈액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상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의 구

성에서 공공성·객관성·독립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혈 부작용에 대한 보상의 경우도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 거나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공공성·객관성·독립성을 담보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개선방안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결정 및 지급절차, 재산정,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제한 등의 대강을 법률에서 정한 뒤,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3조 제2항의 준용규정은 삭제하고, 다른 법률의 준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채혈부작용 보상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독립성을 보완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 (1)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 1) 행정규칙명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7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9조 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식품 영업자는 <u>보건복지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수입하는 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 2.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간판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
- ④ 제17조 및 제18조는 건강친화기업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⑤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식품 영업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 건강 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법 제20 조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건강친화 기업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어린이 건강친 화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 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 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은 해 당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 정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 건 강친화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강친화 기업 지정취소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를 준용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제3조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u> <u>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u>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 영업자의 모범적인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지정대상 영업자)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 「축 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유가공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영위 하는 자
 -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3. 어린이 단체급식 영업자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하여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

제 3 조(지정 기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4) 검토의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9조 제2항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7호, 2009.8.24, 일부개정,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이지, 지정기준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수권 법령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부령에서 지정기준을 정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정기준에 관한 법률적 수권근거가 있다고 볼 때, 부령에서 지정기준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아니하고 곧바 로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5) 개선방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9조에서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부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부렁에서 지정기준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한 뒤,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

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고시로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기 타

- (1) 제정을 필요로 하는 행정규칙(1): 위생관리등급의 판정항목 등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중위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시·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 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 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 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 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 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 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 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수 있다.
-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 3.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 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 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 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 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 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 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 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 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검토의견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생서비스(수준)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규칙 제20조는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당 위생서비스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중위생영업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은 해당 공중위생업체에게 통보될 뿐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고, 위생관리등급 표지를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도 있어 업체의 이미지,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위생관리등급의 판정항목, 등급결정 절차, 기타 평가에 필요한구체적인 사항은 명확하게 결정되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제정을 필요로 하는 행정규칙(2): 고가 의료장비 설치 · 운영 기준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호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 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제37조(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보 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 중 보건의 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 정하는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운영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설치·운영 기준에 맞게 설 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검토의견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의료법」제 36조 제4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의 시정명령 등이 발해질수 있다(같은 법 제63조 참조).

관련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고가 의료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 중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설치·운영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단준수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고가의료장비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는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고가 의료장비를 지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는 「의료법」의 위임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한 것으로 보이나, 부령에서는 이를 정하기보다는 대상 의료장비의범위와 그 설치·운영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정도의 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제36조 제4호는 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가 의료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화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07년 4월 28 일부터 시행 중인 이 규정의 집행을 위한 행정규칙이 여전히 마련되 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개선방안

고가 의료장비와 그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침익적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부 령에서 완결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실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의료법」제36조 제4호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3) 제정을 필요로 하는 행정규칙(3) : 의료기관에 두어야 할 의료인 등의 정원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 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 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 5와 같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어야 한다. 관한 사항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 에관한사항 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 운영 기준 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 하다. 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 병원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 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 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 록사(醫務記錄士)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 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 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 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

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 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

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제 36조 제5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의 시정명령등이 발해질 수 있다(같은 법 제63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표 5(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또는 치위생사)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두어야 할 필요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특히 의료기관에 두어야 할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종합병원에 두어야 할 의무기록사(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제36조 제5호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서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인 등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의료기관에는 적어도 법령에서 정하는 인원의 의료인 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의 무 부담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하고, 이 규정을 두는 취지 역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3) 개선방안

「의료법」제36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준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사 등의 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이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처럼 별표로 그 인원을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만일 의료기관에 의료기사 등을 두도록 의무화 할 필 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의료법」제36 조 제5호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4) 제정을 필요로 하는 행정규칙(4):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 훈련방법 및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훈련방법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정신보건법」제10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

정신보건법

- 제10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 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 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이하 생략)
-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항중 보건복지부렁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검토의견

「정신보건법」제10조 제2항은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현재 이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같은 법 제10조 제2 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사회 복귀시설의 장은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또는 정신질환자의 사 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그 의무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훈련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여 고 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련방법을 정할 실익이 없거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 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위 조문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15조 제3항의 위반의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 명령 또 는 사업 정지 명령이 발해질 수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훈 련방법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무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귀시 설의 장을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이 규정을 두는 취지 역 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3) 개선방안

훈련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보건복지 부장관이 훈련방법을 정할 실익이 없거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조문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15조 제3항의 경우는 그 위반 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발해질 수 있으므로, 그 구성요건을 명 확하게 정비하거나 행정실제에서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 을 발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조항 역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5) 불명확한 행정규칙
- 1) 행정규칙명
-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2011-18호, 2011.4.21,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화장품법」제13조 제7호

화장품법

- 제13조(제조·판매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것
 -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기준이 정하여진 화장품으로서 그 규격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것
 - 3. 전부 또는 일부가 변질되거나 변패한 물질로 된 것
 - 4.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 5.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되었거나 배합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원료를 함유한 것
 - 7.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타르색소외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
 - 8.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 및 그 추출물이 함유된 것
 - 9.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 10.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그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것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제3조 단서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 3 조(화장품 타르색소의 종류) 화장품의 타르색소의 종류, 사용부위 및 배합한도 는 별표 1과 같으며, 레이크는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u>다만, 특별한 경우에</u> 한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화장품법」제13조 제7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타르색소 외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제3조 본문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의 종류를 별표 1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단서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사용이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사용가능한 타르색소의 종류를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규율사항이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타르색소의 위험이 과학적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타르색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제3조 단서를 삭제 하거나, 가능하다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행정규칙 일몰제 위반(1)
- 1) 행정규칙명
- 「한약처방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1995.3.15,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약사법 시행규칙」제10조 후단

약사법 시행규칙

- 제10조(조제) 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하여야하며,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한약처방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한 한약처방 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 제 2 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적용한다.
- 제 3 조(정의)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 제 4 조(한약조제지침서의 구성) ① 한약조제지침서의 총칙은 별표1과 같다.
 - ②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하는 한약처방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 제 5 조(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의 구성) 한약조제지침서의 수정·보완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 회를 설치·운영한다.

부칙 <제1995-15호, 1995.3.15>

이 고시는 1995. 3.15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약사법 시행규칙」제10조 후단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 1995.3.15,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정, 2009.5.24 시행)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을 이 훈령 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하는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5) 개선방안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 (7) 행정규칙 일몰제 위반(2)
- 1) 행정규칙명
-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97-18호, 1997.3.31,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정신보건법」제25조 제3항 및 제4항

정신보건법

-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 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하 생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 기준」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1.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인정기준

- 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 : 의식의 혼탁과 지남력, 기억력, 충 동조절능력 상실등의 증상이 심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태
- 나.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다음에 열거한 망상이 심하여 그 망상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1) 자신을 누가 해치려 한다는 피해적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피해망상, 추적망상, 음독망상, 조정망상등)
 - 2) 자신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비관적 내용을 포함하는 망상이 심한 경우 (죄책망상, 빈곤망상, 허무망상, 자살사고등)
 - 3) 자신은 누구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과대망상))
 - 4)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각종 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극도의 정신혼란을 보이는 경우
- 다. 정신병으로 인한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다음에 열거한 내용 의 환각이 있어서 그 환각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1)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환각
 - 2) 환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환각
 - 3) 환자를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내용의 환각
- 라. 정신병으로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 성이 높은 상태
- 마.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바. 정신병의 증상으로 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2. 정신병의 범주

여기에서 정신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정신장애를 말한다.

가. 정신분열장애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 나. 기분장애중 조증상태 또는 우울상태
- 다. 술 또는 습관성 물질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 라.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 마. 기타 정신병적 상태

부칙 <제97-18호, 1997.3.31>

이 고시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정신보건법」제25조 제3항은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자신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97-18호, 1997.3.31,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그런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2009.4.23, 제정, 2009.5.24 시행)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을 이 훈령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하는바,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에 해당하

므로, 이를 폐지하고,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 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을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절 지식경제분야

-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 (1) 고압가스 안전관리 특례 등
- 1) 행정규칙명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7호, 2008.12.24, 전부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시설·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술기준 등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3-1-1조, 제3-3-2조 등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 제3-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44조의 유통 중인 용기 및 부속품의 수집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3-2조 (수집시기) 수집검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 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라 한다) 또는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제3-3-3조 (수집대상) 수집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 1.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 2. 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 3.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 4. 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 5.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 제3-3-4조 (수집방법) ① 수집검사의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한다. 다만,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
 - ② 수집하는 제품은 당해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로부터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3-3-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2회 연속 부적합 사항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수집검사 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3-5조 (검사기간)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6조 (검사기준)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규칙 별표 10, 별표 10의2를 따른다.

제3-3-7조 (결과조치)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기술표준원(KS제품에 한한다) 및 관련 업소에 통보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 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 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3-3-8조 (수집시료 보관) 수집한 시료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6개월 경과 후폐기처분 한다. (이하 생략)

4) 검토의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수권 근거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하여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 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따로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술기 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범자의 입장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나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설·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그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바, 법률상 수권 근거 없이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고시 제1조는 그 목적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상 수권 근거도 없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법률상 수권 근거의존재 여부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이 고시를 제정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이 많지도 않고,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볼수도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부령의 입법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 입법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지식경제부장 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개선방안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나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설·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그 대강을 정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뒤, 규 율 대상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해당하여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 요하면 이를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신기술 인증 신청 · 접수 제한 등
- 1) 행정규칙명
-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
 - 2) 관련법령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 6 조(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① 신기 술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 여 신기술인증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 시하고, 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 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

- 제 7 조(신기술의 인증대상) 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 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 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 程技術)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여야 한다.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청기술의 심사·평가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기술의 인 증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 8 조(신기술의 심사·평가) 지식경제 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기술을 심사·평가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 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 지의 여부
 - 2. 삭제
 -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 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 4.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 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 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 고 있는지의 여부
 - 5. 신기술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제 9 조(신기술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간
 -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로 인증하려는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 기술보유자, 인증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예정시간 등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예정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하며,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한다)에 공고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예정공고 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인증예정공 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인증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받은 자가 신기술인증기간의 연장을신청하는 때에는 신기술인증기간의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7년의 범위 안에서 신기술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제4조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 4 조(신기술의 인증신청·접수) ①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3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 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이하 "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NET) 인증신청·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 ②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제1항의 공고된 기간 내에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규칙 제2조제1항제6호의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조사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상기 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없는 신청기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협회장은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 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 표 1과 같다.
- ⑦ 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기술상용화개발 사업계획 서의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2와 같다.

4) 검토의견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제4조 제1항은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를 연간 3회로 제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도록 하며,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 공고에 관한 사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및 일간신문 등에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5) 개선방안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9조 제6항은 신기술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앞서 언급한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최소한 법령에 위임 근거를 두고 행정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3) 지원대상 무역 관련 시설 신청 등
- 1) 행정규칙명
-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호, 2011.1.3. 개정· 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조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4 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지 제 5 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생략) 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 갖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 치를 할 수 있다.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1. 무역전시장 : 실내 전시 연면적이 2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을 양성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수용 인원 이 500명 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 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③ (생 략)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대외무역관리규정」제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 제 6 조(무역 관련 시설의 지정) ① 영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무역 관련 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1부
 - 2.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또는 건축허가 서 사본 1부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및 부속토지의 면적 등 시설계획, 조직, 사업운영 기본방향 등 향후 2개년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5조제2항의 기준과 무역진흥 관련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무역 관련 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무역 관련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4) 검토의견

「대외무역관리법」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지원대상 무역 관련 시설 대상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원신청방법이나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고시 「대외무역관리 규정」제6조는 법령의 수권 없이 지원대상 무역 관련 시설 신청에 관 한 사항, 제출 서류 및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신청방법, 제출 서류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중요 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에 수권 근거를 두고 법령 차원에 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개선방안

「대외무역 관리규정」중 지정신청방법, 제출 서류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를 삭제하고, 그에 관한 근거를 「대외무역법」에 둔 뒤, 「대외무역법 시행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여 이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소프트웨어사업 영업양수도 신고 및 수수료
- 1) 행정규칙명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21, 타법개정, 2009.8.24, 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신고) ① 지식경제 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 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 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 금기술인력·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 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 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정하여 고시한다.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 웨어사업의 발주자, 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험·보증업무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 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 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 인서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 확인서를 활용하 여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 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여고시한다. ⑤ 소프트웨어사업의 발 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 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제9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제 9 조(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신고) ① <u>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u>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 내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 신고서의 수행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수수료)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 6 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4) 검토의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제1항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의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장관고시「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제9조에서는법률상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사업자 신고 내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 신고서의 수행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영업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수행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여 조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바, 그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에서는 신고업무수행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제12조에서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형식상으로는 신고 여부를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다수가 신고할 것으로 보이고, 신고한 경우 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강제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수수료의 징수는 법률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의3 제6조에서는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시 신청인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신고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단순하게 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차제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집행명령 차원에서 제1항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요령」 제6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를 i)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ii)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iii)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iv)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서식에 관하여 규정하고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서는 세부분야별로 신고를하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다만,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분야를 세분화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의 대강 은 정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포 괄위임 금지의 원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바람직할 것이고, 사업분야를 세분화하는 취지를 신고서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개선방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제9조를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 (1) 산업기술 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징수, 징수기간 등
- 1) 행정규칙명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 2009.1.1.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지식

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 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 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산업발전법」제27조에 따른 산 업기술 및 생산성향상 장려사업에 사 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5조 (기술료의 징수 · 관리 및 사용)

-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 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 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 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2 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 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8조부터 제11조 까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제 8 조(기술료 징수율)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율은 정부출연금 의 100분의 40을 징수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②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인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한 단계협약 체결시 단계별로 기술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9 조(기술료 징수기간)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기술료 감면) ① 전담기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 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2.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3.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 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주관기관의 장이 3차년도 기술료 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 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 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종료 과제 중 "우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기술료 정수기간 연장 및 면제) ① 주관기관의 장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는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용화가 지연되는 경우,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만을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악화로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조사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기술료 징수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및 별표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2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개 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이하 "통합 요령"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통합 요령」 제8조에서는 기술료의 징수율, 제9조에서는 기술료 징수기간, 제10조에서는 기술료 감면, 제11조에서는 기술료 징수기간 연장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데다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개선방안

「통합 요령」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를 법령에서 규정해야 하고, 해당 규정은 「통합 요령」에서 삭제하 여야 할 것이다.

(2)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1) 행정규칙명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6호, 2009.8.21,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 제1항 및 제5항,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 5 조(소프트웨어진흥 시설의 지정 등) ① 지 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 웨어산업의 진흥을 위 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 설(이하 "진흥시설"이 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진흥시 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 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 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이는 장우 당 해 조건은 공공의 이익 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제 3 조(소프트웨어진홍 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 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10(서울특별시의 경 우에는 20) 이상의 소 프트웨어사업자가 입 주할 것 2. 총입주 소프트웨어 사업자중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 2 조(소프트웨어진홍 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 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 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의 대한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제5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고지정을 해제할수있다.	자가 100분의 50 이상 일것 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 하는 면적이 진흥시 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 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지식경제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 5 조(진흥시설 등의 지 정해제 등) 지식경제부 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인의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 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관할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 야한다.	

- 3) 검토대상 행정규칙 조문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제4조부터 제7조까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

- 제 4 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②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 한다.
- 제 5 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등) ①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3.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변경)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흥 시설 변경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 · 단체 · 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 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

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해제) <u>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u> 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u>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를 사유발</u>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 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3. 진흥시설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진흥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4) 검토의견

지식경제부장관고시「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제4조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조건으로서 진흥시설내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불명확하다. 물론 행정청의 지정처분 발령시 조건의 구체화가 가능하겠지만, 이 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제5조 제1항에서는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로, i)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ii)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 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iii)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iv)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v)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를 열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식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

항이나 제4항을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상의 구비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정신청에 필요한서류이므로 이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차원에서 완결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 제6조에서는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시행 령이나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제7조에서는 소프트웨 어진흥시설의 지정해제사유로 i)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를 사유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 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ii)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 는 경우, iii) 진흥시설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진흥시설 지정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iv)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 하게 된 경우와 지정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진흥시설을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진흥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 우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7조의 규정을 다시 규정한 것에 불 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흥시 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행정규칙 차원에서 비로소 지정해제의 사유 를 새로이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지정해제의 사유는 국민의 권리ㆍ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또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지 정요건 미달사유를 사유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 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지정해 제의 특칙을 둔 것으로 그 예측가능성 보장 차원에서 법률 차원에서

제 4 장 행정규칙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개선방안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제4조 제1항을 삭제하거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제7조를 삭제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법률에서 지정해제사유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정요건 미달사유를 사유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기 타

- (1) 행정규칙 일몰제 위반(1)
- 1) 행정규칙명
- 「도로굴착공사에의한도시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 1997-168호, 1997.10.21,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 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	제58조의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 조치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	

도시가스사업법

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 록 노력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 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 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 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운영
-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 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 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 회점검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 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 4. 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시가 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 2. 도시가스배관의 압력·호칭지름 및 재질
-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검토의견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7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

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관은 「도로굴착공사에의한도시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통상산업부고시제1997-168호, 1997.10.21, 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정, 2009.5.24 시행)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을 이 훈령 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하는바, 「도로굴착공사에의한도시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도로굴착공사에의한도시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을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2) 행정규칙 일몰제 위반(2)

1) 행정규칙명

• 「목표에너지원단위 대상제품 및 해당사업장 고시」(통상산업부고 시 제97-96호, 1997.5,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5조 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5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 대상제품 및 해당사업장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7-96호, 1997.5, 제정ㆍ시행)을 제정ㆍ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정, 2009.5.24 시행)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을 이 훈령 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하는바, 「목표에너지원단위 대상제품 및 해당사업장 고시」

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지 하고,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목표에너지원단위 대상제품 및 해당사업장 고시」을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 (3) 행정규칙 일몰제 위반(3)
- 1) 행정규칙명
-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실적(계획)신고 서 첨부서류」(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09호, 1997.6.21, 제정·시행)
 - 2) 관련 법령 및 조문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합물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합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	제 9 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
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하	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	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	제조·수출입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합물질 ·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합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는 해마다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 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 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에 지 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검토의견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 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화학물 질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 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명령 차원에서 신고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

서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실적(계획)신고서 첨부서류」(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09호, 1997.6.21, 제정·시행)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그런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2009.4.23, 제정, 2009.5.24 시행)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을 이 훈령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하는바,「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실적(계획)신고서 첨부서류」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에해당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실적(계획)신고서 첨부서류」를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결론

이상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과학기술 분야, 국토해양부소관 국토·해양분야,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식품분야, 지식경제부소관 지식경제분야 총 350개 법률을 선정하여 각각의 법률·시행 령·시행규칙에서 행정기관이 기준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면서 그 규율형식은 지정하지 아니하여, 행정기관이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의 현황을 살펴보고, i)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ii) 국민의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율하여 법령의 형식을요하는 행정규칙, iii)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iv)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및 사이 기타(제정을 요하는 행정규칙, 불명확한 행정규칙, 행정규칙 일몰제에 반하는 행정규칙 등) 등의 분류 하에서 개선을 요하는 행정규칙을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행정규칙의 정비 방향(내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법률상 수권 근거의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이해관계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도모를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수권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수권 근거가 없거나 또는 입법 미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비로소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의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법령 또는 제도의 규율 체계의 복잡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바, 이 역시 법률에 수권

근거를 두어 해당 법령 또는 제도의 규율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 (2) 행정실무에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학설·판례나「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 단서에 기대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써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기보다는 행정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행정규칙으로의 도피'경향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성 등을이유로 행정규칙으로의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의 자의 내지 편의에 맡겨버리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학설·판례의 취지나「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써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령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에서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규정하여야 하나, 그 위임의 내적·외적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하고 국민의 권익을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바, 그 수권 근거의 내적·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다수의 법령에서 헌법상 포괄적·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위임사항을 거의 정하지 아니한 채, 행정규칙

으로 위임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임법령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 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관련 행정규칙과 위임법령을 헌법상 포괄적 • 일반적 위임 (재위임) 금지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도 규율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써 업무의 성질 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에서 완결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규율사항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굳이 "법률→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으로 의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법률→대통령령 또는 부렁→행정 규칙"으로의 위임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인 사항으로서 전문 과학기술의 발달, 매체의 홍수 등 행 정규칙만이 가장 잘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 정이 있다면 비록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형식이기는 하나, "법 률→행정규칙"으로의 위임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어떤 위임방식을 취하든 상위법률에서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 든간에 위임할 대상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수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범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법령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규칙 제정권자가 행정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법령에서 규율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경우 이를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어느 정도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관련 행정규칙이 인·허가, 지정·승인 신청(취소) 등의 요건이 되는 경우나 (죄형법정주의의원칙상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제재적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과 관련

- 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규칙의 미비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그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도록 할 수 있으며, 수권 법령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드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해당 법령 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나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 법적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해당 행정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행정실무상 규율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수권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 행정규칙은 위임법령의 해석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거나 또는 규율사항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이해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또 다른 지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다수 존재한다.이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입법자가 스스로 이를 상세하게 규율하거나 또는 법규명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행정규칙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수있는바, 가급적 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규율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7) 다수의 행정규칙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행정실무에서 해당 행정규칙만을 보고 법집행을 하거나, 이해관계자 역시 행정규칙만을 보고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규칙의 조문수를 늘리고, 규율사항을 복잡하게 하여 이해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바, 가급적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직접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상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8)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르면 행정규칙은 조문형식·시행문형식·화보형식 등의 형식으로 제정될 수 있고, 그 형식에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또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그 수권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학설·판례에 따라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규칙의 제정권자가 수권의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국민이나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 해당 행정규칙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수권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9)「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 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제 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행정규칙이 적시 에 등재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규칙을 찾아보는 어려움이 많이 줄었 고, 부처에서도 행정규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질을 높이려는 노 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규칙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또 는 개정되어 일정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의 홈페 이지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뿐 아니라,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존재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행정규칙이 중복하 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규칙도 존재하여 행정규칙의 현행성 내지 유효성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도 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 제2항의 준수와 행정규칙의 현행성 내지 유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재한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장이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제·개정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등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다수의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그 제정일과 시행일이 일치하거나, 비교적 제정일과 시행일이 시차가 크지 않은바, 이미 제정되어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행정규칙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행정규칙의 적법성 또는 합목적성 통제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리하여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행정규칙을 사전적으로 심사할 경우 행정규칙이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적으로 심사하여 그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행정규칙 일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정, 2009.5.24 시행)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을 이 훈령 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된 적이 있는 훈령・예규등 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 내에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

령・예규등이 여전히 존속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된 적이 있는 훈령・예규등 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훈령・예규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이 있는바, 이는 경과조치에 맞추어 폐지, 신규제정,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 국회 행정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1997. 7.
- 김남진, 월간고시, 1989. 11.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1.
- 김대인, 행정입법에 있어서 투명성 가치의 실현, 김동희 편, 행정작 용법, 박영사, 2005.
- 김도창, 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 김유환,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내용의 개요 분석과 평가, 고시계 1997. 10.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I, 법문사, 2008.
- 김해룡, 행정법규범체계연구 I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공법연구 제 3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7. 2.
- 문상덕,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고시)의 법적 성격과 그 통제, 행정법연구 제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7. 6.
- 박영도 외, 행정형벌법규, 조세, 준조세, 영업활동, 급부행정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 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방안 연구, 법제처, 2010. 8.
-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 이상규,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이 뜻하는 것, 고시연구 1997. 9.
- 정남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의 내용 및 법적 문제점, 고시연구, 2006. 7.

- 정남철,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법제, 법제처, 2007. 4.
- 한영수, 행정규칙 일몰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규제일몰제의 확대도 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1. 5. 15.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1.
- 홍준형,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상), 고시연구, 1997. 9.
- ____,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1994.
- A. v. Bogdandy, Gubernative Rechtsetzung, Tübingen 2000.
- C. Tegethoff, Die beamtenrechtlichen Beihilfevorschriften im Lichte der Wesentlichkeit, BayVBl. 2005, 458 ff.
- Ch. Gusy, Problem der Verrechtlichung technischer Standards, NVwZ 1995, 105 ff.
- H. D. Jarass,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JuS 1999, 105 ff.
-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W. Hoffmann-Riem/E. Schmidt-Aßmann/A. Voßku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I, München 2008.
- _____, Urban Governance Zum Wohle der Kommune, in: FS Heinrich Mäding, 2006.
- ______, Zur Rechtsdogmatik von Zielvereinbarungen in Verwaltungen, NVwZ 2002, 1059 ff.
- H.-H. Trute, Die Rechtsqualität von Zielvereinbarungen und Leistungsverträgen im Hochschulbereich, WissR, Bd. 33 (2000), 134 ff.

- H.-Ue Erichsen, Verwaltungsvorschfirten als Steuerungsnorm und Rechtsquellen, in: FS Heinrich W. Kruse, 2001.
- H. Maurer, VerwR, 16. Aufl. München 2006.
- H. Schneider, Gesetzgebung, 3. Aufl. Heidelberg 2002.
- J. Ips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4. Aufl. Köln 2005.
- J. Saurer, Die neueren Theorien zur Nomkategorie der Verwaltungsvorschriften, VerwArch, Bd. 97 (2006), 249 ff.
- _____, Verwaltungsschriften und Gesetzesvorbehalt, DÖV 2005, 587 ff.
- K. Tipke/J. Lang u.a., Steuerrecht, 18. Aufl. 2005.
- M. Gerhardt, Aus der neueren Rechtsprechung zum Atom-, Immissionsschutz- und Abfallrecht, DVBl 1989, 125 ff.
- R. Summer, Gedanken zum Gexetzesvorbehalt im Beamtenrecht, DÖV 2006, 249 ff.
- R. Wahl, Verwaltungsvorschriften: Die ungesicherte dritte Kategorie des Rechts, in: FG 50 Jahre BVerwG, 2003.
- S. Seidel, Praxis der Verordnungsgebung, 2004.
- Th.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en im System der Rechtsquellen, 2005.
- Th. v. Danwitz, 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 und Gemeinschaftsrecht, VerwArch, Bd. 84 (1993), 73 ff.
- U.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2002.
- U. Battis, Bundesbeamtengesetz, 3. Aufl. 2004.

- W. Erbguth, No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 Rechtsdogmatische Grundlagen einer origin\u00e4ren Rechtsetzung durch die Exekutive, DVBl 1989, 473 ff.
- W. Hoppe/O. Otting, Verwaltungsvorschriften als ausreichende Umsetzung von rechtlichen und technischen Vorgaben der Europäischen Union?, NuR 1998, 61 ff.